

KiRi Weekly 포커스 모음집 2014

1

보험경영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시사점	조영현	3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김진익 전용식	8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기승도 이경아	13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보험회사 치매보험상품	김석영 김혜란	17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이경아	21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사점	박선영	26
이슬람 금융과 금융회사 해외사업	전용식	32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	전용식 이혜은	35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채널 활성화 방안 필요	박정희	39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시사점	이승준	43
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아름	48
자동차보험을 통한 다른 손해보험 상품 판매 가능성 분석	기승도	54
미국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상품 판매 논의와 시사점	김세중	58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전략	전용식 채원영	62
Aviva 보험회사의 합병 발표 및 시사점	황인창 정승연	67

2

고령화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의 고려사항	정원석	73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류건식	76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복지에 관한 소고	류건식 김동겸	80
고령층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판매채널의 역할	박정희	85
해외 장수스왑(Longevity Swap) 거래 증가와 시사점	김세중	88

포커스 _Contents

3

보험제도 및 정책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상우	95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소고	정원석	102
펀드슈퍼마켓 도입과 금융상품 판매채널 진화 전망	박선영 황진태	106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필요	기승도 김혜란	111
제3보험 손해사정사 제도 再考	정봉은	116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김경환	120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원석	12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란	정원석	129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이승준	132
보험회사 행정지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이승준	135
일본의 정성적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시사점	이경아	138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필요	최창희	143
손해사정의 외부위탁강제 법안에 대한 검토	송윤아 이성은	14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최창희	152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시사점	이승준	157
공유형 모기지 국내외 현황과 전망	박선영	160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상우 김동겸	165

4

거시금융 및 기타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요인과 시사점	최 원 채원영	173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의 배경과 영향	박선영	178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윤성훈	183
국내 금융업권간 인수합병 추진현황과 시사점	전용식 최 원	186
국가간 개인정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	이아름	190
잠재성장률 제고와 금융의 역할	채원영	193
최근 금융정책 변화와 시사점	이태열 이성은	199
일본 경제 장기부진의 시사점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윤성훈	203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	황인창	209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논의와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검토	전용식 이혜은	212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소고	윤성훈	217

1. 보험경영

- | | |
|--|---------|
| 1.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시사점 | 조영현 |
| 2.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 김진억 전용식 |
| 3.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 기승도 이경아 |
| 4.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보험회사 치매보험상품 | 김석영 김혜란 |
| 5. 전화권유평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 이경아 |
| 6.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사점 | 박선영 |
| 7. 이슬람 금융과 금융회사 해외사업 | 전용식 |
| 8.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 | 전용식 이해은 |
| 9.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채널 활성화 방안 필요 | 박정희 |
| 10.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시사점 | 이승준 |
| 11. 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이아름 |
| 12. 자동차보험을 통한 다른 손해보험 상품 판매 가능성 분석 | 기승도 |
| 13. 미국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
상품 판매 논의와 시사점 | 김세중 |
| 14.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전략 | 전용식 채원영 |
| 15. Aviva 보험회사의 합병 발표 및 시사점 | 황인창 정승연 |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시사점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 파생상품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저조한 상황임. 미국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국내 보험회사는 특히 금리리스크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전체리스크 중 금리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리파생상품 이용이 저조함. 따라서 금리파생상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파생상품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이용할 유인을 제공 하는 것도 필요함.

■ 보험회사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재무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파생상품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의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에 비해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예를 들어, 자산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수행하는 방법은 많은 매매가 필요하여 매칭의 정확성도 떨어지지만, 스왑과 옵션 등 파생상품을 이용할 경우 탄력적이고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¹⁾
- 투기적 거래만 없다면 적절한 파생상품의 이용은 리스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줌.

■ 이러한 파생상품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저조한 상황

- 금융업권별 파생상품거래 특성과 자산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잔액은 매우 낮은 수준

1) Castries and Claveranne(2010), "Derivatives: an insurer's perspective", Financial Stability Review 참조.

● 특히, 국내 보험회사는 ALM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파생상품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표 1〉 국내 금융회사별 파생상품 잔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신탁	기타
주식관련거래	28,804	101,460	2,121	4,621	93
금리관련거래	4,398,012	520,640	2,096	2,689	3,860
외환관련거래	1,958,804	72,033	31,246	32,137	1,492
신용관련거래	7,132	37,551	3,075	568	0
기타거래	5,062	5,957	4	686	0
합계	6,397,814	737,641	38,543	40,700	5,446

주: 1) 2013년 9월 말 기준.

2) 명목거래금액(notional amount)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2014. 1. 3), 『13.3분기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 금융위기 이후 국내 보험회사의 금리파생상품 잔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금리파생상품 잔액이 증가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
 - 금리파생상품 잔액: 3,689조 원(2009. 9) → 4,927조 원(2013. 9)

〈표 2〉 보험회사 파생상품 잔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 9	2010. 9	2011. 9	2012. 9	2013. 9
주식관련거래	3,997	3,889	5,467	3,423	2,121
금리관련거래	3,030	3,096	1,808	2,211	2,096
외환관련거래	28,825	23,301	25,332	27,417	31,246
신용관련거래	335	0	66	98	3,075
기타거래	1	1	2	2	4
합계	36,188	30,288	32,676	33,151	38,543

주: 명목거래금액(notional amount)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 국내 보험회사와 달리 금리리스크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활용이 활성화 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주별로 규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헤지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

는 것은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²⁾)

– 파생상품 거래 시 파생상품이용계획(DUP)을 감독당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미국 보험회사는 전체 파생상품 잔액 중 금리관련 파생상품 비중이 매우 높음(<표 3>).

<표 3> 미국 보험회사의 헤지 목적 파생상품 잔액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잔액	비율
금리관련거래	879,852	67.4
주식관련거래	235,818	18.1
외환관련거래	96,013	7.4
신용관련거래	68,816	5.3
기타거래	24,325	1.9
합계	1,304,824	100.0

주: 1) 2011년 말 기준.

2) 명목거래금액(notional amount) 기준.

자료: NAIC(2013. 1. 9), “An Update of the Insurance Industry's Derivatives Exposure”.

■ 미국과 비교할 때, 국내 보험회사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금리리스크 헤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표 4>는 각 리스크와 관련되는 자산규모에 대비한 파생상품 잔액의 비율을 계산한 것임.

– 미국의 경우 파생상품 이용의 대부분이 생명보험회사³⁾이기에 생명보험회사 간 비교가 타당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채권규모 대비 금리파생상품 명목거래금액의 비율은 0.8%로써 동 비율이 29.3%인 미국 생명보험회사와 큰 격차를 보임.

● 국내 생명보험회사도 주식관련 헤지는 일정 수준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보임.

– 주가리스크 헤지의 주된 대상인 특별계정 주식대비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비율을 계산하면 국내 생보사는 8.5%, 미국 생보사는 15.5%로써 격차가 더욱 줄어들.

● 해외 자산에 대한 환헤지 수준은 미국과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됨.

2) 다음 문헌을 참조.

Mayank Raturi(2005), “The Use of Derivatives by US insurers”, The Journal of Risk Finance.

Edward Toy(2012), “Insurance Companies’ Highly Controlled Use of Derivatives Has Also Resulted in Protection from the Rogue Trader Problem”, Risk Management.

3)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잔액 중 95.8%를 생명보험회사가 차지함. 국내의 경우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손해보험회사가 장기 상품을 취급하므로 미국과는 다르게 파생상품잔액 비중이 자산규모의 비중과 유사할 것으로 보임.

〈표 4〉 한미 생명보험회사의 관련자산 대비 파생상품 잔액 비율

(단위: 십억 원, 백만 달러)

구 분		금리관련	주식관련	외환관련
한국	파생상품 잔액 ³	2,265	2,587	21,414
	관련자산 금액 ⁴	287,017	55,871	22,010
	비율	0.8%	4.6%	97.3%
미국	파생상품 잔액	842,898	225,914	91,980
	관련자산 금액	2,877,492	1,546,085	97,463
	비율	29.3%	14.6%	94.4%

주: 1) 한국은 2012년 말, 미국은 2011년 말 기준.

2) 명목거래금액(notional amount) 기준.

3) 한국 생보사의 파생상품 금액은 전체 금액에 보험업에서 차지하는 생보사의 자산비중(78.3%)을 곱하여 추정하였으며, 미국 생보사의 파생상품 금액은 전체 파생상품 잔액에서 생보사가 차지하는 비중(95.8%)을 곱하여 추정함.

4) 금리관련 자산은 채권, 주식관련 자산은 주식, 외환관련 자산은 외화증권.

자료: 금융감독원(2013. 3. 13), 『2012년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NAIC(2013. 1. 9), "An Update of the Insurance Industry's Derivatives Exposure".

ACLI(2013), "Life Insurers Fact Book".

■ 국내 보험회사의 금리파생상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금리리스크 비중은 2013년 3월 기준 평균 41.8%⁴⁾에 이르러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경감을 꾀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금리·시장리스크(C3) 비중이 10% 미만⁵⁾

- 특히 국내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금리 하락의 장기지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정금리형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의 듀레이션을 늘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파생상품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해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이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거래가 2011년 말 기준 88.5%로써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국내도 유사할 것으로 보임.

–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헤지 목적인 거래가 대부분

- 위험회피회계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파생상품 사용에 따른 손익의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완화시키는 제도나 리스크 평가 시 파생상품 활용을 고려하는 제도가 존재⁶⁾

4) RBC기준 전체 위험액 중 금리위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각사의 경영공시에 의거하여 산출함.

5) NAIC, "Life Industry RBC Results for 2011" 참조.

6)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2012), 『최저보증위험 외부전가제도 개선방안』 참조.

-
- 제도 보완의 한 가지 예로써,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자산의 듀레이션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 RBC 기준 듀레이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kiri](#)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김진억 수석담당역,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은 사이버리스크 관리의 실패사례로 볼 수 있는데, 기업·금융회사의 산업간 연계성이 커지고 리스크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사이버리스크 관리 실패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기업·금융회사들의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이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반면 미국, 영국에서는 사이버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Cyber Liability Policy)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은 2014년 1월,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세계경제포럼의 제안은 사이버리스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규제 강화는 사회적 혼란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사이버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금융회사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역량제고가 필요함.

■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사이버리스크관리(Cyber 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사이버리스크(Cyber Risk)란 사이버범죄(Cyber Crime)나 사이버테러(Cyber Terrorism)로 인한 유·무형의 발생 가능한 손실로서,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신원, 금융 및 보험 정보 등 민감한 자료의 유출(Breach), 도난(Theft),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한 정보의 손실(loss)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영국의 컨설팅회사 마쉬(Marsh)는 영국의 연간 사이버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10억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인용
- Allianz가 최근 발간한 기업 리스크 관련 보고서에서 사이버리스크(Cyber risk)가 기업이 관리해야 할 중요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함.¹⁾
 - 독일에서 발생한 1천 6백만 건의 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 도난사건, 미국의 신용카드 정보 4천

1) Allianz SE(2014, 1, 14), “Allianz Risk Barometer on Business Risks 2014”.

만 건 도난 사건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억 건의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 발생으로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됨.

-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지역별로 아메리카(8위), 유럽(9위)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6위)에서 가장 상승정도가 컸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14년 가장 주목받는 리스크가 될 것으로 평가됨.

〈표 1〉 2014년 기업리스크 인식 변화

구분	2014년 순위		2013년 순위	응답비율	% 변동	순위변동
1	영업중단(BI), 공급사슬	43%	1	46%	-3%	-
2	자연재해	33%	2	44%	-11%	-
3	화재, 폭발	24%	3	31%	-7%	-
4	입법 및 규제 변화	21%	4	17%	+4%	-
5	시장침체 또는 축소	19%	8	12%	+7%	↗(3)
6	평판, 브랜드가치 손실	15%	10	10%	+5%	↗(4)
7	경쟁심화	14%	5	17%	-3%	↘(2)
8	사이버범죄, IT실패	12%	15	6%	+6%	↗(7)
9	도난, 사기, 부패	10%	11	9%	+1%	↗(2)
10	품질결함, 순차결함	10%	6	13%	-3%	↘(4)
11	시장변동	8%	7	13%	-5%	↘(4)
12	건축프로그램	7%	18	4%	+3%	↗(6)
13	상품가격상승	7%	14	7%	-	↗(1)
14	기술혁신	7%	13	8%	-1%	↘(1)
15	신용이용가능성	6%	12	9%	-3%	↘(3)
16	인재부족, 노령인력	6%	16	6%	-	-
17	공해	5%	20	3%	+2%	↗(3)
18	정치적/사회적 격변, 전쟁	4%	17	5%	-1%	↘(1)
19	정전(power blackouts)	3%	21	3%	-	↗(2)
20	건강 이슈, 유행병	3%	19	3%	-	↘(1)
21	유로존 붕괴	3%	9	12%	+9%	↘(12)
22	테러리즘	3%	24	2%	+1%	↗(2)
23	환경변화	3%	22	2%	+1%	↘(1)
24	인플레이션	2%	23	2%	-	↘(1)
25	보호주의	1%	25	1%	-	-
26	디플레이션	1%	26	0%	+1%	-

주: 수치는 총 응답자(557) 중 응답비율임.

■ 기업과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상호연관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을 경우, 상당한 사회적 손실을 피할 수 없으나 사이버리스크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던 신용카드회사의 대규모 정보유출과 뒤이은 고객의 혼란, 정책 및 감독당국의 혼란스러운 대응 조치는 사이버리스크, 규제리스크, 영업중단리스크, 평판리스크가 상호 연관되어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줌.
-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사이버리스크 피해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사이버리스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규제환경은 개인정보보호 실패에 따른 징벌 강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기업의 리스크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사이버리스크 배상보험(Cyber Liability Policies)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사이버리스크를 시장에 분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줌.²⁾

■ 2014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사이버리스크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³⁾하였는데, 사이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이익 모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⁴⁾

- 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사이버리스크관리를 위한 민간·공공부문의 주요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2020년까지 사이버범죄의 증가속도와 이에 대한 민간 및 공공부문의 대응속도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3.0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⁵⁾
- 사이버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기관, 부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함(<표 2>참조).
 - 악의적인 사이버공격과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서 기업과 금융회사는 감사와 준법관리 위주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최고경영자는 사이버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전사적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통합해야 하며, 기업 및 금융회사의 구성원 모두의 일상 업무가 사이버리스크와 관련이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 사이버리스크의 실체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법률제정은 사이버범죄 및 테러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2) NAIC(2014. 1. 21), “Cyber Risk”.

3) WEF(2014. 1. 19), “Risk and Responsibility in a Hyperconnected World”.

4) 전세계 민간 및 공공부문 대표들이 제시한 사이버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방안들임.

5) MGI disruptive technologies, social economy & Internet Matters reports, UNCTAD 직접투자, IMF global GDP, McKinsey Economic Platform, 산업별 인터뷰.

를 통해 사이버리스크관리 관련 정책과 보험상품 개발 등 시장메커니즘을 조성해야 함.

- 사이버공격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기업 및 금융산업간 정보공유 협력과 노력이 긴요함.

〈표 2〉 사이버리스크관리를 위한 부문별 역할

구분	행동분야	점검 권고사항
1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응 (Institutional readiness)	• 관리방식 • 사이버리스크 관리를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 • 최고경영진이 직접 실무와 정책을 주도
		• 프로그램/네트워크개발 • 정보자산의 중요도에 따른 차별적인 보호 • 정보보호기능의 확장 통합 • 사이버범죄, 테러에 대한 능동적 방어 기능 실시 • 임직원의 정보 자산 가치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정부/국제 정책 (Public/international policy)	• 국가사이버 전략 • 모든 정책 분야의 전략, 규정과 통합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투명한 사이버 전략 수립 • 전략은 민간부문, 경제 및 안보 이슈를 통합해야 함
		• 사법전략 • 기관의 사이버범죄 조사와 기소 기능 마련, 법체계 수립 필요
		• 정책 • 규제 및 정책, 시장메커니즘 개발을 위한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협의체 구축 및 활성화
		• 외교 •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원칙 수립 • 지역, 정부,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발굴 • 행정기관간의 공식/비공식적 의사소통채널 구축 • 사이버보안 담당 국가 기관간의 상호 운용체계를 구축 • 사이버범죄 기소와 관련한 국가 정책과 국제적 정책의 조화
		• 공동노력 • 사이버리스크 관련 기술 교육 투자 • 사이버리스크 관련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자금지원 • 기업과 정부간 제한된 정보공유에 대해 인식제 역할제공
3	지역사회 (Community)	• 연구 •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 • 사이버보안의 기업과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촉진
		• 자원공유 •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대학 및 민간부문 간 파트너십 조성
		• 정보공유 • 정보공유를 위한 상호운영기능을 구축 • 사이버사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프로토콜 제공
4	금융 및 IT 시스템 (Systemic)	• 리스크시장 • 사이버리스크 보험시장 확대
		• 내재화된 보안 •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연구 및 개발 • 사이버리스크의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자료: 세계경제포럼(2014).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제고와 대응방안 모색은 사이버범죄를 방지하고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성숙한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국가단위의 사이버범죄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두 각각의 입장에서 사이버리스크가 파생할 수 있는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고 성숙하고 바람직한 대응 및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차분히 점검하고 대응하여야 함.
- 미국, 영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Policy)은 사이버리스크를 시장에 분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함. [kiri](#)

주간이슈 2014.02.10

제270호

보험경영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¹⁾ 분석과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이경아 연구원

요약

- 2013년 4~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9%로 전년 동기보다 4.9%p 증가(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됨. 주 요인은 대당 보험료감소 및 사고발생률 증가임. 대물배상담보의 사고발생률 및 보험금원가 증가, 자기차량 손해 담보의 사고발생률 증가 등도 손해율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과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해 사고예방캠페인, 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할인할증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강화 등의 손해율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보험산업의 2013년 4월~11월 누적손해율은 77.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보험료 규모가 큰 대인배상 I,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2013년 4월~11월 전체 자동차보험 누적손해율은 77.9%로 전년 동기 72.9%보다 4.9%p(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음.

〈표 1〉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년대비 증감율

구 분	2012년 4월~11월 (A)	2013년 4월~11월 (B)	증감률 (C=B-A)
원수보험료	72.9%	77.9%	4.9%p

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2012년 11월 및 2013년 11월.

- 모든 담보들의 손해율이 약 70%대로 추정되는 예정손해율을 초과하는 등 자동차보험 모든 담보에 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보험료 규모가 큰 대인배상 I,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손해율이 전체 손해율보다

1) IFRS 적용 이전 기준 손해율임.

높은 점을 볼 때, 이들 담보가 동 기간의 손해를 악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2013년 4월~11월 담보별 손해율

(단위: %)

구 분	손해율
대인배상 I	79.0
대인배상 II	73.3
대물배상	84.3
자기신체사고	75.8
자기차량손해	73.3
무보험차상해	86.5
전체	77.9

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2013년 11월.

■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분석을 해 보면, 2012년 4월~11월 누적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값 4.9%p에는 대당보험료 감소와 사고발생률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전년동기 대비 손해율 증가값 4.9%p에는 대당보험료감소 효과가 3.3%p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사고발생률 증가가 2.6%p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1사고당손해액은 손해율 감소에 1.0%p 영향을 주었음.

〈표 3〉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감 요인별 분석

(단위: 천 원)

구 분	2012년 4월~11월	2013년 4월~11월	효과
손해율	72.9%	77.9%	4.9%p
사고발생률	22.6%	23.3%	2.6%p
대당보험료	417	399	3.3%p
1사고당손해액	2,024	1,996	-1.0%p
기타복합요인			0.0%p

주: 1) 전체 손해율 분석임.

2) 서영길(1992),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조변화 분석모형』, 보험개발연구에서 제시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분석함.

$$\begin{aligned}
 \text{당기손해율} - \text{전기손해율} &= \text{전기손해율} \times \frac{-(\text{당기대당경과보험료} - \text{전기대당경과보험료})}{\text{당기대당경과보험료}} \\
 &+ \text{전기손해율} \times \frac{\text{당기사고발생률} - \text{전기사고발생률}}{\text{전기사고발생률}} \\
 &+ \text{전기손해율} \times \frac{\text{당기1사고당손해액} - \text{전기1사고당손해액}}{\text{전기1사고당손해액}} + \text{기타 복합요인}
 \end{aligned}$$

■ 전년 동기 대비 담보별 손해율을 비교하여 보면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를 제외한 전체 담보의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물배상담보 및 차량담보 손해율 악화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대물배상담보의 경우 사고발생률 및 1사고당손해액이 모두 악화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당보험료가 증가한 것은 가입자들이 높은 가입금액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임.
-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사고발생률 증가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시행된 자기차량손해담보 비례공제제도의 영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 2013년 4월~11월 담보별 손해율, 사고발생률, 대당보험료, 1사고당손해율 전년대비 비율

구 분	손해율	사고발생률	대당보험료	1사고당손해액
대인배상Ⅰ	1,005	1,000	0,947	0,952
대인배상Ⅱ	0,945	1,223	0,957	0,739
대물배상	1,052	1,059	1,040	1,033
자기신체사고	1,102	1,055	0,988	1,032
자기차량손해	1,206	1,018	0,838	0,993
무보험자상해	1,059	1,094	0,985	0,953
전체	1,068	1,035	0,956	0,986

주: 1) 비율은 2013년 4월~11월 실적(A) ÷ 2012년 4월~11월 실적(B)으로 계산함.

2)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2013년 11월 및 2012년 11월.

■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현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적손해율을 반영한 적기 보험료 조정과 사고발생률 감소 유도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됨.

- 실적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현 손해율은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2년 4월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하경쟁, 통제가 어려운 사고발생률 증가 현상은 2014년에도 손해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요율조정, 대당보험료 감소를 위한 경영정책 지양, 사고감소를 위한 정책적 그리고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고발생률은 통제가 어려운 변수이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사고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고감소 줄이기 캠페인 및 법규준수 필요성 홍보, 교통법규단속강화, 사고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도로여건 및 신호체계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험제도 측면에서도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할인할증제도를 현 점수제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건수제로 바꾸는 방안과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²⁾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대물배상담보의 높은 손해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현행 대물배상 요율제도를 차량가액을 반영한 요율제도로 개편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 공임 및 수리비 등의 보험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고가자동차(외제차)의 부품비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대물배상담보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정책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임. **kiri**

2) 교통법규위반 정도 또는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제도.

주간이슈 2014.05.07

제282호

보험경영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보험회사 치매보험상품

김석영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음.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내용을 통해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CDR 점수기준으로 치매상태를 판정하는 치매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정부에서 치매특별등급을 운영하게 되면 상이한 치매 판정기준 및 보장범위로 인해 민영 보험회사의 치매상품 개발 및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 치매특별등급의 판정기준은 정부의 복지정책 및 재정문제와 연계되어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치매상품 판매 시 공적장기간병의 치매등급에 대한 정의를 준용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음.¹⁾

-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자 함.
 -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 국가에서 치매등급을 신설하고 치매 판정 기준이 새롭게 나타남으로써 이미 치매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으로 정의됨.²⁾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127호.

- 현재 유일한 치매 확진법은 뇌 조직검사뿐이나, 일반적으로 치매진단을 위해 뇌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없으며, 임상에서는 전문의가 철저한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정신 상태검사, 신경심리학적 검사(신경인지기능 검사), 혈액 및 뇨검사와 심전도검사, 뇌 단층촬영(CT)과 뇌 자기공명촬영(MRI) 등을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치매를 진단함.

■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계속 늘어나서 2012년에 약 54만 명에서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³⁾

- '1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⁴⁾은 9.18%이며 환자 수는 54만 1천 명(남성 15만 6천 명, 여성 38만 5천 명)으로 추정됨.

■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중증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증치매환자들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치매특별등급을 만들었음.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을 경우 치매등급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치매판정은 전문의에 의한 치매진단서가 아니라 치매진단교육을 받은 의사가 발행하는 치매특별등급자 판정을 위한 양식화되어있는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의사소견서에서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을 포함한 인지기능검사,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검사, 일상생활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검사 등이 포함할 예정임.⁵⁾

■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미 90년대부터 치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치매 판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여 왔음.

- 현재 대부분 회사에서 판매 중인 치매상품은 중증치매상태에 대해 보장해주는 형태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 경증치매까지 확대하여 보장해주고 있음.

2) 서울대학교 병원(2008), 치매 노인 유병률 조사.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5. 2).

4) 치매 유병률: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5)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서 의사소견서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임.

- “중증치매”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CDR) 점수가 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경증치매”라 함은 상기의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1 또는 2인 경우를 말함.

■ 정부에서 치매특별등급을 운영하게 되면 상이한 치매 판정기준 및 보장범위에 따라 민영 보험회사의 치매상품 개발 및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과거 장기요양(Long Term Care, 이하 LTC) 상품의 경우에도 공적장기간병보험 도입 이후, 민영 보험회사들이 공적장기간병보험의 판정기준과 보장범위를 준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였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치매특별등급 신설은 향후 치매상품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다만, 미래에 국가의 정책판단에 의해서 공적 정의를 변경시킬 경우 기존의 공적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민영보험회사는 최초 보장범위와 다른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 또한, 향후 공적보험에서 치매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회사가 회사 자체 정의를 고수할 경우에는 치매로 해당하지 않게 되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기존 치매상품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 정부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치매 판정등급의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8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편임.
 - 현재 장기요양비 지출이 GDP 대비 0.5% 이하 수준이나, 국민의 복지요구가 확대될 경우 치매 판정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가 높은 복지수준 요구에 맞추어서 GDP대비 장기요양비 지출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로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 재정문제로 인해서 치매 등급의 기준이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큼.

■ 치매특별등급이 향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들은 공적장기간병의 치매등급에 대한 공적 정의를 준용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치매특별등급의 하한점수가 45점 미만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향후 45점 이

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

- 한편으로는 정부재정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서 치매 판정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실질적인 제도 변경을 통해서 등급판정자를 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제도 운영을 통해서도 등급판정자를 줄일 수도 있음.
- 따라서 민영보험회사들이 공적보험의 치매 정의를 준용할 경우, 정의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에서도 예정위험률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민영보험회사들이 치매상품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음.
 - 치매등급을 사용하는 대신에 장기요양 판정점수를 사용하는 것도 정부 정책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공적 치매특별등급체계의 도입은 치매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공론화함으로써 민영보험회사의 치매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매상품 개발 시 치매 판정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현재 LTC상품에서 생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민영보험회사는 LTC상품에서 공적 정의를 사용하였다가 공적 정의의 확대로 최초 상품에서 보장한 것보다 더 많은 보장을 하여야 했음.
- 치매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서 고령계약자가 치매보장 급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민영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감독당국에서도 공적 정의 변경 위험에 대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민영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음. [kiri](#)

주간이슈 2014.05.26
제285호
보험경영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이경아 연구원

요약

■ 소비자가 광고성 전화를 원치 않을 경우 온라인상으로 수신거부의사 표시를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도입되었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소비자의 자기 정보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행사가 보다 간편해졌음.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임.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수신거부의사체계는 향후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과 공급자 편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소비자가 원치 않는 광고성 전화에 대한 수신거부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도입됨.¹⁾

- 그동안 과도하거나 부당한 판매권유 전화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 사항은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부당한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임.
 - － 무작위 혹은 과도한 판매권유전화로 인해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alone)가 훼손되었으며, 잘못된 통신판매로 인한 부당행위, 계약해제 및 계약해지²⁾ 거절 등의 소비자피해 역시 증가하여 왔음.

■ 판매권유전화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소비자는 전화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일괄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1) 2014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2)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며 해지는 지금까지의 법률효과는 인정하되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지에 해당하고 물건 등이 작동이 안 되어 환불하는 경우는 해제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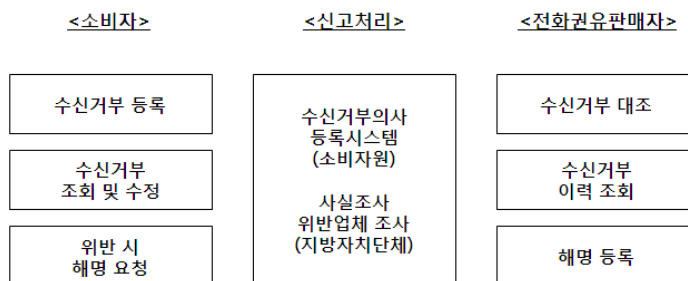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방문판매업법상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해서 적용됨.³⁾
- 수신거부등록 이후에도 원치 않는 전화권유판매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는 이에 대해 해명을 요청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음.⁴⁾

■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월 1회 이상 수신거부대조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판매대상 소비자명부와 등록시스템상의 거부의사 표명 소비자명부를 대조해야 함.
-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확인을 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전화권유판매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⁵⁾

〈그림 1〉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처리 절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4) 수정.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 대부분 개인정보 규제가 사업자 행위 규제인 반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개인정보제공 이후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에 관한 규제임.
 - － 자기정보결정권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회할 수 있고 정보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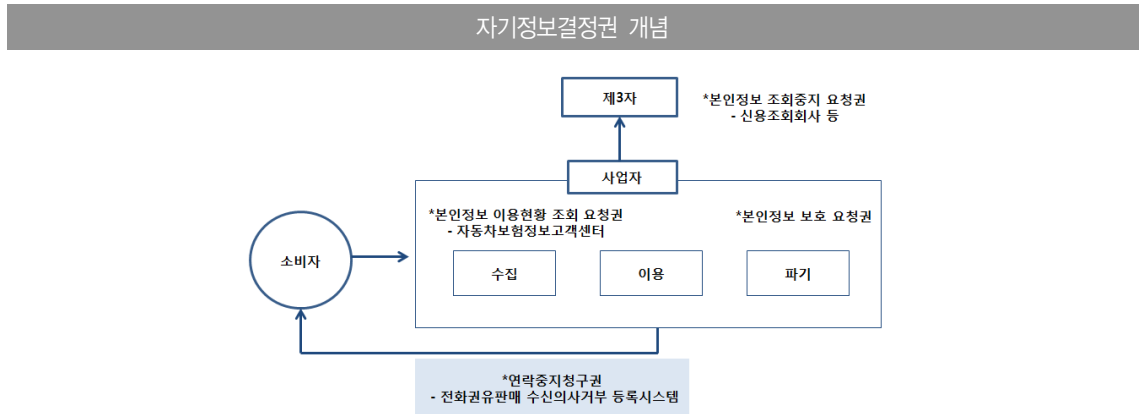
3) 2012년 말 기준으로 5,500여 개 업체가 신고.

4) 소비자의 해명요청 및 신고에 대한 행정적 조사 및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짐.

5) 사업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자기정보결정권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본인정보이용 및 정보제공현황조회요청권, 연락중지청구권, 정보보호요청권, 본인정보조회중지요청권이 있음.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연락중지청구권에 해당함.

〈그림 2〉 자기정보결정권



자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2014. 3. 10) 수정.

■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원치 않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거부의사표시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함.

- 등록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을 경우 해당 회사별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했음.
- 하지만 등록시스템 도입으로 거부의사표시 절차가 전화번호 등록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사업자별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대신 전체 전화권유판매사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반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은 전화권유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단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대표적인 텔레마케팅 규제 중 하나로 전화권유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⁶⁾

6) 3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후 대출, 보험 등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습득된 개인정보임이 확인될 때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이 제한됨.

■ 보험의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정보고객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체 보험종목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임.⁷⁾

- 자동차보험정보고객센터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조회 및 정지요구(do-not-call) 시스템임.⁸⁾
 - － 의무보험⁹⁾인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대상 범위가 전체 보험종목으로 확대될 예정임.

■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확대 시행될 경우 텔레마케팅 모집비율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음.

- 보험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판매채널별 모집비율에 따라 회사별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 전체 보험료수입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텔레마케팅 모집비율은 0.7%, 손해보험의 텔레마케팅 모집비율은 10.2% 수준임.¹⁰⁾
- 손해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높아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전체 손해보험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텔레마케팅 비율은 24% 정도임.
 -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갱신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시장 전체 규모 축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고객의 이탈이 낮아져 유지율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투자형 상품 판매 시 투자권유 설명이 요구되나 전체 수입보험료 중 텔레마케팅 모집비중이 낮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향후 수신거부의사체계의 운영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제도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고 사회적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수신거부의사체계 도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강화의 결과로 볼 수 있음.

7)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2014. 2. 4), Fntimes(2014. 3. 6).

8)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정보고객센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각각 방문판매업법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임.

9)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75~30일 전, 30~10일 전 각 1회, 총 2회의 만기 안내가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만기 시 과도한 가입권유 전화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10) 보험개발원(2012), 보험통계연감.

- 미국·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각각 두낫콜(Do-Not-Call) 제도와 TPS(telepreferance service) 제도를 시행하여 왔음.
- 미국의 두낫콜은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의해서 운영되며 가입가능 전화번호 중 전화번호등록 비율이 72% 정도로 높은 가입율과 함께 대체로 긍정적인 소비자 평가가 이루어짐.¹¹⁾
- 일본의 TPS는 텔레마케팅협회(JTA)에 가입된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모든 전화권유 판매가 차단되지는 못함.
- 수신거부의사체계는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사업자는 이를 단기적 위협요인이 아닌 장기적 기업환경 변화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제도 적용과정에서 텔레마케팅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최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와 관련된 규제 심사에서도 향후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3년의 규제일몰이 마련되었음.¹²⁾
 - 중국의 경우 텔레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신거부의사 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음. **kiri**

11)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2009).

12) 제477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결과(2014. 2. 21).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요약

■ 골드만 삭스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보험회사 CFO·CIO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올해 들어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 펀드, 부동산담보 대출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투자패턴의 변화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자산운용수익 악화가 불가피하여 비유동성 프리미엄(illiquidity premium)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투자수익률 면에서도 미국 오피스 시장의 경우 10% 내외의 투자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오피스 시장 투자수익률도 5% 내외로 타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들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보험회사 계열 부동산 자회사는 독립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와는 상이한 투자패턴을 보여야 한다는 점, 둘째 해외 부동산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직접투자 보다는 간접투자를 통한 단계적인 투자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음. 한편 국내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4월 29일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 확대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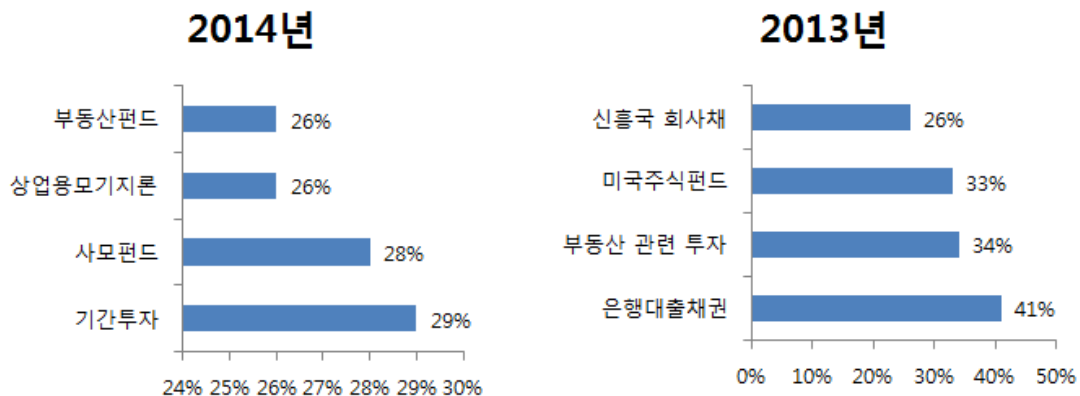
■ 골드만 삭스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보험회사 CFO·CIO 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향후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펀드,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음.¹⁾

- 전체 응답자 중 26%는 향후 1년 내에 부동산펀드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20% 이상은 부동산 투자를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대상 상위 3개 중 하나로 꼽았음.
 - 2014년 설문조사 결과 투자 수익률 보완 차원의 대체투자, 즉 기간시설 투자(29%), 사모펀드(28%), 상업용 모기지론(26%), 부동산펀드(26%)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답변이 두드러짐.

1) Siegel M.H. & Athans A.L.(2014),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surance Survey: Risk On Reluctantly"를 인용함.

- 반면에 지난 2013년 조사에서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투자대상 상위권에 은행대출채권(41%), 부동산 관련 투자(34%), 미국주식펀드(33%), 신흥국 회사채(26%) 등이 올랐음.
- 부동산 관련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는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자산운용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여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비유동성 프리미엄(illiquidity premium)에 기대를 걸기 때문으로 분석됨.
-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인플레이션 헷지에 유리할 뿐 아니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임.

〈그림 1〉 글로벌 보험회사의 투자대상 자산 우선 순위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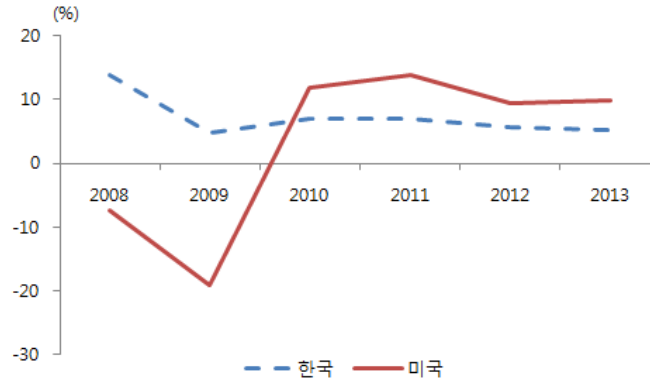
주: 그래프에 표시된 각 수치는 “향후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의 투자 비중을 증가, 감소, 유지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중 가운데 증가(%)와 감소(%) 응답률 차이를 말함.

자료: Siegel M.H. & Athans A.L.(2014),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surance Survey: Risk On Reluctantly”, p. 20 재정리함.

■ 최근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 회복세로 미국 오피스 시장 투자수익률은 10%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 내외로 기타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상업용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다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2011년에는 연간 13.76%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9.86%로 10%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상업용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다소 주춤하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현재 5.3%의 연간 투자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2〉 한국과 미국 상업용 오피스 투자수익률 비교



주: 1) 한국의 상업용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임.

2) 미국의 상업용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미국 NCREIF Property Index Returns 중 전국 오피스의 분기별 데이터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국토해양부, NCREIF(National Council of Real Estate Investment Fiduciaries).

●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기타 금융상품과 단순 수익률 비교를 하더라도 안정적임.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상업용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5.3%로 국고채 3년물(2.79%), KOSPI(0.73%), 정기예금(2.73%) 등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임.

〈표 1〉 부동산 투자와 기타 금융상품과의 투자수익률 비교

(단위: %)

구 분	오피스	국고채(3년)	회사채(3년)	KOSPI	정기예금	CD(91일)	금
2011	6.97	3.62	4.41	-6.95	3.69	3.44	28.25
2012	5.55	3.13	3.77	5.94	3.43	3.30	6.08
2013	5.30	2.79	3.19	0.73	2.73	2.72	-26.80

주: 투자수익률은 각 금융상품의 특징과 만기 등을 배제하고 단순 평균 수익률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함.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4. 3. 12), “2013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동향”, p. 4 인용함.

■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전체 운용자산 가운데 부동산 투자 비중은 3%대에 머물고 있어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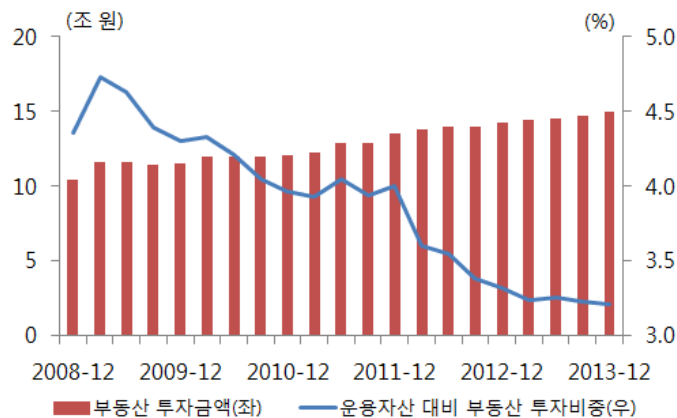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금액은 지난 2008년 12월 기준 10조 4,244억 원에서 2013년

2) 보험업법 제 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의 8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는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12월 말 기준 14조 9,895억 원으로 1.5배 성장했음.

- 반면에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 비중은 지난 2009년 3월 말 4.73%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 12월 말 기준 3.21%를 기록함.

〈그림 3〉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 (직접)투자 비중



자료: 금융통계월보.

- 일부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부동산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의 투자용 부동산 관리와 부동산 관련 해외투자를 수행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계열의 부동산 자회사는 독립적인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와는 상이한 투자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자회사들은 핵심자산(Core Asset) 위주로 안정성 위주의 투자전략을 취하는데 반해 독립된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들은 향후 부동산 개발이익 창출을 목표로 현재 저평가된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 발굴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가치창출자산(Value-Added Asset) 위주의 투자전략을 추진하고 있음.³⁾

- 글로벌 보험사인 Prudential과 MassMutual은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In-House 조직에서 관리하는 반면,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3) 핵심자산(Core Asset)은 장기적인 임대료 상승과 자산 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 주로 입지 및 시설용도, 임대수입의 안정성 면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상업용 부동산을 말함. 반면에 가치창출자산(Value-Added Asset)은 용도 및 시장성 측면에서 현재 상태로는 가치가 낮지만 재개발 혹은 임차인 갱신을 통해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경우 핵심자산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가치창출자산은 핵심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높고 투자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음. LaSalle의 “ISA 2013”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자산의 평균 수익률(금융부채 제외)은 6%(표준편차는 2%)인데 반해 가치창출자산의 평균 수익률(금융부채 제외)은 12.4%(표준편차는 7%)였음.

있으며 최근에는 독자적인 수익창출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음.

〈표 2〉 보험회사 부동산 자회사와 독립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의 비교

비 고	보험회사 계열 부동산 자회사	독립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
특징	• 핵심자산(Core Asset) 중심 투자 • 고수익보다는 투자 안전성 위주 • 모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서 자유롭지 못함	• 가치창출(Value-Added Asset) 중심 투자 • 고수익 추구 가능 • 다양한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유로운 포트폴리오 운용
사례 1	• PREI(Prudential Real Estate Investors) - Prudential의 부동산 자회사 - 초기에는 모회사의 투자용 부동산 관리업무와 모회사의 법인고객 대상으로 국내외 부동산 자산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 - 최근에는 모기업 위탁운용규모가 전체 운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독자적인 수익창출 기관으로 모회사 수익제고에 기여	• LaSalle Investment Management - 전세계 18개국에 걸쳐 2013년 3분기 기준 476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펀드 및 부동산 관련 채권 투자 -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및 전세계 부동산 투자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
사례 2	• Cornerstone Real Estate Advisers - MassMutual의 부동산 자회사 - 초기에는 주로 모회사의 투자용 부동산을 관리 하는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수익창출 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보	• CBRE - 전세계 42개국 진출, 831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임대사업 영위 - 건물임대 관리, 대출 및 대출관련 부대업무, 부동산 관련 투자 및 자문서비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투자업무 수행

주: MassMutual은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의 브랜드명임.
 자료: 강형구·이창민·이상엽(2012), 「영미 선진기업의 부동산투자 사업전략」, 영미연구 제 27집, pp. 350~351 재정리함.

■ 국내 보험회사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나 현지 회사와의 제휴·협력 관계를 통한 점진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확대가 바람직해 보임.

● 강형구 외(2012)⁴⁾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회사의 보편적인 해외부동산 투자 단계는 해외간접투자를 거쳐 공동투자, 직접 해외투자, 위탁 해외투자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외 부동산 관련 투자 환경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고수익 추구 보다는 장기적인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핵심 부동산 위주의 단계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됨.

●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임대주택

4) 강형구·이창민·이상엽(2012), 「영미 선진기업의 부동산투자 사업전략」, 영미연구 제 27집, p. 345 인용함.

리츠가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간접투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부동산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가 예상됨.
- 지난 4월 11일 임대주택 리츠 투자를 위한 기관투자자 공동투자협약에는 삼성, 교보를 포함한 16개 보험회사가 참여해 38개 총 금융기관의 투자의향 금액이 13조 6,000억 원을 기록함. **kiri**



이슬람 금융과 금융회사 해외사업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 인구 규모 등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미주, 유럽 지역보다 해외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음. 해외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중요한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최대 종교가 이슬람이고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가진 지역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슬람 금융이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 서비스 제공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특히 보험의 경우 현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험서비스를 현지 보험회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제공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외사업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지화를 위한 이슬람 금융·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시장의 시장 포화와 수익성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은행, 증권업의 수익성이 2010년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및 고착화 우려로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포화상태(Market Saturation)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임.

●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즉 지역 다각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하거나 국내 은행이 해외 보험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함.¹⁾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은 미주·유럽 등 선진시장보다는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활발함.

1) 금융위원회(2014. 7. 10), 「금융규제 개혁방안」.

- 한화생명은 2009년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이후 2013년 11월 인도네시아 법인영업을 본격화하였고, LIG손해보험은 1997년 12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이후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에 지점을 개설함.
- 우리은행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지점을 개설한데 이어 인도네시아의 사우다라 은행 지분 33%를 2014년 11월 인수하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영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지역은 최대 종교가 이슬람이고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부가 이슬람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²⁾

- 전세계 이슬람 금융 규모는 2011년 약 1.1조 달러로 추산되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서 정해진 사회·경제적 제약 조건에 따라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이루어지는 금융으로, 이슬람 금융기관의 역할은 예금자·투자자 자금을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금융기관과 예금자·투자자와 배분하는 것임.
 - 화폐는 알라신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이며 거래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서구 금융방식의 이자를 부정함.
 - 화폐가치 증가는 시간 경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노동력에서 창출되어야 한다고 믿어 상업적 거래와 실물 투자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자금 조달자와 운용자가 배분함.
 -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의 경우, 상호부조, 협동 및 형제애 실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보험과는 다르게 계약자가 보험료를 타카풀 운영사에 예탁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예탁금중 일부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기부금으로 지불되는 구조임.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110억 달러 규모의 전세계 타카풀 시장 가운데 1/3을 차지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35%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됨.³⁾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수쿠크)⁴⁾ 발행 잔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도 이슬람 채권 활성화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금융이 확산되고 있음.

2) 인도네시아 인구는 2012년 2.5억 명(세계 4위)이며 인구의 약 85%가 무슬림(이슬람 교인)이고 말레이시아 인구는 2,924만 명이고 그 중 60%가 무슬림임.

3) 딜로이트(2011. 11), 『인도네시아 거시환경, 은행, 보험산업 분석』.

4)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자산유동화와 유사한데 발행자는 대차대조표상에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정부·금융회사 등이고, 담보부 수쿠크(Ijarah Sukuk)가 일반적임. 리스 담보부 수쿠크의 구조는 먼저 특수목적기구(SPV)가 자금수요자의 자산을 담보로 수쿠크 채권을 발행하고, 발행 대금으로 자산을 구매한 후 자금수요자에게 다시 자산을 리스함. 자금수요자는 약정된 시점에 SPV에 리스 자산 임대료를 지급하고 만기 도래 시 자산을 SPV로부터 다시 매입함. SPV는 임대료 수입과 임대자산 재판매 대금으로 채권 보유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경우 현지 이슬람 금융·보험시장 진출이 활발함.

- 영국의 프루덴셜은 2006년 말레이시아 국영 심파난 은행과 합작으로 타카풀 보험회사를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였고 AIA그룹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은 2008년 타카풀 면허를 획득함.
- 일본의 도쿄해상그룹은 말레이시아 홍콩그룹과 합작으로 이슬람보험회사를 2006년 설립하였고 2010년 도쿄미쓰비시UFJ은행은 이슬람 대출⁵⁾을 말레이시아에 판매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 금융의 구조적 안정성이 주목받기 시작하며 이슬람 금융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⁶⁾

-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실물자산을 매개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기적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과다한 신용창출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투기적 순화구조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음.⁷⁾
 - 술, 돼지고기, 무기생산 등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사업이나 이자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자산이 미수금인 기업, 과다한 부채, 상당한 이자수입을 갖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가 금지됨.
 - 불명확성(Gharar)을 배제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는 금지됨.⁸⁾

■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현지화를 통한 현지인들과의 상호신뢰 구축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지의 사업·금융 관행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함.

- 보험수요는 현지의 국가적, 정치적, 문화적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현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현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⁹⁾
 -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금융관행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현지 사업·금융 관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성을 확보해야 함.
 - 90년대 후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남성 설계사”와 “변액보험” 등 국내 보험회사와 차별할 수 있는 판매채널과 상품을 출시한 후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경험이 있음. [kiri](#)

5) 이슬람 금융에서 대출은 실물거래를 수반하는데, 금융회사는 대출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산을 임대(Lease) 혹은 구매한 후 이를 대출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임. 대출수요자는 금융회사에 약정수수료나 임대료를 지급함.

6) 수출입은행(2011. 9),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활용 방안」, 해외경제연구소.

7) 예금보험공사(2010. 12), 「금융안정연구」, 제11권 제2호.

8) 보험의 경우도 불명확성 원칙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1985년 ‘보험과 재보험에 관한 결정 9호’를 통해 샤리아를 준수하면서 상호부조와 각출에 근거한 협동적 보험을 인정함. 보험연구원(2010).

9) Altuntas 외(2014. 5. 30), “Does One Size Fit All? Determinants of Insurer Capital Structure Around the Globe”, Asia 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10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8월에 이어 0.25%p 인하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까지 하락함.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금융수요 증가를 통해 금융산업에 긍정적일 수 있음. 보험산업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중장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산운용수익률 둔화, 이차역마진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표준이율이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 보험산업의 잠재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증가 등으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국내 실물경제 회복 지연으로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산업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저금리 장기화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정책적·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지난 10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8월에 이어 0.25%p 인하(2.25%→2.0%)함.

● 기준금리 2.0%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지속되었던 역대 최저 수준임.

■ 정부의 경제정책 공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했으나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유동성함정을 경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는 견해임.

● 또한 국내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축소되어 자본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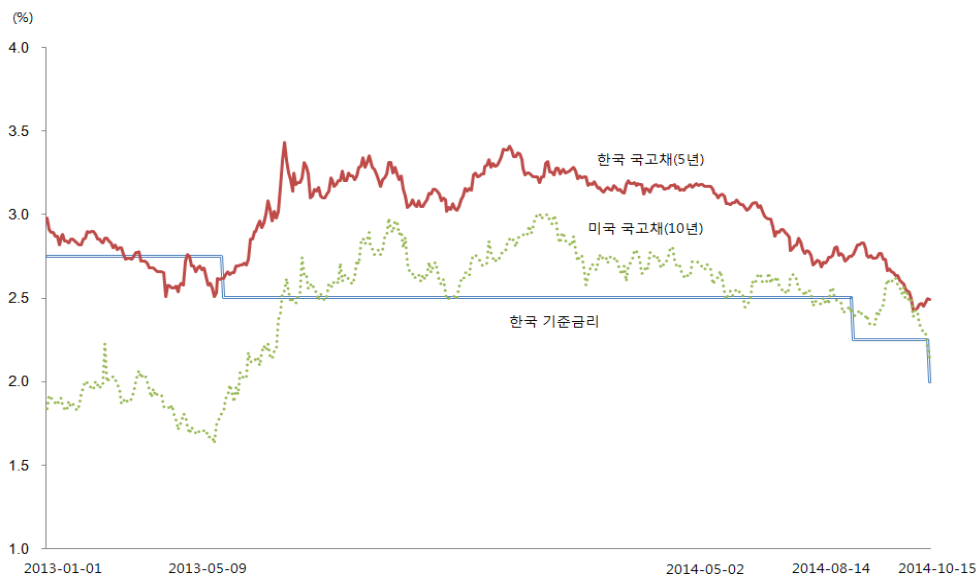
1) 전용식·이해은(2014. 10. 13),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논의와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검토」,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금리는 하락할 것이나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중장기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기준금리 인하 이후 콜금리는 0.24%p, CD유통수익률, 3개월 KORIBOR는 0.10%p, 하락하였음.
- 10월 초부터 상승하던 국고채(3년, 5년)금리도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것이 기준금리 인하때문인지는 불명확함.

- 중장기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왔음.
- 중장기 국채금리는 2013년 5월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도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 상승에 따라 상승하였고 2014년 8월에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상승한 바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가 해외 금리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
- 중장기 국채금리 하락은 유럽경제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와 미국 달러강세 부담 등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국내 기준금리와 국고채 5년물 금리,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증가 등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어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아짐.

- 10월 초부터 중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기대감에 따른 것이었음.
- 지난 7월부터 지속된 미국의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됨.
 - 달러 강세는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달러 강세 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미국 경제회복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일 것이라는 주장임.
 - 1978년부터 85년, 그리고 1995년에서 2001년 기간 동안의 두 차례 달러 강세 원인은 1,2차 오일쇼크로 안전자산으로 달러화가 부각되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었음.
-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의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경제 회복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기는 어려움.
 -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0월 15일 거래 중 1.86%까지 하락(2013년 5월 이후 최초로 2%수준을 하회)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안전자산 선호 증가 등을 반영함.²⁾

■ 국내 실물경제 회복 지연과 함께 보험산업이 운용하는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민간소비와 투자부진이 금리 수준보다는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자산시장 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회복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으로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이로 인한 소비와 투자 부진을 제기한 연구도 있음.³⁾
-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하락과 이차역마진 확대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표준이율이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음.
 - 표준이율은 책임준비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이나 현실적으로 예정이율⁴⁾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이율이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보험료

2) 국제금융센터(2014, 10, 16).

3) Brunnermeier and Sannikov(2011); 전용식·윤성훈 외(2014, 5),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험연구원, 재인용.

4) 일반적으로 예정이율과 공사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료에 적용하는 금리로서 은행 예적금 금리(이율)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보장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는 예정이율로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는 공사이율로 구분함.

책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차역마진은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뿐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때문에 2000년 이후 판매가 늘어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역마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생·손보 모두에서 심해질 수 있음.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인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직전 12개월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그리고 국고채수익률과 CD유통수익률의 과거 3개월 평균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시중금리 하락이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음.

■ 저금리 장기화가 어느정도 지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정책적·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세계경제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저금리 지속기간을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본의 경우 20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보다 더 긴 기간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음.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부진을 겪는 국가들이 다수이기 때문임.
- 표준이율과 예정이율이 시장금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차역마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kiri](#)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채널 활성화 방안 필요

박정희 선임연구원

요약

■ 최근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채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보사의 경우에도 온라인자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음. 2013년 온라인을 이용한 보험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 TM,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계약 건수가 전년대비 16.7% 증가한 3,723만 건을 기록하였음. 반면, 온라인 채널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오프라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판매방식에 자구적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보험회사는 특약위주의 복잡한 상품보다는 단순한 상품으로 판매가 이뤄져야 하며, 판매방식에 있어서도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온라인 채널을 건전화 할 필요가 있음. 보험소비자는 온라인 특성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뿐이지 보험상품은 동일한 구조임을 인식하고 사전에 자가설계나 정보 검색 등을 통한 selffinance족의 자세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선택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채널의 일원화된 감독지침보다는 세분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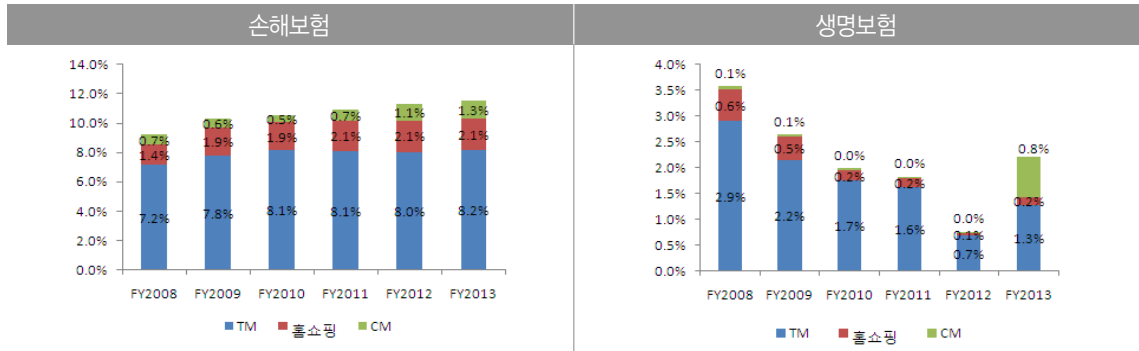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채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보사의 경우에도 온라인자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이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3월말 생명보험의 비대면채널 비중은 전년대비 1.5%p 상승한 2.3%를 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은 전년대비 0.4%p 상승한 11.6%를 차지함.
 - 생명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업비로 상품을 제공하면서 보험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채널 특성상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매비중은 낮은 수준임.
 - 반면, 손해보험은 주로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형태인 것이 많아 고객이 직접 찾아서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채널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¹⁾

1)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3년 온라인자동차보험 실적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중 29.2%,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중 36.0%가 온라인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온라인 자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최근 온라인 채널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음.

〈그림 1〉 손·생보 비대면채널 판매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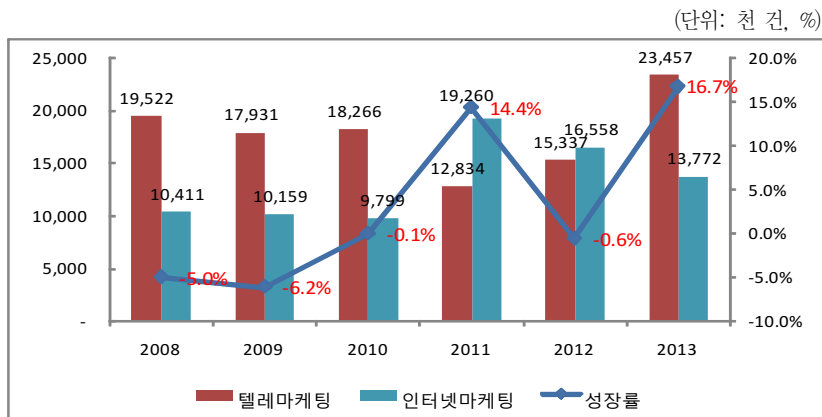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2014. 6), 『보험통계월보』.

- 2013년 온라인을 이용한 보험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보험계약 건수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3,723만 건으로 나타남.

- TM채널의 보험상품 계약 건수는 전년대비 52.9% 성장한 2,346만 건을 기록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CM채널의 계약건수는 16.8% 감소한 1,377만 건으로 나타남.
 - 온라인 채널에서도 여전히 TM 중심의 영업 방식이 주를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2〉 보험 관련 온라인마케팅 현황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4. 7), 『201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 특히,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고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의무보험의 경우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 온라인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한국소비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종합만족도 차이는 오프라인이 0.03점 높은데 반해 가격에 대해서는 온라인이 0.1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오프라인은 전문성에 높은 점수를, 온라인은 가격에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서비스체험이나 대응성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30~40대 주 운전 계층의 가입성향이 높고,²⁾ 수도권 지역의 온라인 가입률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온라인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 1〉 자동차보험 관련 만족도 조사

(단위: 점)

구 분	종합만족도	전문성	고객지향성	대응성	서비스체험	가격
온라인(7개사)	3.53	3.58	3.50	3.63	3.47	3.53
오프라인(6개사)	3.56	3.64	3.53	3.65	3.47	3.36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2014. 8), 『자동차보험 만족도 조사』.

■ 온라인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생·손보사의 TM, 홈쇼핑 등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오프라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판매방식의 자구적 관리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 생보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복합(2.5%), 다이렉트(1.26%), 기타(1.24%), 홈쇼핑(0.91%)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 손보사의 경우에는 TM(0.78%), 기타(0.39%), 홈쇼핑(0.33%), 다이렉트(0.27%)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2〉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

(단위: %)

구 분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대리점				직영	
			방카	TM	홈쇼핑	기타	복합	다이렉트
생보사	0.46	0.64	0.4	1.14	0.91	1.24	2.5	1.26
손보사	0.18	0.15	0.26	0.78	0.33	0.39	0.18	0.27

주: 2013년 생명보험 25개사와 손해보험 14개사의 불완전판매 비율[(품질보증해지건수+민원해지건수+무효건수)/신계약건수×100]의 평균치임(단, 농협실적은 제외).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2014).

2) 2013년 온라인자동차보험 실적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 중 30~40대의 온라인가입자는 62.2%, 오프라인 가입자는 51.2%로 나타남.

- 사실상 복잡한 보험상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고 본인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여기에 상담원들의 부실한 설명마저 더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는 상황임.
 - 또한 대형사에 소속된 대리점의 경우 판매과정에 대한 영업 관리가 가능하나, 중소형사의 경우 비전속대리점이 많아 채널의 성격은 무시한 채 성과에만 집중하는 영업방식과 과장광고 등이 문제임.

■ 판매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과 판매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온라인채널이 보다 건전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비대면채널 특성에 맞는 단순한 상품에서 보장을 확대하는 방식의 판매가 이뤄져야 하며,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³⁾과 같은 자율적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특약위주의 복잡한 상품보다는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단순실손보험 등과 같은 단순한 상품으로 판매가 이뤄져야 하며, 판매방식에 있어서도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온라인 채널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음.⁴⁾
- 소비자 측면에서는 온라인채널의 특성상 수수료 절감 등에 따른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한다는 것이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태에 맞는 상품설계는 타채널과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사전 자가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본인이 직접 상품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설계해 보는 등 selffinance족의 자세가 필요함.
- 금융당국은 주도적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일원화된 감독지침 보다는 세분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온라인거래에 대한 행위규제가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 Ⅲ-3-5 (16)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 체결 시 고객이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고객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 등의 내용을 알리고 있음.⁵⁾ [kiri](#)

3) 2014년 3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보험업계는 2014년 4월부터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대면 영업 시 이를 준수하고 있음.

4) 예컨대 미국의 경우 우편, 이메일, TV 등 직접응대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특별히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나,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침해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초청규정(Do-Not-Call Rule)을 제정·실시하고 있음. 이 같은 법률은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음.

5) 황진태(2012),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만연한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지도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발표하였음.
 -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은 행정지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 금융시장에 만연한 숨은 규제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법규리스크 및 법규준수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향후 금융감독 목적에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지도의 금융회사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도 이원적 경쟁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업무협약의 및 정보공유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대한 숨은 규제로 기능하던 행정지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¹⁾하기로 하였음.
- 지난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및 8월 금융혁신 실천계획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금융시장에 만연한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지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 운영규칙²⁾을 보완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금융위원회(2014. 10. 30),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정” 보도자료.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12호.

〈행정지도 방식〉

-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원칙적으로 1년 이내), 일련번호,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 행정지도 시 금융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행정지도 공문에 명시하도록 함.
-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구두지도의 존속기간을 1년에서 90일로 단축하도록 함.
- 행정지도 신설·변경·폐지 후 7일 이내에 (가칭)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하도록 금융당국의 전산등록 기한 명시

〈행정지도 절차〉

- 행정지도 관련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하여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 활용도 권고하되 긴급한 경우, 금융당국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 사전협의 및 사전보고 대상을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만 사후보고를 허용하며 이 경우 존속기간을 6개월로 한정함.
- 금융위원회 보고 시 필수 보고사항³⁾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후관리 강화〉

- 행정지도 내용이 법령 반영에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지도의 존속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도록 하며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함.

■ 본고는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행정지도 원칙 준수와 이원적 규제의 상충 완화 측면에서 평가함.

- 향후 행정지도 관련 금융규제 관행의 문제점과 이원적 규제상충이 완화되어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3) 1. 실시사유 및 내용 2. 관련 법령 3. 금융회사 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4. 의견청취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 5. 금융당국 간 상호협의의 결과 6.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 검토 7. 존속기간 8. 추후 법령 또는 규정으로 반영 필요 여부 검토 및 필요 시 반영 계획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위로 정의되고(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행정절차법 제48조).

-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그쳐야 함(필요최소).
- 행정지도를 받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됨(임의성).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됨(불이익조치 금지).

■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행정지도 운영규칙도 이러한 행정지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지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행정지도는 금융감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지도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됨.
- 행정지도 시 해당 행위가 행정지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그 취지, 내용, 및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의 신분을 밝혀야 함.
-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사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안, 기타 경미한 사안에 한해 구두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서면 교부 요청 시에는 특별한 사유⁴⁾가 없으면 응해야 함.

■ 명시적인 행정지도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의 실제 운영에서는 이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행적인 구두지도 등으로 남용되어 왔으며, 특히 포괄적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행정지도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금융시장에 대한 숨은 규제로 작용하여 왔음.

- 행정지도 방식에 있어 원칙적으로 문서로 실시하고 전산에 등록·관리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존속기한도 불분명한 구두지도가 남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이미 폐지되었거나 행정지도가 아닌 내용을 행정지도로 인식하는 문제⁵⁾가 제기됨.
- 또한 행정지도 전 금융회사 의견 수렴 과정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지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내용의 법령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실제로 법령에 반영된 실적은 미미함.

4)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7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 10. 30)에 의하면 2014년 10월 29일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위 보고 또는 전산 등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37건(금융위원회 7건, 금융감독원 30건)이지만 금융회사가 준수하는 행정지도는 600건으로 파악됨.

■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은 행정지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 금융시장에 만연한 숨은 규제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법규리스크 및 법규준수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행정지도가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서화되고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감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므로 이전의 구두지도에 비하여 행정지도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비용을 감소시킴.

● 또한 제도적으로 자유화된 이자율 등 금융상품 가격을 행정지도를 통해 통제하던 관행이 줄어들어 금융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당국이 부당 공동행위(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의 이원적 규제⁶⁾의 상충으로 인한 금융회사 법규리스크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음.

● 보험시장을 예로 들면, 200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 심결사례는 8건이며 이 중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연관되어 있음.

● 보험회사 담합 혐의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상급심 재판 결과 무죄로 혐의⁷⁾를 벗어나더라도 보험업에 대한 전반적 신뢰를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행정지도로 인한 이원적 규제 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⁸⁾도 발의된 바 있음.

● 또한 금융시장 이원적 규제의 조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체결한 업무협약(MoU)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이 협의 중에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지도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6) 각각의 규제는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개별 조항의 요건 및 효과도 달라 양 법률에 각각 근거한 적법한 처분에 대해 중복규제라 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2007). 따라서 “이중” 규제가 아니라 “이원적” 규제라 부르는 것이 타당함.

7) 최근 변액보험 최저보장수수로 관련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보험회사가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취소를 판결하였음.

8) 김종훈 의원(대표발의) 외 11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393.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을 참조; 이승준(2014), 「행정지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금융 포커스, 주간이슈 298호, 2014. 9. 1.

-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금융회사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정거래당국은 행정지도에 따른 금융회사 행위에 대한 판단 시 금융당국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실질적 구속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국 간의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행정지도 내용 및 필요성에 관한 양 기관의 협의가 활성화되면 이원적 규제상충 문제가 크게 완화되고 금융회사 법규리스크 감소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kiri**



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요약

■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 상품, 서비스, 농업에 관한 협상은 타결된 가운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우선 개방한 후 FTA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반면, 금융분야에 관한 한-중 FTA 협상은 1단계만을 마쳤으며, 상대방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각국에 진출하여 발생하는 영업시 애로사항 등을 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말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및 무역수지 흑자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한-중 FTA 타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의료,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한-중 FTA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가 증진될 경우 양국 경제의 동조화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¹⁾ 타결²⁾되었다고 공식 선언함.³⁾

●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

●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1)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에 따르면 양국의 협상이 ‘완전 타결’이 아니라 ‘실질적 타결’이라고 한 것은 협정문 문안 작성과 이에 필요한 자구 수정, 그리고 국내 법률적 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임.

2)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후, 14차례 협상을 거쳐 30개월 만에 타결됨.

3)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됨.

● 양국 정부는 2014년 내 세부 작업⁴⁾을 마무리 하고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 뒤, 2015년 초 양국 정부 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할 계획임.

■ 상품, 서비스, 농업에 관한 협상은 타결된 가운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지티브 방식⁵⁾으로 우선 개방한 후 FTA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⁶⁾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중국내 법규 및 제도 정비는 상당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우선 규정하고, 그 후 구체적인 사항은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협상을 종료기로 합의함.

■ 반면, 금융분야에 관한 한-중 FTA 협상은 1단계만을 마쳤으며, 상대방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각국에 진출하여 발생하는 영업시 애로사항 등을 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말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 이번 FTA 협상에서 중국은 최초로 금융 별도의 장(chapter)을 수용하였으나⁷⁾, 금융시장 개방수준은 2001년 WTO 가입 당시에 허용한 수준에 그쳤음.

- WTO 가입을 계기로 보험산업을 비롯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본격화 되었으나 아직도 자동차보험 영업 및 생명보험회사 설립 등 높은 진입 규제가 있음.⁸⁾
- 현재 중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분야에 제한적인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⁹⁾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위안화 허브 구축 및 RQFII로 자본시장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

■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금융 투명성을 제고하고¹⁰⁾,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당국 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하였으며,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당국

4) 영문 작성 후 양국 언어로 협정문 작성하는 기술적인 사안.

5) 개방할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임.

6)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중국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기로 합의함.

7) 그 동안 중국은 FTA 협상을 통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의도가 없어 최근까지 체결된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별도로 논의하거나 별도의 장으로 기재하지 않았음. 다만, 서비스교역에 관한 논의 속에 간략한 금융서비스 관련 원칙적인 조항을 포함시키는데 그쳤음.

8) 중국의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외자 생명보험회사 보유자본을 50%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외자 생명보험회사 전임직원 에 대해 중국어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지점설치 요건이 있으며 외자계 보험중개채널에 대한 지분소유가 24.9%로 제한되어 있음.

9)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는 중국이 해외투자자들에게 한도 내에서 위안화로 본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10) 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

간 별도의 협의 채널도 확보함.

- 양국은 금융분야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금융당국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사전에 이해당사자 의견 조화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수정된 규제안은 공표해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의함.
- 무분별한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을 막기 위해 ISD 제기 대상 안건이 금융 건전성을 위한 조치인지 여부를 조율하기로 함.
 -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ISD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금융회사들은 이를 영업상 규제로 인식하여 ISD 제기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임.
- 양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한-중 FTA 협상 진행 상태를 점검하기로 함.
 - 그 동안 중국의 FTA 협상에서 금융분야는 서비스 부문 위원회의 일부분이었지만, 동 FTA 협상에서는 독립 위원회 설치에 합의함.

■ 한-중 FTA 타결로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모두 FTA를 타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이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및 무역수지 흑자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동 협상 발효 시 우리나라의 FTA 시장은 글로벌 GDP의 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모가 단기적으로는 612억~626억 달러(한-중 FTA 체결 전후대비 4.9~5.1%), 장기적으로는 836억~837억 달러(한-중 FTA 체결 전후대비 6.7~6.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그 중 금융서비스산업의 규모는 단기적으로는 45억~46억 달러(한-중 FTA 체결 전후대비 4.9~5.0%), 장기적으로는 63억 달러(한-중 FTA 체결 전후대비 6.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의료,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됨.

- 한-중 FTA로 중국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개방도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금융시장의 경우 한-중 FTA는 수출환보험 및 무역금융 등 기업을 뒷받침해주는 금융을 비롯하여 온라인금융결제시장, 기업금융시장,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중국인의 역직구¹¹⁾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로 인한 관세 철폐로 온라인금융결제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함.
- 한-중 FTA로 중국기업 신용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투자금융업무가 확대되어 국내은행들의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¹²⁾가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투자은행(IB) 업무가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이미 중국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한-중 FTA는 관세 철폐에 따른 중국 수입물품 가격 하락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하락을 유도하여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중으로 중국 금리 인하도 예상되면서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입단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은행산업의 경우 한-중 FTA 체결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향후 위안화 결제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위안화를 취급하는 예금·대출·파생상품을 출시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 중임.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4년 11월 공동으로 위안화 정기예금을 6개월, 1년 만기로 출시함.
 - 4억 위안(외환 3억 위안, 하나 1억 위안) 한도로 특별 판매하며, 금리의 경우 6개월 만기는 연 3.0%, 1년 만기는 연 3.1%임.
- 우리은행은 역외 위안화(CNH)를 기준금리로 삼은 입출식 통장, 자유적립식 및 회전식 정기예금 등의 위안화 예금 패키지를 출시함.
 - 예금 금리는 최장 3년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과 최장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회전식이 연 3.07%(우대금리 포함)임.
- 신한은행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위안화 정기예금 상품 도입을 검토하며 2014년 내에 위안화 외화 대출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기업은행도 현재 1년 만기에 금리가 2.9%인 위안화 정기예금 상품을 개편해 출시할 예정임.

11) 국내 소비자의 인터넷 해외직구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국인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임.

12) 현재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는 6.0%로 한국은행(2.0%)보다 4.0%p 높음.

■ 보험산업의 경우 동 협상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와 투자를 네거티브방식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중국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됨.

- 중국은 서비스산업이 취약하여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도 중국 시장 진출 시 현지 기업과 무조건 50% 합작을 해야 하는 생명보험회사 지분규정을 완화하지 않았음.
- 그러나 외국자본의 생명보험회사 지분 제한 규정은 2015년 중에 동 FTA와 상관없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¹³⁾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을 현행 79개에서 35개로 줄이고 외자지분을 제한 완화 목록을 43개에서 11개로, 중국회사 지배주주 제한 업종을 44개에서 32개로 감소함.
 - 또한, 동 목록에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의견수렴이 끝나고 정식발표가 된다면 생명보험회사 지분규정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의 경우 한-중 FTA 타결로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금도 중국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독자 투자가 가능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손해보험업계는 동 FTA 타결로 중국내 금융규제 시스템의 투명성이 높아져 중국에 이미 진출한 손해보험회사들을 비롯하여 아직 진출하지 않은 손해보험회사들의 영업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함.
 - 국내 18개 손해보험회사 중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한 손해보험회사는 삼성화재¹⁴⁾를 비롯하여 현대해상¹⁵⁾, LIG손보¹⁶⁾, 동부화재¹⁷⁾ 등 총 4개사로, 동부화재는 중국 보험회사에 지분투자를, 그 외 나머지 3개 손해보험회사는 현지법인을 설립함.

13) 3년마다 수정안이 발표되고 있는데 동 수정안은 외상투자 관련 제한목록 감소 및 허용 분야 확대 등 여러 면에서 과거 수정안 대비 변화가 큼.

14) 삼성화재는 삼성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라는 법인이 중국 보험시장에서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 최초로 중국에서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한 삼성화재는 2013년 중국시장에서 1,091억 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15) 현대해상은 중국에서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대해상의 중국 법인인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는 2013년 485억 6,000만 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16) LIG손해보험은 LIG재산보험유한공사라는 중국법인이 일반보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법인의 2013년 원수보험료는 174억 6,000만 원을 기록함.

17) 동부화재의 경우 중국 현지 보험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중국보험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안청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의 지분 15.0%를 보유한 3대 주주임.

-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투자액 증가에 따른 상품교역 관련과 공장재산보험 등의 신규 수요 증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보험회사에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¹⁸⁾

■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가 증진될 경우 양국 경제의 동조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 전이 및 확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kiri](#)

18) 보험신보(2014, 11).



자동차보험을 통한 다른 손해보험 상품 판매 가능성 분석¹⁾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 Association rule mining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손해보험 회사들은 자동차보험과 기타 장기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또는 상호 연관된 상품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상품뿐 아니라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담보 위험별로 나누면 수십 가지로 다양하지만 크게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음.²⁾
- 이 보험상품 구분은 다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장기보험은 상해보험, 건강보험, 종합보험, 저축성보험, 어린이 보험, 상해보험은 여행보험, 교통상해보험 등으로 세분됨.

〈표 1〉 손해보험 상품 종류

구 분	종 류
자동차보험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장기손해보험	상해(운전자 보험 등), 건강(의료, 질병 등), 종합(재물 및 상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등), 어린이 보험
상해보험	여행보험, 교통상해(보험기간 1년 이내)
통합보험	—

주: 1) 동 상품 분류는 소비자가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도록 복잡한 상품분류를 단순하게 재분류한 것임.

2) 동 분류기준 중에서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상품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정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본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전용식 외 6인(2014),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p. 254.

1) 본 연구는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임.

2) 본 상품 구분은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에서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분한 기준임.

■ 자동차보험 상품 권유와 동시에 다른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손해보험채널들의 유용한 소비자 접근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손해보험 상품들 중에서 소비자에게 접근하기에 용이한 상품이 자동차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보험 담보들 중에서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가입한도 1,000만 원 한도)³⁾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자동차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보험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런데 자동차보험 판매가 다른 보험 상품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인지 등 손해보험 상품들 사이의 판매 연계성을 막연한 추정보다는, 통계를 통해 확인해본 후에 유효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에서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상품 구매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보험 상품과 장기손해보험의 일부 상품들은 소비자에게 추가로 권유할 경우에 판매 가능성이 기타 상품들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됨(장기보험상품⇒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장기보험상품).

- 2014년 손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Association Rule mining⁴⁾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3) 두 담보 이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대인배상Ⅱ도 소비자에게 필수 불가결한 담보로 인식되어 있음.

4) Chengqi Zhang, Shichao Zhang(2002), "Association Rule Mining", Springer.

Agrawal, R.; Imieliński, T.; Swami, A.(1993). "Mining association rules between sets of items in large databases". "Proceedings of the 1993 ACM SIGMO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data - SIGMOD '93", p. 207.

※ association rule mining

- association rule mining은 Rakesh Agrawal et al.(1993)이 소개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써 마케팅, 경영, 의학,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법임.
- Rakesh Agrawal et al.(1993)은 슈퍼마켓의 POS(point-of-sale) 시스템으로 집적된 대용량 자료에서 소비자의 구매 상품 들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동 분석방법을 제안함.
- 모형
 - 시장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품항목의 집합을 $I = \{i_1, i_2, \dots, i_d\}$ 라고 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실제 장바구니의 집합을 $T = \{t_1, t_2, \dots, t_N\}$ 라고 할 때, t_j 에는 상품 $X(X$ 는 t_j 의 부분집합) 또는 Y 가 포함됨.
 - association rule $X \rightarrow Y$ 의 $X \cap Y = \emptyset$ 이며, 최종 association rule $X \rightarrow Y$ 은 support와 confidence를 이용하여 산출되며, 세부 분석방법은 Chengqi Zhang, Shichao Zhang(2002)을 참조하기 바람.

$$\text{support: } s(X \rightarrow Y) = \frac{\sigma(X \cup Y)}{N}$$

$$\text{confidence: } c(X \rightarrow Y) = \frac{\sigma(X \cup Y)}{\sigma(X)}$$

여기서 support 개수 $\sigma(X)$ 는 $\sigma(X) = |\{t_i | X \subseteq t_i, t_i \in T\}|$ 이고, $|\cdot|$ 는 집합에 포함된 요소들의 숫자임.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부 장기보험상품(장기 건강보험 또는 장기 상해보험) 또는 일부 장기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보험 상품을 권유하면 그 상품의 판매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표 2〉 참조).

- 자동차보험과 장기건강보험을 모두 구매한 소비자는 장기상해보험을 구매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소비자보다 약 50% 높은 것으로 분석됨(자동차보험과 장기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상해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은 약 63%인 것으로 분석됨).
- 장기상해보험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경우 자동차보험이 판매될 가능성이 일반적 소비자보다 약 35% 높은 것으로 분석됨(장기상해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을 구매할 가능성은 약 87%인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보험만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장기상해보험을 권유할 경우에 그 판매 가능성이 일반적 소비자보다 약 35% 높은 것으로 분석됨(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장기상해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은 약 56%인 것으로 분석됨).
- 장기건강보험과 장기상해보험을 모두 구매한 사람은 자동차보험이 필요한 소비자이며 이 소비자에게 자동차보험 구매를 권유하면 자동차보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일반적 소비자보다 약 27% 높은 것으로 분석됨(장기건강보험, 장기상해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은 약 82%인 것으로 분석됨).

〈표 2〉 Association Rule 분석결과

구 분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1	{auto, lggang}	⇒	{lsang}	0.1840629	0.6307692	1.5148663
2	{lsang}	⇒	{auto}	0.3625140	0.8706199	1.3490824
3	{auto}	⇒	{lsang}	0.3625140	0.5617391	1.3490824
4	{lggang, lsang}	⇒	{auto}	0.1840629	0.8200000	1.2706435

주: 1) “auto”는 ‘자동차보험’, “lggang”는 ‘장기건강보험’, “lsang”는 ‘장기상해보험’을 의미함.

2) 본 분석결과는 lift값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후 그 값이 1 이하인 경우는 제외시킨 것임.

3) 용어의 의미

가. support: 각 basket에 해당하는 조합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confidence: lhs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rhs 상품을 구매한 비율.

다. lift: 일반적 소비자에게 rhs 상품을 권유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 대비 lhs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rhs 상품을 권유했을 때 그 상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의 비율.

- 이상의 Association Rule mining 분석 결과를 통해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장기상해보험, 장기 건강보험을 하나의 묶음(basket)으로 하여 상품(판매)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각 판매채널 단위에서 손해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추가 판매가 가능한 상품위주로 권유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의 세부적인 전술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본 자료는 마케팅 목적으로 설계된 설문지가 아닌 일반적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항목 그리고 적은 통계량 (891부)⁵⁾을 분석한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실제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정교한 설문지로 확보한 충분한 통계량 또는 회사 내부의 거대자료(Big Data)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방법으로 손해보험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실무적 또는 실질적 차원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kiri](#)

5) 설문조사자료 총 1200부 중에서 손해보험상품 구매여부에 답변을 준 소비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한 결과,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891부임.



미국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 상품 판매 논의와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상품인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CDA를 구매할 경우 은퇴 이후 약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함으로써 은퇴자산이 고갈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종신까지 연금지급을 보장함. CDA 상품은 200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변액연금의 GLWB 옵션에 비해 비용상의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 판매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CDA 상품이 대안적인 연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CDA 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준비금 및 요구자본 규정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규제상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임. 미국에서 CDA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될지는 미지수이며 우리나라 연금시장 도입 가능성도 불확실하지만 노후소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로 해외에서는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고도 종신연금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¹⁾ 상품이 미국에서 개발됨.

-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CDA를 구매할 경우 은퇴 이후 약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함으로써 은퇴자산이 고갈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종신까지 동일 금액의 연금지급을 보장함.
- CDA는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연금의 최저종신중도인출보증(GLWB)옵션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CDA와 GLWB 옵션은 계약자의 은퇴자산이 개인의 투자계정으로 계속 유지 되는가 변액연금 가입을 통해 보험회사 계정으로 이동하는가에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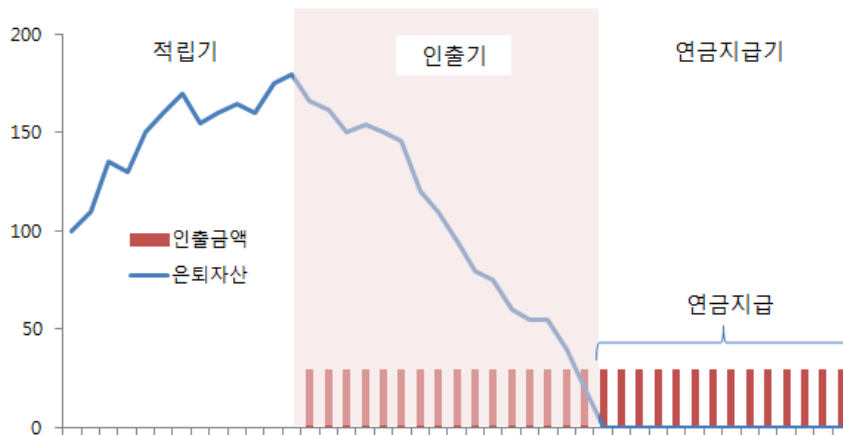
1) CDA는 SALB(Stand Alone Living Benefits)으로도 불림.

- CDA 상품은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지만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독립 투자상담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를 주요 타겟으로 개발됨.

■ CDA는 적립기(accumulation phase), 인출기(withdrawal phase), 연금지급기(settlement phase) 등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적립기에는 성과에 따라 투자자산이 적립되고 인출기 직전까지 적립된 은퇴자산과 계약자의 연령을 토대로 보험회사는 인출금액을 결정함.
- 인출기에는 계약자가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하며, 투자성과에 따라 인출금액을 상향조정해주는 step-up기능이 제공될 수 있음.
- 계약자의 사망 시까지 투자자산이 유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나 투자자산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하게 됨.

〈그림 1〉 은퇴자산 소진 시 CDA 상품 현금흐름 예시



■ CDA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펀드 등의 리스트 내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며, 인출금액은 인출시점의 연령 및 국채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산의 일정비율로 고정됨.

- 보험회사 Transamerica에서 제공하는 CDA 상품의 경우 Vanguard, Schwab, PIMCO 등 대형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200여 개 이상의 뮤추얼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 투자 비중과 수수료 부과 방식에 따라 CDA 수수료가 차등화됨.

- 인출금액은 인출시점의 연령과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며 60세의 경우 적립자산의 최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가능하며, 85세 이상인 경우 적립자산의 최고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인출할 수 있음.

■ CDA 상품은 200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유사한 상품인 변액연금의 GLWB 옵션에 비해 비용상의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 판매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CDA 상품이 처음으로 판매된 것은 2008년 Lockwood Capital Management사가 PHL 변액보험회사의 GLWB상품을 결합한 은퇴소득보장 상품을 판매한 것이며, 이후 Genworth와 Allstate도 CDA 상품을 판매함.
- 미국 연금협회(NAFA)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CDA 상품 수수료는 0.85%에서 1.25%로 GLWB 수수료 수준인 0.65%보다 높지만 변액연금의 사망보증비용과 사업비를 감안한 GLWB 비용이 2.05%인 점을 감안하면 비용 면에서 강점이 있음.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 NAIC에 따르면 2013년 말 CDA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5개사에 불과하며 보장자산 규모는 4,660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음.

■ CDA 상품이 대안적인 연금상품 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CDA 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준비금 및 요구자본 규정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규제상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임.

- NAIC은 보험 및 연금 위원회(Insurance and Annuities Committee)내에 CDA 작업반(CDA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CDA 관련 규정을 검토 중임.
- 2012년 보험 및 연금 위원회는 CDA가 연금보험인가 금융보증상품인가 하는 논란에 대해 CDA가 연금상품이며 보험회사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CDA가 기존의 연금상품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연금상품이라고 규정함.

■ 현재 CDA 상품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적합성 원칙, 공시 및 광고 규제, 보증기금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소비자단체는 보수적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는 CDA의 가치가 작을 수 있고, CDA 판매사가 자산운용 제약을 강하게 할 경우에도 CDA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CDA 상품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국 회계감사원(GAO) 또한 CDA 상품이 상당히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DA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NAIC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적합성 원칙, 공시, 광고 관련 규정이 CDA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며, 소비자 단체는 CDA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보증기금(guaranty fund)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CDA 상품은 장수리스크, 시장리스크, 소비자행동 리스크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디자인과 가격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리스크 요구자본 관련 규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임.

- CDA는 은퇴자산의 운영성과에 따라 연금지급 가능성이 변동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위험자산 비중 제한 등을 통해 시장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은퇴자산이 보험회사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CDA 상품은 계약자의 자산이 고갈될 경우 보험회사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연금수령이 보장되어 있는 계약자가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계약자 행동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음.
- 보험업계와 미국 보험계리학회(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AAA)는 CDA의 준비금과 요구자본 산출에 대해 변액연금 보증준비금의 준비금 및 요구자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임.

■ 미국에서 CDA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될지는 미지수이며 우리나라 연금시장 도입 가능성도 불확실하지만 노후소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 논의 중인 CDA 상품은 기존 연금상품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며, 이는 보험회사가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임.
- 우리나라는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관련 상품이 주로 종신평생연금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부 변액연금 GLWB옵션 상품 등을 제외하고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적립금 증가와 함께 은퇴시점까지 적립된 은퇴자산을 통한 보험회사의 연금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검토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kiri](#)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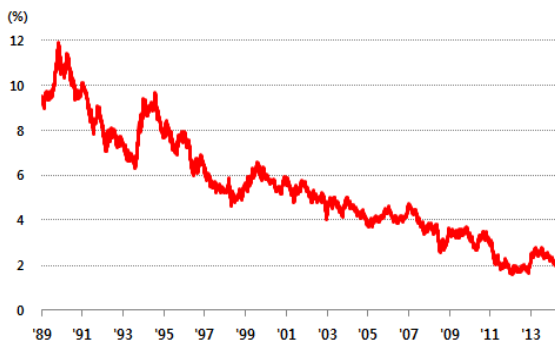
전용식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요약

■ IMF가 2014년 3월 발표한 금융시장안정평가(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Program)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캐나다의 장기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평균 2.6%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캐나다 보험회사들은 대체투자 등 고수익 투자보다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신계약 요율 상향 조정 및 보증이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였고 그 결과 보험회사의 금리 민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캐나다의 경우 보험상품 요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부채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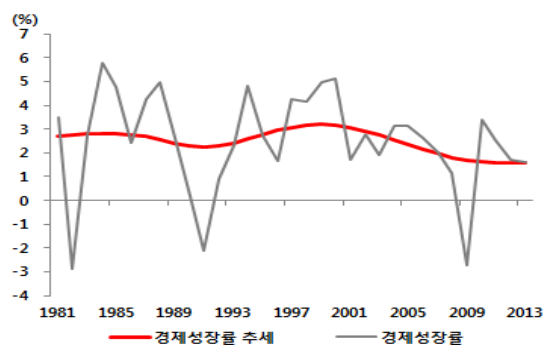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캐나다의 경제성장률과 장기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캐나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 캐나다 경제성장률 추이



주: 성장률추세는 HP필터를 이용하여 구함.
자료: IMF.

- 특히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경우, 2009년 이후 평균 2.6% 수준으로 2000~2008년 평균 4.7%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저성장·저금리로 수입보험료와 투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준비금 증가로 세후 ROE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입보험료와 순보험료가 감소하고 있고 저금리 지속으로 투자수익도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IFRS-C 도입으로 Segregated fund¹⁾ 관련 자산 및 부채가 보험회사 총자산과 총부채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생명보험산업의 준비금 규모는 4,650억 5,000만 캐나다 달러로 2010년에 비해 79% 증가하였음.
 - 그러나 A.M. Best²⁾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총자본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2년 12월 도입된 캐나다식 자산부채평가방법(CALM: Canadian Asset Liability Method)은 자산과 부채를 시장가치(mark-to-market)로 평가하고 있음.
- 세후 ROE는 2011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2년 당기순이익 증가로 9.8%로 상승함.
 - 2011년 세후 ROE가 3.5%로 감소한 것에 대해 A.M. Best는 IFRS-C 도입보다는 부채시가평가로 인한 준비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표 1〉 캐나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 추이와 생명보험산업 성과

(단위: %, 백만 캐나다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0년 만기 국채금리	3.6	3.2	3.2	2.8	1.9
수입보험료(Gross Premiums)	84,271	78,420	73,115	72,458	73,728
순보험료(Net Premiums)	76,527	67,947	61,646	56,389	48,890
투자수익(Investment income)	3,881	32,443	33,742	50,232	29,107
순지급보험금(Net Claims incurred)	49,991	46,662	44,193	38,740	36,412
준비금(Technical Provision)	226,775	246,403	259,858	465,054	489,099
ROE(세후)	4.9%	6.7%	5.1%	3.5%	9.4%

자료: IMF(2014) 재인용.

1) Segregated funds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와 성격이 유사하나 만기시나 계약자 사망 시 납입보험료(사업비 및 중도 인출금 제외)의 75% 이상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과 투자 수익 중 금액이 큰 것으로 책정함. 또한 Segregated funds의 경우 채권자 보호(Creditor Protection)가 됨.

2) A.M.Best(2012, 4, 16), "Canadian Life Insurers Converge to IFRS".

■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은 연금 등 보장기간이 장기인 상품과 미국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음.

- 연금상품이 대부분인 Segregated funds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2012년 52%인데, 최저중도인출금보증(GMWB: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s) 또는 최저사망보험금(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리 및 주식 시장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유니버설 생명보험 등 종신보험이 신계약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보장기간이 장기인 C.I.보험과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비중이 커 금리 위험도가 높음.
- 캐나다 생명보험회사들의 미국 사업 비중은 2013년 수입보험료 기준 23.1%인데 미국의 저금리 장기화로 금리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사업의 경우 변액 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 금리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음.

■ 캐나다 생명보험회사들은 투자수익 제고 보다는 요율 인상,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고 있음.

- 보험상품 및 요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신규 상품 판매, 신규 상품 보험료 인상 및 보증 옵션 제거 등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음.
 - 금리 및 주식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상품 판매를 줄였으며 위험도가 낮은 상품 판매를 확대함.
 - 2008년 이후 신규 개발된 상품들은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보증옵션을 조정한 것이 특징임.
 -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신계약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음.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캐나다 개인 보험 및 미국 개인보험, 변액 보험 사업에서 철수하였음.
- 캐나다 보험회사는 고수익 투자, 대체투자 등을 늘리기 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채권³⁾ 비중을 유지하고 Segregated Fund⁴⁾의 경우 뮤추얼 펀드 투자 비중을 높여 금리민감도와 주가변동성 민감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음.
 - 전세계적으로 대체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운용수익을 제고하려 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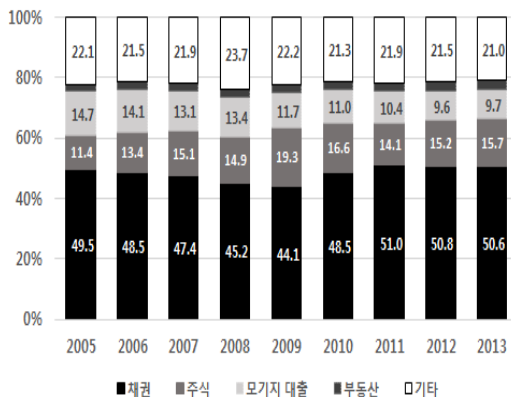
3) 2013년 말 기준 캐나다 생명·건강보험업 채권 투자 자산은 2,285억 캐나다 달러임. 이 중 국채에 투자된 금액은 1,054억 캐나다 달러(채권 투자 자산 중 46.1%)로 연방(federal)정부 채권 25.7%, 주(Provincial)정부 채권 65.2%, 시(municipal or local)정부 채권 9.1%로 구성되어 있음.

4) Segregated fund는 주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됨. 2013년 말 기준 캐나다 생명·건강보험업 뮤추얼 펀드 투자 자산은 2012년 대비 17.6% 증가한 1,646억 캐나다 달러이며 이 중 1,434억 달러(87.1%)는 캐나다 뮤추얼 펀드에, 나머지는 외국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고 있음. 캐나다 생명·건강보험업 뮤추얼 펀드 투자 자산은 캐나다 뮤추얼 펀드 투자 자산 중 16.5%를 차지하고 있음.

우 자산운용보다는 부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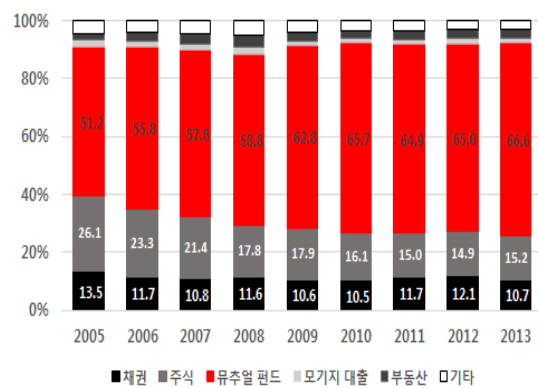
- 1999년 Segregated Fund 운용자산 중 뮤추얼 펀드 자산 비중이 주식 비중을 처음 초과하였으며 이후 뮤추얼 펀드 자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뮤추얼 펀드 투자가 적은 비용으로 분산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임.

〈그림 3〉 캐나다 생명·건강 보험 산업 자산운용 현황



주: 1) 캐나다 국외 자산 및 Segregated fund 자산 제외.
2) 기타 자산은 현금, 재보험 자산, 기타 포함.
자료: 캐나다 생명·건강보험협회.

〈그림 4〉 Segregated fund 자산운용 현황



주: 기타 자산은 현금, 기타 포함.
자료: 캐나다 생명·건강보험협회.

■ 저금리 지속으로 연금상품 또는 변액연금사업보다는 자산운용, 뮤추얼 펀드 등으로 경영전략을 수정하거나 아시아 지역으로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보험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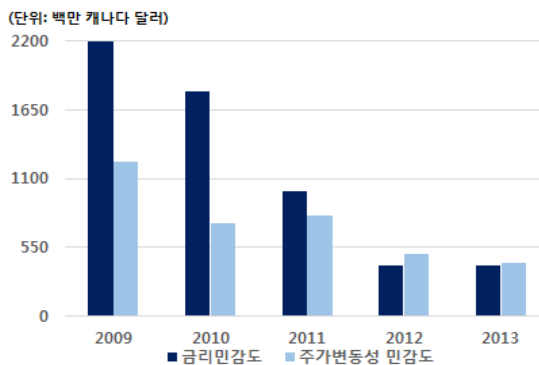
- 중기적으로 저금리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보험 금융상품(Non Insurance Product) 판매 확대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의 경쟁으로 경영성과가 훼손될 우려도 제기됨.
- 장기적으로 보험과 연금상품 수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효율적인 판매채널을 확보한 보험회사들은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의 보험산업 규제체계는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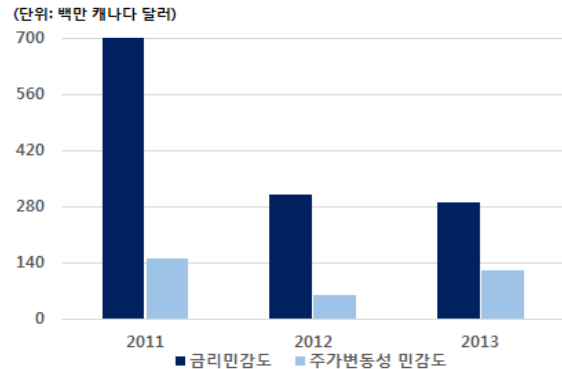
- 특히 보험상품 개발 및 효율과 관련한 규제가 거의 없어 보험회사가 시장상황 변화에 상품 개발 및 효율조정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됨.

- 연금상품의 보증옵션에 대한 선제적인 계리·자본 규제 정비가 보험회사의 저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됨.
- 캐나다 생명보험시장 점유율이 높은 Manulife와 Sunlife의 금리 및 추가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2009년 이후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Manulife의 시장민감도 추이



〈그림 6〉 Sunlife의 시장민감도 추이



주: 금리민감도는 금리 100bp 하락 시 주주이익(Net Income attributed to Shareholder)의 감소로 정의되며 추가변동성 민감도는 시가총액 10% 감소 시 주주이익(Net Income attributed to Shareholder)의 감소로 정의됨.
자료: 각 사 연차보고서.

■ 저금리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략적·정책적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보험회계제도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보험산업에 대한 저금리의 영향은 더 클 수 있음.
- 저금리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보험회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의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율 규제 완화가 필요함.
 - 정부와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의 지향점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기능 활성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함.
 - 형식적으로는 요율자유화가 이루어졌으나 그림자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됨. [kiri](#)



Aviva 보험회사의 합병 발표 및 시사점

황인창 연구위원, 정승연 인턴연구원

요약

■ 지난 11월 21일 영국 대형 보험회사인 Aviva는 연금 특화 생명보험회사 Friends Life를 인수합병(M&A)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함. 인수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영국 보험업계 최대 보험, 저축, 자산관리 업체가 탄생함. 이번 인수합병의 배경에는 영국 내 자산운용 및 연금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아비바의 목표와 영국 연금 개혁안으로 타격을 입게 된 프렌즈의 연금사업 매각이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임. 장기적으로 인수합병의 시너지 효과 창출 시 아비바의 기업 가치 및 배당금 상승이 기대됨. 마지막으로 아비바의 인수합병 발표는 국내 보험회사에게 해외사업진출 시 기업핵심역량 파악의 중요성과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라는 시사점을 제공함.

■ 영국 대형 보험회사인 Aviva(이하 '아비바')는 연금 특화 생명보험회사 Friends Life(이하 '프렌즈')를 인수합병(M&A)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2014년 11월 21일)

- 159억 파운드(약 28조 원¹⁾) 시가총액을 보유한 아비바는 56억 파운드(약 10조 원)에 프렌즈를 인수하기로 양사가 예비협정 체결
 - 인수액은 예비협정 발표 당일 프렌즈 주식 종가 기준 15%의 프리미엄²⁾을 얹은 규모로, 인수 계약 조건에 따라 프렌즈 주주는 보유주식 1주당 0.74주의 비율로 아비바 주식을 받게 됨.
- 인수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영국 보험업계 최대 보험, 저축, 자산관리 업체가 탄생
 - 합병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200억 파운드(약 35조 원), 보유자산은 약 3,000억 파운드(약 522조 원) 수준이고, 고객 수는 1,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운용 및 연금사업 부문으로 구성된 아비바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연금 시장의 점유율 확대

1) 1파운드당 1,738.91원으로 계산(2014년 12월 9일 기준).

2) 과거 3개월 프렌즈 평균 주가 기준 28%의 프리미엄.

- 아비바와 프렌즈는 개인연금시장(Individual Pensions Business)에서 각각 1위와 6위를 차지하고, 기업연금시장(Occupational Pensions Business)에서 각각 12위와 5위를 차지(<표 1> 참조)

〈표 1〉 영국 연금시장 시장점유율 상위 5개사 (2012년 영업보험료 기준)

개인연금시장			기업연금시장		
순위		회사명	순위		회사명
2012	2011		2012	2011	
1	1	Aviva plc(아비바)	1	1	Standard Life
2	4	Lloyds Banking Group	2	2	Prudential
3	3	Aegon UK PLC	3	3	Legal & General
4	2	Standard Life	4	12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5	6	Old Mutual	5	13	Friends Life(프렌즈)
상위 5개사 점유율		63.32%	상위 5개사 점유율		59.7%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 이번 인수합병의 배경에는 자산운용 및 연금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아비바의 목표와 영국 연금 개혁안³⁾으로 타격을 입게 된 프렌즈의 연금사업 매각이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

- 아비바는 2013년 1월 CEO가 교체된 이후 불필요한 해외사업을 매각하는 대신 영국·유럽 중요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그림 1> 참조).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특화된 프렌즈는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후 주가 급락으로 연금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철수 결정(<그림 2> 참조)

■ 인수합병 발표 후 프렌즈 주가 상승과 아비바 주가 하락은 인수합병 직후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그림 1과 2> 참조)으로,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시 아비바의 주주 가치 및 배당금 상승이 기대

- 인수합병 발표 다음날 아비바 주가는 5.4% 하락하고, 프렌즈 주가는 5.9%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식희석효과(dilution effect)로 합병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고 피합병기업의 주가는 상승
- 인수합병 후 아비바는 46.7억 파운드(40억 파운드(아비바) + 6.7억 파운드(프렌즈))의 잉여현금흐름⁴⁾을 보유하게 되고, 향후 높은 잉여현금흐름 창출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 및 배당금을 상승

3) 올해 초 (2014년 3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골자는 인출 가능금액 확대 등 은퇴자가 연금 기금을 수령 시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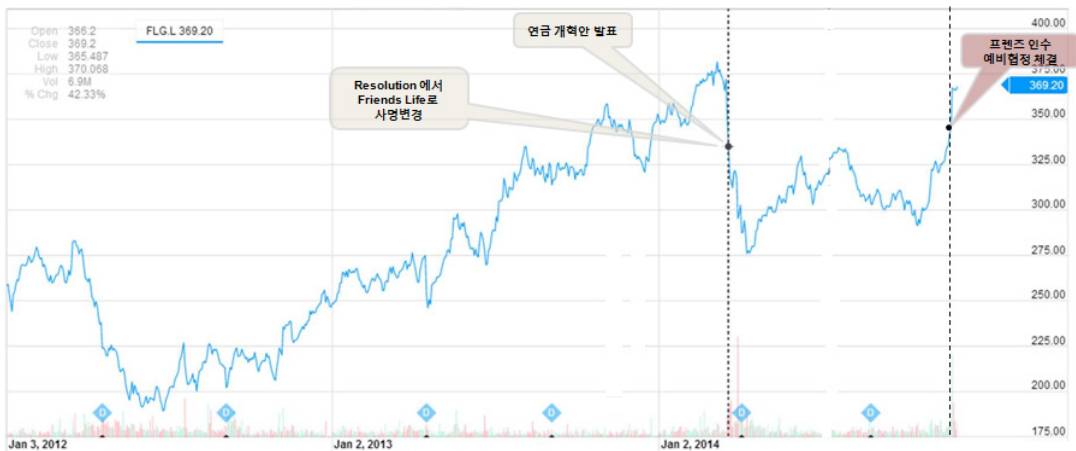
4)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이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투자활동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음.⁵⁾

〈그림 1〉 아비바 최근 주가 동향 (2012년~2014년)



〈그림 2〉 프렌즈 최근 주가 동향 (2012년~2014년)



■ 향후 주된 이슈는 인수합병에 대한 영국정부의 승인 여부와 승인 이후 연금시장에서 아비바의 경쟁전략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경쟁 저하 및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 결정

위한 재원확보,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이익 환원 여력의 지표로 활용됨.

5) 2013년 프렌즈의 배당수익률은 6.2%로 아비바 3.1%보다 3.1%p 높음.

-
- 합병이 승인된 이후 아비바가 원가 절감(예, 공통 간접비 절약)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교차판매를 통한 수익 증대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

■ 마지막으로 아비바의 인수합병 발표가 우리나라 보험회사에게 주는 시사점은 해외사업진출 시 기업핵심역량 파악의 중요성과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임.

- 저금리·저성장 극복방안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거나 이를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는 먼저 자신의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외사업으로부터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진출 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글로벌 보험사에 비해 어떠한 지속경쟁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를 갖췄는지 파악하는 것이 해외 진출 사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들도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영국 연금제도 개혁으로 인해 연금보험이 주력인 보험회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지만, 아비바와 같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kiri](#)

2. 고령화

- | | |
|---------------------------------------|---------|
| 1.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의 고려사항 | 정원석 |
| 2.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 류건식 |
| 3.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복지에 관한 소고 | 류건식 김동경 |
| 4. 고령층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판매채널의 역할 | 박정희 |
| 5. 해외 장수스왑(Longevity Swap) 거래 증가와 시사점 | 김세중 |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의 고려사항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 인간의 간병 부담을 정부가 흡수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33개 병원 2,400개 병상으로 최근 확대되었음. 민영 보험회사들의 간병보험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는 사회후생 제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확대 시범사업 소요 예산만 180억 원 이상인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고자 함.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영 보험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와 간병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포괄간호(“보호자 없는 병원”) 서비스를 33개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함.

- “보호자 없는 병원서비스”는 병원 간호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 2013년 7월 1차 시범기관으로 공공 및 민간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함.¹⁾
- 2차 시범사업은 2014년 2월 20여개의 공공병원을 추가로 선정 및 시행하여 제도 확대를 위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 간병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피해, 인구고령화 등으로 간병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입원환자가정의 36.6%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중 80% 이상이 평균 21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보호자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여 간병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음.²⁾

1) 보건복지부(2013. 4. 11) 보도참고자료.

2) 보건복지부(2013),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 향후 20년간 약 700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가 70세 이상의 노후건강관리 및 간병의 대상이 됨.³⁾
- 이들 중 10%만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기존의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간병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간병서비스의 시장기능 미비로 인한 민영보험회사의 간병보험 공급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의 간병서비스 확대는 사회후생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간병비 청구 기준 완화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은 어려워 보험회사들은 간병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혹은 판매하지 않고 있음.⁴⁾
- 간병이라는 실물을 급부로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가격산정이 쉽지 않아 민영보험회사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은 면이 있음.
- 상기의 이유로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과 기존 간호시스템 확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새로운 서비스에 필요한 일자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서비스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이 매우 중요함.

- 2차 시범사업은 33개 병원 2,442병상에서 진행되고 약 18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인데, 이는 한 병상 당 연간 약 7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의 확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이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음.

■ 첫째, 간병을 위한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함.

- 간병서비스를 세분화 하여 간호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함.
 - 집중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간병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진 간호사가 집중간병을 하도록 함.
 - 주사, 환부소독 등 단순 의료행위가 필요한 간병대상자에게는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하도록 함.

3)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는 712만 여 명임.

4) 보험일보(2013. 6. 4).

- 수술 후 운동, 치료 중 행동관찰 등 일상적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는 간병인이 간병토록 함.
- 환자에 필요한 맞춤형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용대비 간병의 질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고려 및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임.

■ 둘째, 지역별로 상이한 간병 인력 수급을 고려한 간병 재원의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간호 인력이 전체 간호사면서 보유자의 60%에 이른다는 점에서⁵⁾ 포괄간호 서비스는 유희인력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방 소재 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현재와 같거나 낮은 급여수준으로 추가적인 간호 인력 확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환자와 간호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많은 수도권은 시장에 맞기고 간호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본 제도를 위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갑작스럽게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수준의 본인부담금수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 일부 서비스공급자들의 제도 악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얼마 전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일부병원의 보험금 부당청구 케이스를 생각해야 함.

■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간병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영보험회사의 역할 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민영보험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5) 2013년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자료.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와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위해 사적연금의 연금화(annuitization)가 절실히 요구됨. 그럼에도 은퇴자의 98%가 은퇴자금을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금구매자(소비자)가 일시금보다 연금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연금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에 의해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수리스크헤지 연금상품(고령친화형 연금상품)이 개발되고 연금전환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시금 수령 시보다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을 더욱 부여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을 없도록 제도적 검토가 요구됨. 또한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는 사적연금 가입위주의 경영에서 적립된 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decumulation)하는 경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퇴직자산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대로 인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개인연금제도에 이어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

■ 그럼에도 우리나라 은퇴자의 대부분이 적립금(은퇴자금)을 연금보다는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 사적연금제도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014년 1/4분기 기준(수급자 기준)으로 55세 이상 퇴직자의 98%가 일시금(lump sum)으로 퇴직

급부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이 약 17.2%에 불과하고 10년 후 유지율이 52.4%에 그치고 있어 실제 노후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실정임.¹⁾

〈표 1〉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과 연금선택

(단위: 명, 억 원, %)

구 분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합계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2013. 4/4분기(%)	26,256 (97.0)	3,643 (99.0)	813 (3.0)	35 (1.0)	27,069 (100.0)	3,679 (100.0)
2014. 1/4분기(%)	55,226 (98.0)	10,062 (99.5)	1,106 (2.0)	54 (0.5)	56,332 (100.0)	10,116 (100.0)
증감	28,970	6,419	293	19	29,263	6,437

주: 분기 말 현재 연금 수급자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2014).

■ 따라서 사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원 분배단계에서의 연금화(annuitization)가 필요함.

- 퇴직자산은 단순한 저축자산이 아닌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은퇴자산이므로 연금화를 통한 개인의 안정적 노후대비가 요구됨.
- 그럼에도 종신연금이 기본인 공적연금²⁾을 제외한 사적연금제도는 제도상 “연금”이란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일시금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 사적연금제도의 연금화는 비단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 그 이유는 일시금 수령에 따른 연금재원 소진으로 인해 제2층인 퇴직연금과 제3층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무너질 경우 국가의 고령화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이런 우려로 인해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연금수령을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여 사적연금제도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이룸.

1) 금융감독원(2013. 8),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적격개인연금 기준).

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신인출(종신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차이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연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금화(annuitization)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에 의해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수리스크 헤지 연금상품(고령친화형 연금상품)이 개발되어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연기하여 고연령기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예: 고연령거치연금) 등을 개발함으로써 연금구매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고연령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은 보통 가입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거치종신 연금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에 걸쳐 모두 인출하도록 설계되어 연금지급개시 전 일시금을 소진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함.

■ 둘째, 연금전환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디폴트 연금전환제도의 도입, 일부는 일시금을 허용하되 나머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 일정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을 허용하는 프로그램 인출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영국은 25% 이내에서 일시금 인출을 허용하되 75%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하여 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함.

〈표 2〉 주요국의 연금지급방식 비교

구 분		일시금 허용		연금지급기간		프로그램 허용
		전부	부분	확정기간	종신	
의무전환	칠레	△	×	×	○	○
	영국	△	○	×	○	○
디폴트 연금전환	스위스	○	○	×	○	×
	미국 DB형	—	—	—	○	—
자발적 선택 일임	미국 DC형	규제없음				

자료: 이경희(2011), 류건식(2013) 등에 기초하여 재작성.

■ 셋째, 일시금 수령 시보다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을 없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종신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4%의 연금소득세³⁾를 부과하고 있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비교 시 감면세액의 차이가 없는 실정임.
 - 호주 등은 65세 이상이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호주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종신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과 더불어 긴급필요자금으로 인한 연금제도 해지 방지를 위해 중도인출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는 사적연금 가입위주의 경영(연금자원 적립단계)에서 적립된 연금자원을 분배하는 경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퇴직자산의 연금화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kiri**

3) 2012년 세법개정으로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4%의 세율을 적용하고 고령자는 수령시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55세 이후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하였음.

4) 연금수령시점까지 연금자원(pension funds)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단계가 적립단계(accumulation phase)라면, 적립된 재원을 약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급하는 단계가 분배단계(decumulation phase)이므로 연금화(annuitization)는 분배단계에 해당됨.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복지에 관한 소고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노인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노인복지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현안 과제로 부각될 것임. 일본은 연금제도 성숙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96.4%(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약 16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4.8%(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45만 원)에 불과함. 또한 일본 고령자세대의 소득 원 중 약 74%가 연금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의 고령자세대는 연금제도에 의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이와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 대부분은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등으로 생계를 위한 일용단순직,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음. 게다가 노인들이 편안하게 소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차원에서 일본 동경의 스가모(巣鴨)거리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층 노인들을 위한 한국형 스가모 거리”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결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보장, 사회환경 등 노인복지체계 개선에 정부, 지자체,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국제노인인권기구(Help Age International)가 발표한 노인 삶 지표(글로벌 에이지워치 인덱스: Global AgeWatch Index)에 의하면 91개 조사대상국 중 일본 노인 삶의 질은 10위(83.1점)인 반면, 한국 노인 삶의 질은 67위(39.9점)에 불과함.

● 소득보장, 건강상태, 고용수준, 사회환경 등을 통해 노인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4개 분야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소득보장은 63(한국 90위, 일본 27위), 건강상태는 3(한국 8위, 일본 5위), 고용수준은 9(한국 19위, 일본 10위), 사회환경은 16(한국 35위, 일본 19위) 단계의 격차를 보임.

〈표 1〉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

구 분	소득보장	건강상태	고용수준	사회환경	합계
한국	90위 (8.7점)	8위 (74.5점)	19위 (56.3점)	35위 (68.3점)	67위 (39.9점)
일본	27위 (80.7점)	5위 (76.9점)	10위 (66.2점)	19위 (77.2점)	10위 (83.1점)

자료: HelpAge(2013), Global AgeWatch Index 2013: Insight report.

■ 또한 소득보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고령자(65세 이상노인)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9%만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배우자 고령자(27.6%)가 무배우자 고령자(15.1%)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2〉 65세 이상 노인 삶의 만족도

(단위: %)

구 분	만족	보통	불만족
고령자(65세 이상)	22.9	43.5	33.6
유배우 고령자	27.6	45.5	27.0
무배우 고령자	15.1	40.3	44.6

주: 해당비율은 삶의 만족도 질문에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3), 고령자통계.

■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보장, 고용수준, 사회환경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그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이에 따른 노인 삶의 질 문제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일본의 고령화 추세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노인 삶의 질을 일본과 대비하여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살펴봄.

■ 먼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령자세대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사적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일본은 연금제도 성숙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이 고령자세대의 경우 96.4%에 이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31.4%에 불과하여 수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¹⁾

〈표 3〉 한국과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률

구 분	한국	일본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34.8%(국민연금 수급률 31.2%)	96.4%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수급자수 / 65세 이상 인구) × 100

2)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세대(2012년)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 인구(2012년) 기준임.

3) 한국은 군인연금 제외, 일본은 기초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대상임.

자료: 통계청(2013), 고령자통계.

● 일본 고령자세대의 평균소득(303.9만 엔)중 약 74%가 연금소득으로 노후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 일본 고령자 세대의 소득 구성 추이

연 도	평균소득 (1000엔)	구성비율 (%)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사회보장급부금	사적연금 등
1975년	1,147	56.0	9.7	26.2	—	—
1985년	2,393	39.6	6.8	47.2	3.9	2.5
1995년	3,169	24.8	8.0	62.7	0.9	3.7
2005년	3,019	18.0	5.2	70.2	0.8	5.7
2012년	3,039	19.5	5.8	69.1	0.8	4.8

주: 1)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 등.

2) 사적연금 등: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자료: 山崎 泰彦(2014), 日本の公的年金 現状と 課題, 한국연금학회 국제학술세미나자료집, p. 28.

●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63.6%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이중 53.1%는 근로소득임.

– 즉, 노후생활비 마련이 근로소득(53.1%), 연금 및 퇴직급여(24.9%) 순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에 비해 노후생활에서 연금소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2014년 기준)은 약 45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국민연금(기초연금 5.5만 엔 + 후생연금 10.6만 엔) 월평균수령액은 약 160만 원(161,000엔)에 이르고 있음.

〈표 5〉 한국 고령자(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원천(2013년)

(단위: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퇴직급여	예금	자녀 또는 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63.6	53.1	12.2	24.9	9.8	28.8	7.6	0.1

주: 통계청 사회조사는 전국 약 17,664 표본가구 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이중 19.6%가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2013), 2013년 사회조사.

■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보다 요구됨.

- 노후소득보장제도 미비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남성기준)은 41.6%로 일본의 28.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음.²⁾

〈표 6〉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 성	일본	32.9	31.2	30.0	29.0	29.4	29.2	29.7	29.7	29.4	28.8	28.4	28.7
	한국	41.2	42.7	39.8	41.4	41.2	41.9	42.9	41.9	41.5	40.6	40.6	41.6
	OECD	16.5	16.3	16.3	16.1	16.6	16.8	17.1	17.6	17.6	17.8	18.0	17.9
여 성	일본	13.8	13.2	13.0	13.0	12.7	12.9	13.0	13.0	13.1	16.2	13.2	13.4
	한국	22.9	23.0	21.5	22.2	22.5	22.7	23.3	22.9	22.2	21.7	21.8	23.0
	OECD	7.0	7.1	7.2	7.2	7.4	7.6	7.9	8.2	8.4	9.0	8.7	8.8

자료: OECD(2013), Labour Data.

2) 한국고용정보원(2013)의 조사에 따르면, 65~79세 노인의 직업 중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34.4%와 36.6%에 이르고 있음. 한편, 55~79세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27.5%로 가장 많음.

■ 또한, 고령자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일본 동경의 스가모(巣鴨³⁾)를 벤치마킹하여 정부, 지자체, 시민 등의 협조를 통해 “고령층 노인들을 위한 한국형 스가모 거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고령자(65세 이상)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소득 및 건강문제 다음으로 소일거리 없음 (15.0%), 외로움(14.9%), 노인복지시설 부족(11.2%) 순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외로움 등을 달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노인들의 쉼터 성격만을 지닌 탑골공원과 스가모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

〈그림 1〉 일본 동경의 스가모 거리



■ 결국, 노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보장, 사회환경 등 노인복지 체계의 개선에 정부, 지자체,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kiri](#)

3) 스가모 거리는 800m의 거리에 200여 개 상점이 들어선 노인들만의 거리로 모든 상점(식당, 약국 등)이 노인들의 눈높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소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 거리는 원래 스가모 형무소 등 혐오시설이 있었던 자리였으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본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조성되었음. 특히, 유럽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쓰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연 800만 명)로 변모함.



고령층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판매채널의 역할

박정희 선임연구원

요약

■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계약건수는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고령층의 낮은 금융이해력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향후 보험시장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고령층의 보험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경우 고령층에 차별화된 보험모집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고령층의 보험상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음.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과 감독당국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고령층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층의 보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음.¹⁾

- 2012년 65세 인구 비중은 11.8%로 589만 명이나 2020년 15.7%인 808만 명, 2030년 24.3%인 1,26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표 1> 참조).
- 최근 3년간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약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12년 생명보험 전체 계약건수는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전년대비 1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입연령이 75세로 확대된 보험상품도 출시되는 등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도 늘어나고 있음.²⁾

1)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표.

2)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로 확대됨.

〈표 1〉 인구구조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구 분	1980	1990	2000	2012	2020	2030	2040	2050	2060
인구 추계 (비중)	0~14	12,951	10,974	9,911	7,559	6,788	6,575	5,718	4,783
		34.0	25.6	21.1	15.1	13.2	12.6	11.2	9.9
	15~64	23,717	29,701	33,702	36,556	36,563	32,893	28,873	25,347
		62.2	69.3	71.7	73.1	71.1	63.1	56.5	49.7
	65세+	1,456	2,195	3,395	5,890	8,084	12,691	16,501	17,991
		3.8	5.1	7.2	11.8	15.7	24.3	32.3	37.4
	인구추계	38,124	42,870	47,008	50,005	51,435	52,159	51,092	48,1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부문별지표.

〈표 2〉 60세 이상 남녀 가입비중 및 성장률

(단위: 천 건, %)

구분	사망	재해사망	질병 및 재해입원	재해입원	암입원	암진단	기타	60세+ 소계	생보 합계
2010	2,236	1,302	1,025	1,432	1,077	1,440	2,121	10,633	198,062
2011	2,476	1,416	1,142	1,503	1,233	1,628	2,370	11,768	195,539
2012	2,824	1,555	1,305	1,572	1,395	1,905	2,659	13,214	193,209
성장률	14.1	9.8	14.3	4.6	13.1	17.0	12.2	12.3	-1.2

주: 기타는 암사망, 질병입원, 암수술, 질병 및 재해수술 계약건수임.

자료: 보험개발원(2014. 2), 『FY2013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 고령층의 보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60대 이상 계층의 63.6%가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음.³⁾
- 금융위가 전국 16개 시·도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97명(26.6%)이 ‘있다’고 응답함.
 - 불합리한 관행의 유형(중복응답)으로는 상품설명 불충분(40.6%), 약관내용 어려움(34.5%), 각종 수수료 설명 불충분(29.2%), 부담스러운 상품 설명(27.1%), 과장 광고(16.4%) 등이 있음.
 -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금융상품(중복응답)은 보험상품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카드(32.1%), 자유예금(17.1%), 적금담보대출(6.5%), 펀드(3.9%) 순으로 나타남.

3) 보험연구원 ‘2014 소비자설문조사’ 최종세미나 자료.

〈표 3〉 금융서비스나 상품의 불합리한 관행 비중

(단위: %)

구분	신용 카드	자유 예금	건강 보험	실손 보험	종신 보험	적금 담보대출	자동차 보험	연금 보험	펀드
비중	32.1	17.1	16.9	10.3	8.8	6.5	5.3	5.1	3.9

■ 향후 보험시장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고령층의 보험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우 고령층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령층⁴⁾의 보험모집 가이드라인(No.14-005)’을 마련함.
 - 최근 일본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이해나 판단력에 따라 쉬운 말로 보험상품을 반복 설명하거나 고객의향을 정확히 파악 후 확인 등을 통해 계층별 차별화된 보험모집 지침을 실시한다고 밝힘.⁵⁾
- 일본 보험회사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해 고령자 본인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고 섬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친족 등의 동석: 고령자 본인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고령자가 아닌 성년자에 한해 친족 등이 동석
 - 복수 보험모집인의 보험 모집: 2명 이상의 보험모집인이 방문 등으로 설명
 - 보험계약 체결 후 상품 내용: 보험모집 채널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 후 해당 고령자에게 보험모집인 이외의 담당자가 전화 등으로 본인 의향에 맞는 상품 내용임을 재확인

■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과 감독당국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험모집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비율을 줄이는 데 한계점이 있음.
-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모집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모집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고령자의 특성에 맞게 일본과 같은 친족 등의 동석이나 보험 모집 시 다수의 대면 기회 등을 모집지침으로 대면 기회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 가입 이후에도 소비자의 플랜과 다른 부분은 즉각적인 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kiri](#)

4) 일본의 고령자 정의는 보험소비자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70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70세 미만의 고객이라도 필요시 본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적용함.

5)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2013년 5월 생명보험회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고령자 응대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련 상세 자료는 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여름호에 게재된 장동식, 「생명보험회사의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을 참조.



해외 장수스왑(Longevity Swap) 거래 증가와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2014년 7월 영국 통신회사 BT Group은 자사 퇴직연금(Pension scheme)의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해 미국 푸르덴셜보험(PICA,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과 사상최대 규모의 장수스왑(Longevity Swap)계약을 체결함. 장수 파생상품 중 하나인 장수스왑은 2008년부터 거래되어 왔으며 2012년 이후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과 재보험회사간의 장수스왑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장수스왑의 주요 거래상대방인 재보험사가 장수리스크 보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임. 생명보험회사가 장수스왑을 통해 종신연금부채의 장수리스크를 전가한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2012년 AEGON이 장수스왑을 거래한 바 있음. 장수스왑 거래 증가는 장수리스크 거래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장수리스크 관리 수단 다양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서의 활발한 장수리스크 거래는 감독당국과 생명보험회사 모두에게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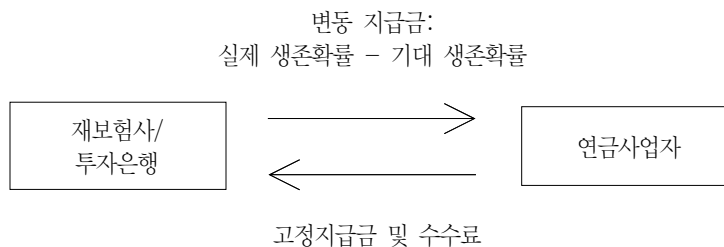
■ 2014년 7월 영국의 통신회사 BT Group은 자사 퇴직연금(Pension scheme)의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해 미국 푸르덴셜보험(PICA,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과 사상최대 규모의 장수스왑(Longevity Swap)계약을 체결함.

● BT Group과 푸르덴셜보험 간의 장수스왑은 160억 파운드 규모로 현재까지 거래된 장수스왑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이번 장수스왑 거래로 BT Group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중 1/4이 푸르덴셜보험에 전가됨.

■ 장수스왑은 장수 파생상품 중 하나로 2008년부터 거래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종신연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연금사업자가 장수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 재보험사 또는 투자은행과 체결함.

- 장수스왑은 장수리스크를 제3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연금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고정쿠폰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급부로 특정 인구집단의 생존확률 또는 생존지수에 연동되는 변동쿠폰을 지급받는 거래임.
- 장수스왑은 크게 연금계약자 집단의 생존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보증형(cashflow indemnity)스왑과 생존지수(longevity index)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형(index based)스왑으로 구분됨.
- 2008년 1월 영국 바이아웃회사¹⁾ Lucida와 투자은행 JP Morgan이 최초의 장수스왑 거래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 장수스왑 계약 예시



■ 장수스왑 거래 규모는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최초의 장수스왑 거래 이후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연간 거래규모가 60억 파운드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2년 독일 보험회사 AEGON이 Deutsche Bank와 당시까지 사상최대 규모인 103억 파운드(100억 유로)의 장수스왑 계약을 체결함.
- 2013년에는 영국 건설회사 Carillion, 제약회사 AstraZeneca, 군수회사 BAE 등이 10억 파운드가 넘는 장수스왑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전체 장수스왑 거래규모는 90억 파운드 수준에 이름.
- 2014년 초에도 영국 보험회사 Aviva는 Swiss Re, Munich Re, SCOR 등 3개 재보험사와 50억 파운드의 대규모 장수스왑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1)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고 종신연금계약과 관련한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하는 보험회사.

〈표 1〉 2013년 이후 대규모 장수스왑 거래 사례

거래시기	리스크 전가 주체	리스크 전가 대상	금액
2013. 2	BAE systems	Legal and General	£ 3.2bn
2013. 3	Bentley Motors	Abbey Life / Deutsche Bank	£ 400m
2013. 12	Carillion	Deutsche Bank	£ 1.0bn
2013. 12	AstraZeneca	Deutsche Bank	£ 2.5bn
2013. 12	BAE systems	Legal and General	£ 1.7bn
2014. 3	Aviva	Swiss Re, Munich Re, SCOR	£ 5.0bn
2014. 7	BT Group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 16.0bn

자료: 각 신문기사 참조.

■ 장수스왑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장수스왑의 주요 거래 상대방인 재보험사가 장수리스크 보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장수스왑을 통해 자사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를 전가한 BAE, Rolls-Royce, ITV 등의 경우 투자자들이 장수스왑 계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상승함.
- 연금 컨설팅 회사 Hymans Robertson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17년까지 FTSE100 상장기업 중 절반이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해 장수스왑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함.
- 장수스왑의 주요 거래상대방인 재보험회사의 경우 장수스왑 거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장수스왑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음.
- 한편 Tower Watson²⁾은 최근 2년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사망률 개선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장수리스크 전가 비용이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장수리스크 전가가 용이해졌다고 지적함.

■ 생명보험회사가 장수스왑을 통해 종신연금부채의 장수리스크를 전가한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12년 AEGON의 경우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한 종신연금부채의 장수리스크를 장수스왑을 통해 전가한 사례는 2008년 Canada Life의 영국지사와 2009년 Aviva의 자회사 Norwich Union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두 건 모두 거래규모는 약 5억 파운드에 크지 않은 수준임.
 - Norwich Union의 경우 장수스왑 계약이 요구자본 경감이나 내재가치(EV) 제고보다는 장수스왑 시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음.³⁾

2) Tower Watson(2014), "De-risking report 2014".

3) <http://www.risk.net/insurance-risk/news/1514855/longevity-transfer-nu-completes-gbp475m-longevity-swap>.

- 그러나 2012년 독일 보험회사 AEGON은 Deutsche Bank와 장수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한 장수리스크를 제3자에게 전가한 사례임.
 - AEGON 관계자는 장수스왑 계약이 요구자본을 경감하고 회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 장수스왑 거래 증가는 장수리스크 거래 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수리스크 거래방법 다양화에 기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수단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장수스왑 거래 규모의 증가는 장수리스크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향상과 가격 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장수채권 등 장수리스크 거래방법 다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장수리스크 거래방법의 다양화는 종신연금부채에 내재된 장수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수단 확대를 의미함.
-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서의 활발한 장수리스크 거래는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회사 모두에게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KiRI](#)

3.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1.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이상우 |
| 2.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소고 | 정원석 |
| 3. 펀드슈퍼마켓 도입과 금융상품 판매채널 진화 전망 | 박선영 황진태 |
| 4.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필요 | 기승도 김혜란 |
| 5. 제3보험 손해사정사 제도 再考 | 정봉은 |
| 6.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 김경환 |
| 7.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정원석 |
| 8.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란 | 정원석 |
| 9.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 이승준 |
| 10. 보험회사 행정지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 이승준 |
| 11. 일본의 정성적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시사점 | 이경아 |
| 12.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필요 | 최창희 |
| 13. 손해사정의 외부위탁강제 법안에 대한 검토 | 송윤아 이정은 |
| 14.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 최창희 |
| 15.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시사점 | 이승준 |
| 16. 공유형 모기지 국내외 현황과 전망 | 박선영 |
| 17.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정책 방향과 시사점 | 이상우 김동경 |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미흡한 퇴직연금 가입(약 14%)으로 인하여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 가입 관련규정에 대한 처벌조항을 조기에 신설하고, 퇴직연금 전환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최소 적립비율의 차등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상임금으로 추가된 세수를 기업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연금보험료 합산세제를 분리하고, 개정 근퇴법 시행(2013. 7) 이후 표준형 규약제도와 공동가입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개발 및 제시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검토배경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2014. 1. 6)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선 먼저 중소기업의 미진한 퇴직연금 가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기대됨.
- 신생기업의 2년 이내 생존율이 48.4%¹⁾에 불과한 경영환경 속에서 최근에는 국제외환시장 변화로 인하여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1) 통계청(2014. 1), 『기업생명 행정통계』.

■ 2013년 12월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하여 올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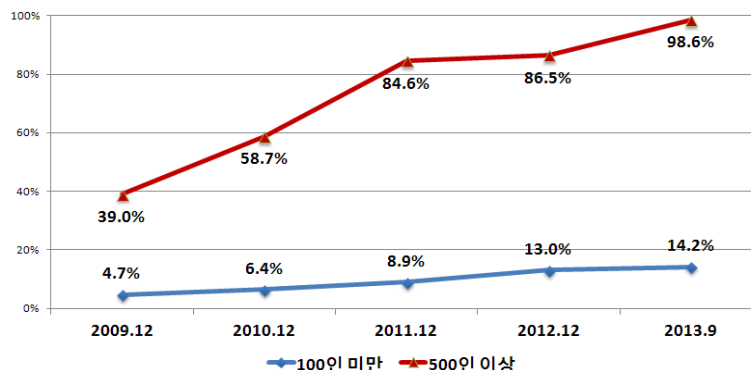
- 이러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압박은 중소기업의 미진한 퇴직연금 가입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 경제변화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기존에 사내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에 대한 체불위험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실태

■ 우리나라는 퇴직금 체불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정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퇴직연금 가입 규모는 시행 8년여 만(2013년 9월 말 기준)에 적립금과 근로자 가입률이 각각 72.3조 원과 45.6%로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전환 미흡으로 사업장 기준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4.7%에 불과함.
 - 이는 대기업 대부분이 퇴직연금에 가입(약 98% 이상)한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14.2%에 불과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입이 극히 미진하기 때문임.
 -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추세인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가입현황(각 연도).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경에도 3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비활성화 주요 요인

-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의 특징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여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퇴직급여제도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존속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모든 사업장(2011. 12월 이전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강제 퇴직급여제도이지만 OECD 일부 국가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지는 않음.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근퇴법(2012. 7. 26) 시행 이후 신설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에 우선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부족한 실적임.

- 즉, 관련 법규는 신설하였으나 신설 사업장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함.

- 현재 사업장이 종전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장기근속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부담이 수반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장의 자금압박이 심화될 수 있음.

- 현재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상 적립²⁾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직금 적립금을 장부상으로 적립하거나 적립수준이 낮을 가능성³⁾이 높아 과거 퇴직급여 채무가 많은 기업일수록 퇴직금 정산에 따른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 있음.
- 또한, 과거 퇴직급여 채무를 포함하여 확정급여형(DB)제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가입후 1년 이내 책임준비금의 70%⁴⁾ 이상의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요구됨.

2) 법인세법 제33조 1항.

3) 법인세법시행령60 2항에 따라 2014년부터 사내 퇴직급여충당금의 10%를 손비처리 할 수 있음.

4) 개정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비율이 2017년까지 80%로 상향조정될 예정임.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및 운영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 가입제도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개발 및 설계, 제안이 미흡한 것에도 원인이 있음.

● 개정 근로법(2012. 7)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게 단독의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둘 이상 사업장의 확정기여형제도⁵⁾를 신설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동가입제도는 선진국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에도 원인이 있음.

●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호 수준(5천만 한도)과 범위(DC형)가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도산 또는 경영 악화시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급보장장치가 부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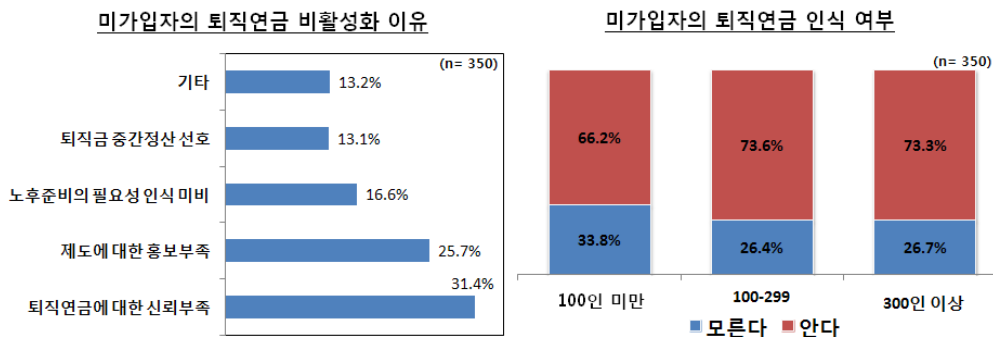
● 또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에 있어서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DC형)의 기여금에 대한 합산소득공제(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개인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어려움.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보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점이 많은 퇴직급여제도이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퇴직연금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함.

● 퇴직연금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제도 홍보 부족(25.7%)이 두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아직도 퇴직연금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식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그림 2〉 퇴직연금 비활성화 및 인지도부 실태조사 결과



주: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3).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

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사례

■ OECD 국가의 대부분은 단일화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강제화하고 있음.

- OECD 국가 중 일부(한국, 일본, 이태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제도만을 실시하고 있음.
- 많은 연금 선진국에서는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의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음.
 - 대표적인 국가로는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헝가리 등임.

■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또는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은 저소득 근로자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와 저소득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NEST제도⁶⁾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기여금의 약 12.5%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함.
- 일본은 중소·영세기업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퇴직급여공제제도를 195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 가입할 경우 기업에게 부담금의 2분의 1을 가입 후 1년간 지원하고 있음.
- 강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2012년부터 저소득자에게 기여금의 1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기여금의 최저세율(15%) 적용, 60세 이후 연금수령시 비과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및 일본 등은 퇴직연금 관리비용의 절감을 통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가입 또는 공공 자산관리 형태의 복수사용자제도(Multiemployer Plan)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1974년부터 복수사용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11.5%(DB형 25.5%, DC형 5.0%)⁷⁾가 활용하고 있음.

6)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국민고용저축신탁).

- 호주는 1984년 기여금을 공동 관리하는 산업펀드(Industry Fund)를 1984년에 도입한 이후 다양한 종류의 연기금 펀드가 가입되어 퇴직연금기금 운영을 선택할 수 있음.
- 일본은 1980년대부터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의 연합형⁸⁾, 종합형⁹⁾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활용(DC형 가입기업의 약 60% 이상 가입)하고 있음.
 - 한편, 가입 절차와 관리가 간단한 퇴직연금의 표준적인 규약이 적극적으로 개발 및 제공되어 1980~1990년대 중소기업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음.

마. 정책 및 금융회사의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보편적인 퇴직연금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99%)¹⁰⁾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보급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전체 가입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 그러나 향후 대내외 경제환경 및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압박을 감안할 경우 향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및 중소기업의 인식제고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퇴직연금제도 가입규정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조기에 신설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둘째, 과거 퇴직급여채무를 포함한 퇴직연금 전환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최소적립비율을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차등화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분담하여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가입 근로자의 추가 부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합산 소득공제제도를 각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세제혜택을 제공

7) U.S. Department of Labor(2013, 6),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Historical Tables and Graphs".

8) 자본관계가 있는 관계회사와 공동가입 및 관리방식.

9) 자본관계가 없는 동종 및 이종 기업간 공동가입 및 관리방식.

10) 중소기업청(2013), 『중소기업현황』.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약 14%~27%)¹¹⁾와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예상되므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차원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기업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기여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다섯째, 금융회사는 표준적인 퇴직연금제도인 표준형규약, 사업조합·협회, 국가·지역산업단지,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공동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개발과 컨설팅, 규약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금 체불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하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강제 가입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당국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음. [kiri](#)

11) 한국노동연구원(200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급했을 때 비용까지 계산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 5천 5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3. 12. 18).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소고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공제 그리고 출산 및 입양공제 등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들의 세액공제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보임.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될 시,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 일인당 평균 세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¹⁾

- 세액공제 전환 확대²⁾ 고려 대상은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어린이 그리고 출산 및 입양 등 추가인적공제³⁾ 항목임.
-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임.⁴⁾
 - 작년에 결정된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율을 고려했을 때 세수확대 역시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임.⁵⁾

■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제도 전환으로 인한 사회전체 후생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납세자의 인적구성은 공제 제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아님.
- 따라서, 제도 전환으로 인해 소득수준별로 개별경제주체의 세 부담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나, 자원배분의 왜곡 및 후생의 손실(사중손실)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1) 연합뉴스(2014. 2. 11).

2) 2013년에는 특별공제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

3) 본고에서는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을 추가인적공제로 통칭함.

4) 소득공제는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후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공제액금액에 일정한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납입할 세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임.

5) 강성호·정원석(2013),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주간이슈 250호.

■ 그러나 세액공제로 제도가 전환 되더라도 납세자 전체의 세 부담이 변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지난해 제도 전환이 이루어진 특별공제 항목 중 개인연금 보험료의 경우 전체 세입이 같아지는 세액공제율 수준은 유효세율과 같은 13.4% 인 것으로 분석됨.⁶⁾
 -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해 적용할 12%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경제주체의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줄어들었음.

■ 국세통계연보(2012)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자의 유효세율⁷⁾은 평균 13.4% 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 납세자 기준 유효세율은 4.8%~29.0%까지 소득수준별로 증가함.
 - 이는 흔히 알고 있는 한계세율⁸⁾ 6%~38%보다는 유효세율이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 차이가 덜 함.
- 납세자는 여러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아 적용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한계세율보다 유효세율을 통해 제도 전환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음.⁹⁾

〈표 1〉 소득유형별 유효세율

(단위, 만 원, %, 천 명)

구분 (과세표준)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전체		
	평균소득	유효세율	대상자수	평균소득	유효세율	대상자수	평균소득	유효세율	대상자수
3천 이하	750.8	6.8	2,498	423.6	2.9	4,865	537.1	4.8	7,362
3천~6천	4,248.2	11.6	301	1,546.5	6.3	3,379	1,767.6	7.3	3,680
6천~1억	7,641.6	15.6	135	3,772.8	11.3	1,314	4,134.0	12.0	1,449
1억~3억	15,962.1	22.4	112	8,854.5	18.7	344	1,060.50	20.1	457
3억 이상	79,698.2	28.6	29	52,699.5	30.1	16	70,016.0	29.0	46
평균	2,653.2	18.0	3,076	1,629.0	11.0	9,918	1876.7	13.4	12,994

자료: 강성호·정원석(2013),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전체 집단의 유효세율 추정치가¹⁰⁾13.4%임을 고려했을 때 세액공제로 전환을 고려중인 추가인적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강성호·정원석(2013),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주간이슈 250호.

7) 유효세율은 각종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총 세액을 총 소득으로 나눈 값임.

8) 한계세율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함. 예를 들어 과세표준소득이 4,600만 원인 경우 0~1,2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 원~4,6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각 구간별 세율(6%와 15%)을 한계세율이라 함.

9) 개개인의 소득과 공제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 전환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 능하지 않음.

10) 데이터의 한계로 국세통계연보에 주어진 자료로만을 이용하여 유효세율을 추정하였음.

- 전체납세자를 고려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보험료 소득공제 등과 같은 12%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면 국민의 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납세 집단별로는 종합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음.
- 종합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소득이 6천 만 원 이하인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6천 만 원 이상인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소득 1억 원을 기준으로 세 부담의 증가 혹은 감소가 결정 될 것으로 보임.

〈표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미치는 절세혜택 비교

(단위: 만 원)

구 분 (과세표준)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전체 ³⁾		
	소득공제 시 혜택(A)	세액공제 시 혜택(B)	혜택의 차이(B-A)	소득공제 시 혜택(A)	세액공제 시 혜택(B)	혜택의 차이(B-A)	소득공제 시 혜택(A)	세액공제 시 혜택(B)	혜택의 차이(B-A)
3천 이하	8.2	14.5	6.3	2.6	10.6	8.0	5.1	12.8	7.7
3천 ~ 6천	18	18.6	0.6	11.4	21.8	10.3	13.1	21.5	8.4
6천 ~ 1억	24.7	19.0	-5.7	24.1	25.6	1.5	25.1	25.1	0
1억 ~ 3억	35.4	19.0	-16.5	41.4	26.6	-14.8	41.6	25.0	-16.6
3억 이상	44.4	18.6	-25.8	58.1	23.2	-34.9	48.9	20.3	-28.7
평균	22.8	15.2	-7.6	18.1	19.8	1.6	27.5	18.3	-2.1

주: 1) 세액공제율은 12%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음.

2) 1인당 절세혜택 금액임.

3)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대상자수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자료: 2012년도 국세통계연보와 〈표 1〉의 유효세율을 이용해 저자가 직접 산출함.

■ 제도 전환으로 인해 유효세율이 상승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은 60% 수준 인데 반해 근로소득자의 소득과약률은 약 80%¹¹⁾ 정도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 경우 소득과약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음.
- 증세 없는 복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됨.
 - 세액공제율이 낮을 경우 명목상 세율은 오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공제제도의 변화로 유효세율은 오르는 실질적 증세가 됨.
 -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워 향후 다른 정책제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11) 한국은행·국세청 2013년 발표자료.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 인적공제 항목의 제도 전환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나 사회후생의 감소는 작을 것으로 예상됨.
- 만약 지난해 보험료 및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전환 될 때 적용되었던 12%의 세액공제율이 다시 적용된다면 전반적인 세 부담은 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국민전체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과세표준 기준으로 종합소득자는 약 6천만 원, 근로소득자는 약 1억 원이 세 부담 증감의 분기점(Break even point)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실질적 증세가 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향후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실질적 증세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과 같은 15%의 세액공제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복지 증대를 위해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한 실질적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 제도 전환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이 적은 인적공제의 손질은 경제학적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보임.
 - 하지만, 실질적 증세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임. **kiri**



펀드슈퍼마켓 도입과 금융상품 판매채널 진화 전망

박선영 연구위원, 황진태 연구위원

요약

■ 국내에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출범을 앞두고 이의 성공 여부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펀드슈퍼마켓의 경우 고객들이 직접 다양한 펀드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쇼핑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단, 초기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길고 수수료 분배, 금융상품 공급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성공적인 판매채널로 정착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보험업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험 에그리게이터(aggregators)가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신 채널로서 부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나아가서 펀드슈퍼마켓, 보험 에그리게이터 등의 신 채널이 통합 자문서비스를 결합해 펀드, 보험, 주식 등 개인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랩 플랫폼(Online Wrap Platform) 형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이같은 신 채널 도입을 고려할 경우 보험 상품의 특징과 구조를 반영한 선별적 도입이 요구됨. 해외 사례처럼 상품설계가 쉽고 단순비교가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에그리게이터식 채널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반면에 복잡한 재무설계가 요구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에그리게이터식 채널을 고객과의 접점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 전통적인 대면채널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2014년 3월 국내에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출범을 앞두고 이의 성공 여부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펀드슈퍼마켓이란 투자자들이 다양한 운용사의 펀드를 저렴한 수수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 수수료 및 수익률, 판매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을 말함.

■ 해외사례를 보면 펀드슈퍼마켓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둘째 자문서비스와 고객들의 투자포트폴리오 관리가 한 플랫폼에서 가능하도록 독립재무설계사들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지원, 셋째 공신력 있는 데이터 기반의 투자정보와 펀드 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넷째 표준화된 판매 프로세스 확충 등이 있음.

- 펀드슈퍼마켓이 이미 시행중인 외국의 경우 투자조언이 가미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독립재무설계사(IFA)의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음.
 - 영국의 Cofunds 사례를 보면 독립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고 고객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펀드슈퍼마켓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미국 최대의 펀드슈퍼마켓인 Charles Schwab Institutional의 성공요인으로도 독립재무설계사를 통한 투자자문시장의 선점효과가 꼽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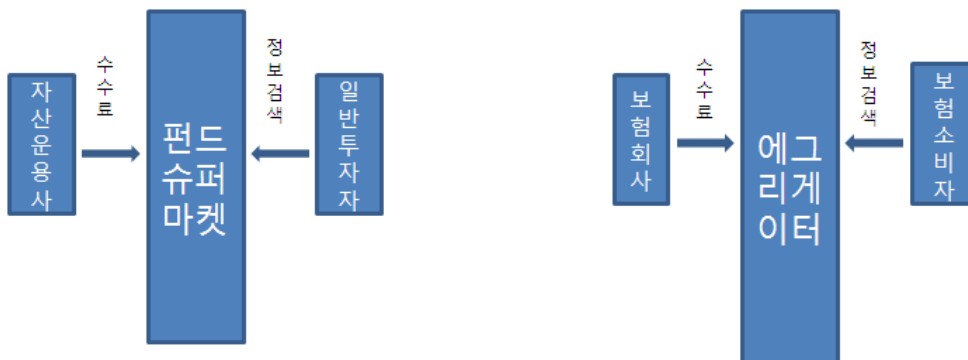
■ 반면에 펀드슈퍼마켓이 경쟁력 있는 채널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극복해야 함.

- 첫째, 광고비를 비롯한 막대한 초기비용의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둘째, 온라인 정보제공의 한계로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고객의 온라인 접속이 실제 상품 가입으로 이어지는 상품 가입률(conversion rate)이 낮을 경우 상품 공급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음.

■ 보험업권의 경우 현재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의 비교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예를 들어 에그리게이터(aggregate)가 신 채널로 등장하고 있는데 펀드슈퍼마켓과 유사한 형태임.

- 펀드슈퍼마켓과 에그리게이터 모두 한 플랫폼에서 상품비교가 가능하며 상품 공급자들은 플랫폼에 상품을 제공하고 플랫폼은 상품 공급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삼는다는 점이 유사함.
 -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운용사나 독립재무설계사들이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1〉 펀드슈퍼마켓과 에그리게이터 사업모형 비교



자료: 1) 이현구, 「국내 펀드슈퍼마켓 도입」, 제로인(<http://www.FundDoctor.co.kr>) 재구성함.
 2) Ozer Oker(2014), "UK Insurance aggregators", Datamonitor Financial 발표자료 pp. 5 재구성함.

■ 주요국의 펀드슈퍼마켓과 보험 에그리게이터의 대표 브랜드와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일찍부터 다양한 판매채널이 발달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펀드슈퍼마켓과 보험 에그리게이터 등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다양한 신 채널이 발달해 왔음.
 - 대표적인 펀드슈퍼마켓으로는 영국의 Cofunds, 싱가포르의 iFAST, 미국의 Charles Schwab 등이 있음.
 -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보험 에그리게이터가 발달해 왔는데 공급자인 보험회사들과의 협력관계가 에그리게이터 시장 발달의 관건이었음.
 - 호주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에그리게이터와의 제휴방식보다 고유의 온라인 전용상품과 자체 웹사이트 사업에 주력해 에그리게이터 성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표 1〉 주요국의 펀드슈퍼마켓과 보험 에그리게이터 대표 브랜드와 주요 특징

국가명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보험 에그리게이터
영국	• Cofunds • 일반 투자자보다는 독립재무설계사가 주요 고객 • 일반투자자와 독립재무설계사를 중개하는 역할 담당 • 70여 개 자산운용사로부터 1,500개 이상의 펀드를 제공받아 판매	• confused.com • moneysupermarket.com gocompare.com comparethemarket.com • e-broker, 온라인 전용 보험사와 소비자들을 중개
미국	• Charles Schwab • 미국 최대의 펀드슈퍼마켓 • 개인고객 대상 “One Source”와 독립재무설계사대상 “One Source-Institutional”의 시스템 운용	• insure.com • 생명, 건강, 자동차, 그리고 주택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다루며 보험상품 비교 견적 서비스 제공
호주	-	• Infochoice, iSelect, RateCity, Captain Compare, Just-Ezi • 호주시장의 경우 온라인 보험사인 Suncorp와 Insurance Australia Group(IAG)이 에그리게이터와의 제휴방식보다는 고유의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에그리게이터 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싱가포르	• iFAST • 싱가포르 최초의 펀드슈퍼마켓으로 일반 투자자, 재무설계사, 중소형 금융기관 판매원들이 주요 고객 • 재무설계사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분배받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운용수익 중 일부를 분배 받음.	-

자료: AXCO 재정리함.

■ 에그리게이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 중심의 단체구입모델(Group-Purchasing Model)을 지향하는 사이트도 등장했음.

- 영국의 “Bought By Many”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는 기존 에그리게이터가 취급하지 않는 틈새시장 보험 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커뮤니티를 결성해 집단 구매력을 높여 보험공급자들과 직접 협상하는 전략을 구사함.
 - 운용 프로세스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관심제기 → 관련 문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요예측 → 보험회사와 협상 등의 단계를 거침.
 - 보험료의 직접 비교에 중점을 두는 에그리게이터에 비해 보험료 수준 뿐 아니라 보험상품의 종류와 질도 중요시함.

〈사례 1〉 Bought By Many

- 보험 소비자들이 결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허브
- 2012년 9월에 시작하여 현재 회원 수 1만 1,573명, 153개 그룹이 활동 중이며, 참여 보험회사는 14개사
- 자동차, 여행, 건강, 전문가, 애완동물, 주택, 스포츠 레저 관련 보험 취급
- 유사한 종류의 보험가입 필요를 느낀 소비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공급자와 직접 단체할인이나 계약조건을 협상함
- 집단구매력을 통한 협상권 확보를 위해 협상 건당 100명의 회원 수 목표, 협상을 통한 보험료 할인비율은 18.6%로 알려짐.

자료: Datamonitor Financial.

■ 펀드슈퍼마켓, 보험 에그리게이터 등의 신 채널이 자문서비스와 융합되어 펀드, 보험, 주식 등 개인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랩 플랫폼(Online Wrap Platform)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온라인 랩 플랫폼(Online Wrap Platform)은 전문가들이 직접 관리하는 일임자산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유지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수익원으로 함.
 - 국내에서는 증권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랩 어카운트 서비스가 있고, 해외에서는 Transact, Ascentric and AJ Bell 등이 있음.

■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과 유사한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계속 진화 및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 에그리게이터의 국내 도입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함.

-
- 펀드슈퍼마켓을 보험 산업에 도입할 경우 보험상품의 특징과 구조에 적합하도록 선별적 도입 과정이 요구됨.
 - 보험 상품의 경우 펀드 상품과 달리 상품의 종류와 설계가 복잡해 표준화된 상품을 도입하기 어렵고 비교검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전 종목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해외 사례처럼 상품설계가 쉽고 단순비교가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에그리게이터식 채널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 반면에 복잡한 재무설계가 요구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에그리게이터식 채널을 고객과의 접점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 전통적인 대면채널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kiri](#)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필요

기승도 수석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대인배상 II에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인배상 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임. 그러나 대인배상 I 보상한도가 사망기준으로 1억 원으로 인상된 2004년 이후에 근 10년 동안 보상한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인배상 I 단독가입자의 배상자력문제(피해자 보호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국토부는 2013년 12월에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본 자료에서는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대인배상 II 사고발생을 증가 현상을 통해 규명해 보았으며, 그 결과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대인배상 I 보상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대인배상 I 보상한도가 확대되면 대인배상 II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동 법률의 개선여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대인배상 II의 가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지만, 운전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제도이고, 대인배상 I 가입자와 대인배상 II 가입자간의 법률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등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 따라서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이후, 동 법률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¹⁾(이하 자배법이라 함)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함)에서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배상 II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1) 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함.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자배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 등) 제1항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1억 원, 부상은 2천만 원(1급 기준), 후유장애는 1억 원(1급 기준) 한도로 정해져 있음.
 - 부상 및 후유장애의 급별 보상한도는 1급에서 14급까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음.²⁾
- 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대인배상 II의 보상한도 무한에 가입한 경우에는 뺑소니·음주측정거부외의 11대 중대교통법규위반을 제외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음(교통법 제4조).

■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필요성과 보상한도 확대 정책을 2014년 중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 201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청회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인배상 I 보상한도를 기존에 비하여 50% 이상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함.
- 이에 본 자료에서는 현 상황에서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교통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함.

■ 현 대인배상 I 보상한도(사망/부상/후유장애 각각 1억 원/ 2천만 원/ 1억 원)는 2004년 개정된 이후 거의 10년 동안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그 동안 소득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피해자 보호의 충분성은 2004년 개정 당시보다 악화되어온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이후 근 10년 동안 보상한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보상한도수준으로는 2004년 개정 당시의 피해자 보호의 충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대인배상 원가에 영향을 주는 임금 등 소득·소비자물가지수 인상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현 보상한도의 피해자 보호 충분성은 과거 10년 동안 점점 악화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상한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 대인배상 II의 사고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대인배상 I 단독가입자가 일으킨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즉, 피해자 보호 측면에

2)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는 1963년 6월 자배법 제정 이후 2004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확대·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

〈표 1〉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소요기간

구 분	개정 연월	소요기간
1차	1963. 6	-
2차	1971. 7	8년 1개월
3차	1975. 6	3년 11개월
4차	1980. 8	5년 2개월
5차	1993. 8	13년
6차	1995. 8	2년
7차	1996. 8	1년
8차	2000. 8	4년
9차	2004. 1	3년 5개월

- 교통법에 따라 대인배상Ⅱ의 가입을 유도한 효과로 대인배상Ⅰ 단독 가입률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자동차대수 증가에 따른 효과로 단독가입자 대수는 연평균 1.5%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인배상Ⅰ 단독가입대수의 증가와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함께 발생할 경우에 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의 배상자력 확보 문제는 피해자의 충분한 경제적 손실 보상 측면에서 사회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큼.

〈표 2〉 대인배상 I 단독가입률

(단위: %, 대수)

구 분		'09. 3	'10. 3	'11. 3	'12. 3	'13. 3	연평균 증가율
단독가입률	영업용	1.3	1.3	1.4	1.3	1.1	-4.1
	자가용	4.6	4.3	4.0	3.7	3.5	-6.6
단독가입 대수		1,215,401	1,178,982	1,144,019	1,129,233	1,289,873	1.5

주: 단독가입 대수는 해당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1년간의 평균유효대수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단독가입자의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발생률 추이를 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사고발생률을 통해 유추해보면, 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대인배상Ⅰ 사고발생률의 연평균 증가율이 0.5%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인배상Ⅱ의 사고발생

률은 연평균 증가율이 9.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인배상 I 의 보상한도 내 사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초과하는 사고가 매년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현 대인배상 I 보상한도 수준이 과거 10년 동안의 소득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대인배상 I 단독가입자의 보상한도 초과 사고발생률이 현재 대인배상 II 의 사고발생률과 유사할 것으로 유추해볼 때, 현재처럼 대인배상 II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대인배상 I 단독가입자의 보상한도 초과 사고에서 단독가입자의 배상자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3〉 대인배상 사고발생률 추이

(단위: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연평균 증가율
사고 발생률	대인 I	5.88	6.18	6.20	6.01	6.00	0.5
	대인 II	1.20	1.36	1.57	1.61	1.75	9.9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따라서 대인배상 I 단독가입자로 인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이후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및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한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전자의 모럴해저드³⁾ 방지 및 법률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교통법 개선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로 대인배상 II 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도 현 교통법의 혜택을 유지할 경우에 현 교통법의 문제점⁴⁾이 개선되지 못한데 따른 부정적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게 됨.
 - 교통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대인배상 II 가입 운전자의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이 유지됨으로써 현재의 높은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이 유지될 것임.
 - 대인배상 I 단독가입자와 대인배상 II 무한 담보가입자 사이에 가입여부에 따른 형사상 처벌 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음.

3) 운전자의 처벌이 가벼워짐으로써 운전자가 함부로 운전하여 사고발생률이 늘어나는 것을 운전자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함.

4) 박미숙(2004)에 따르면, 교통법은 법리적 측면에서 교통사고처리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이 적정한가하는 문제와 운용측면에서 법 시행 이래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법규준수의식이 희박화하였으며, 특례법 위반사업의 증대가 이를 반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고 함.

기광도(1996)에 따르면, 특례법 위반사건 가운데 대부분 불기소처분이나 구약식기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실제 1심 선고에 의하여 유죄를 받은 것은 발생사건의 7.7%에 불과하며,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 따라서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와 더불어 교통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단기적으로 운전자가 자동차사고에 따른 교통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건인 중대교통법규위반 항목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교통법의 폐지가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제3보험 손해사정사 제도 再考

정봉은 연구위원

요약

- 2011년 1월부터 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의무제도가 제3보험으로도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조사·평가·사정을 할 수 없고 단순히 진료영수증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손해사정이 의무화되어 있음. 선진국의 경우 제3보험에 손해사정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감안, 손해사정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제3보험 손해사정의무화가 필요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1977년 최초로 도입된 손해사정사제도는 1993년 『손해사정인관리규정』에 의거, 상해보험이 포함된 특종보험이 제1종손해사정사 업무영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반상해보험도 손해사정이 이루어져 왔음.

- 이후, 2000년을 전후로 제3보험이 생·손보간 자유화되었고, 질병·상해·간병보험을 제3보험영역으로 신설하면서 손보사에서 하고 있던 일반상해보험의 손해사정이 확대되었음.

- 2011년 1월 약정된 급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형 제3보험이나 실손의료비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사를 상시 고용하여 지급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제3보험 손해사정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었음.

- 손해사정업무란 사고접보 후 사고일시, 장소, 보험의 목적, 사고의 원인, 손해상황 및 손해액추산, 계약사항파악 등과 함께 사고증거자료의 보존과 손해방지장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 정액형 상품이 중심인 생보사에도 손해사정의무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그 취지와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그 필요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再考해 보고자 함.

- 보험업법 제1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2에 의하면,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의 손해

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손해사정사 1인당 2인까지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제3보험 손해사정업무는 신체손해사정사만 수행가능하며, 신체손해사정사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 책임보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을 담당함.

■ 손해사정사 본연의 임무이자 핵심업무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임.¹⁾

-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을 최초로 규정할 당시 “손해액의 평가·사정”으로 규정하였듯이 제3보험에서도 손해액의 크기를 평가하고 사정하는 것이 핵심임.
- 단순한 손해발생통지의 접수와 약관·관계법규의 적용 등을 손해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손해사정업무(보험업법시행령제59조제1항3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험사고조사업무(보험업법시행령제59조제1항5호)」, 「보험금지급심사 및 결정업무(금융기관업무위탁규정)」 등이 있으나 이 개념들은 서로 상이함.
 - 보험사고조사업무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및 경위를 조사하는 업무라 할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심사 및 결정업무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임.
 - 사고조사와 손해사정은 보험금지급심사 및 결정을 위한 사전업무이므로, 제3보험에 손해사정이 필요하다면 사고사실에 대한 병원 영수증 확인만으로는 손해사정이라 할 수 없고 손해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조사, 평가 및 사정의 내용이 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제3보험은 정액형 제3보험과 실손형 제3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액형 제3보험은 질병 발생 시, 실제 발생손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손해액 사정을 할 여지가 없음.

- 상법(보험계약편) 중 인보험 규정에서 인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발생손해액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불필요함.
- 생명보험회사의 정액형 제3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여부 및 장애등급 정도만 확인할 뿐 발생손해액을 산정하거나 과실비율, 기왕증의 기여도 등을 따져 보험금을 감액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판례도 있음.

1) 조규중 외(1985),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법문사, p. 97.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중략) 약관에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2002.3.29. 선고2000다18752,18769 판결).

- 손해보험회사의 정액형 장기상해보험의 경우도 발생손해액의 크기를 사정하지 않고 면·부책 사항을 따져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생명·손해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담보를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비를 제외하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일정비율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공동보험이므로 손해사정의 여지가 없음.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본인부담 의료비 중 약관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일정비율(예: 90%)의 금액을 지급하면 될 뿐 별도의 손해사정을 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 요양기관의 진료비 내역을 피보험자를 통하여 수령할 뿐 요양기관에 진료내역을 청구하거나 진료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다만, 다수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하기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간 확인을 통하여 최종 비례보상액을 정하는 업무는 있으나 이는 보험금지급심사의 일환일 뿐임.

■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3보험에 대하여 유자격 손해사정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3보험이 손해액의 크기를 조사하고 평가·사정할 부분이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독립손해사정사(independent adjuster)와 피보험자를 대리하는 공공손해사정사(public adjuster)로 구분하는데, 이 중 피보험자를 대리하는 공공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화재, 재산, 누수, 도난, 보일러·기계, 엘리베이터 및 해상·운송보험에 국한되며 신체상해보험은 포함되지 않음(뉴욕주 보험법 제2101조(g)).
 - 또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7개 주에서는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유자격자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심사실무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국가공인 손해사정사는 ‘자동차차량손해사정사(Expert)’가 유일하며, 공인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사용되는 ‘非자동차Expert’가 있는데 이들은 화재, 도난, 기계, 건설 등 전통적 손해보험을 취급하며 인체상해 및 건강은 다루지 않고 있음.²⁾
- 영국·독일·일본의 경우,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손해사정사 자격기준이 없어 공인손해사정사는 존재

2) 일본손해보험사업총합연구소(2008), 『歐美損害保險會社における損害調査の實務現狀分析』 참조.

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평가·사정이 필요한 재물이나 자동차 등에서 손해사정이 활용되고 있으며, 신체·건강보험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음.³⁾

■ 오히려, 미국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 환자에게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의 적정성 검토, 퇴원계획점검, 과소 또는 과잉 진료평가, 진료의 질적 문제 발굴, 진료상 책임소재 발굴 등의 의료이용도관리(Utilization Management: UM)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행위와 의료수가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계약형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UM간호사, Quality Improvement간호사, Medical Review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UM을 손해사정이라 인식하지 않으며 이는 심사평가의 일환임.

■ 해외의 보험회사들은 많은 심사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자격손해사정인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는 없음.

● 미국의 Travelers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만 3천여 명의 손해조사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Progressive 손해보험회사도 1만 1천여 명(2005년 기준)의 손해조사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음.

■ 결론적으로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되고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제3보험의 손해사정의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짐.

● 제3보험 손해사정사 의무고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을 제3보험사업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임. [kiri](#)

3) 상동.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김경환 수석연구원

요약

■ 최근 국회와 정부는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그 주요 내용은 현재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대체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일원화하는 것임. 그러나 별도의 기관 설립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시점에서는 취급정보의 최소화나 신용정보회사로의 정보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공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검찰발표, '14. 1. 8) 이후 국회와 정부는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힘.

- 이는 민간성격을 갖는 금융권 각 협회가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모인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거쳐 대부업체나 카드사 등으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은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의 설립이 개인정보 유출방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
 -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외에서도 공공기관이 신용정보를 독점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부각
- 이하에서는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해외사례 및 취지 그리고 현행 제도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핵심인 신용정보 집중(제공)기관은 그 기관의 법적 기반 및 역할 등에 따라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ublic Credit Registry: PCR)과 민간 신용정보집중기관(Private Credit Reporting

Firm)으로 구분됨.¹⁾

- PCR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립된 제도적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운영됨.
- CB(Credit Bureau)라 불리는 민간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개 일반 기업의 형태 또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기구(협회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신용정보 공유체계를 살펴보면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CB와 PCR이 함께 존재함.

- 선진국 중 미국과 영국의 정보공유는 전적으로 CB에 의존하는 반면, 프랑스의 신용정보공유시스템은 PCR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표 1〉 세계 주요국의 신용정보 관리체계

국 가	집중기관	공유정보	비 고
미 국	CB	불량정보·우량정보	90년대 후반부터 우량정보 공유 기피현상 발생
호 주	CB	불량정보	우량정보 집중 금지
일 본	CB(준PCR)	불량정보·우량정보	업권별 신용정보 공유체계(연체정보는 통합관리)
독 일	PCR·CB	불량정보·우량정보	PCR과 CB 간의 정보 미공유
이탈리아	PCR·CB	불량정보·우량정보	PCR과 CB 간의 정보 미공유
프 랑 스	PCR	불량정보	민간 신용정보회사 설립 금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3. 10), 『보험정보 집중·활용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p. 87~95 참조.

■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펴볼 때 PCR의 설립은 아래의 목적하에 주로 CB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²⁾

-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통해 금융제도 전반의 안전성을 제고
 - 독일의 PCR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의 PCR은 실제로 대규모 차입자의 파산에 따른 은행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대응책으로 설립
 - World Bank의 2004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PCR을 설립한 국가의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이

1) 박찬일·남수중(2009. 10. 30), 「금융부문의 발전과 법·제도의 역할: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정보공유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pp. 106~108.

2) 박찬일·남수중(2008. 4), 「중국 신용정보공유제도의 발전: 법금융학적 관점」, 『동북아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pp. 277~278; 이인호·강경훈(2010. 3), 「PCR과 민간 CB의 상생적 발전 방안」, 『조사연구 Review』 제29호, pp. 12~28. 참조.

PCR 설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응답

- 미발달된 CB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필요
 - PCR은 채권자(신용제공기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CB산업의 한계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을 극복
 - CB의 정보자본 축적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특성을 지남에 따라 독과점시장을 형성
 - 긍정적 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는 제도적으로 기초정보를 집중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자율적 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민간 CB인 신용정보회사를 중심으로 공유·활용되고 있어, PCR과 CB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공적인 성격을 띠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며,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통 활성화는 민간 CB가 담당하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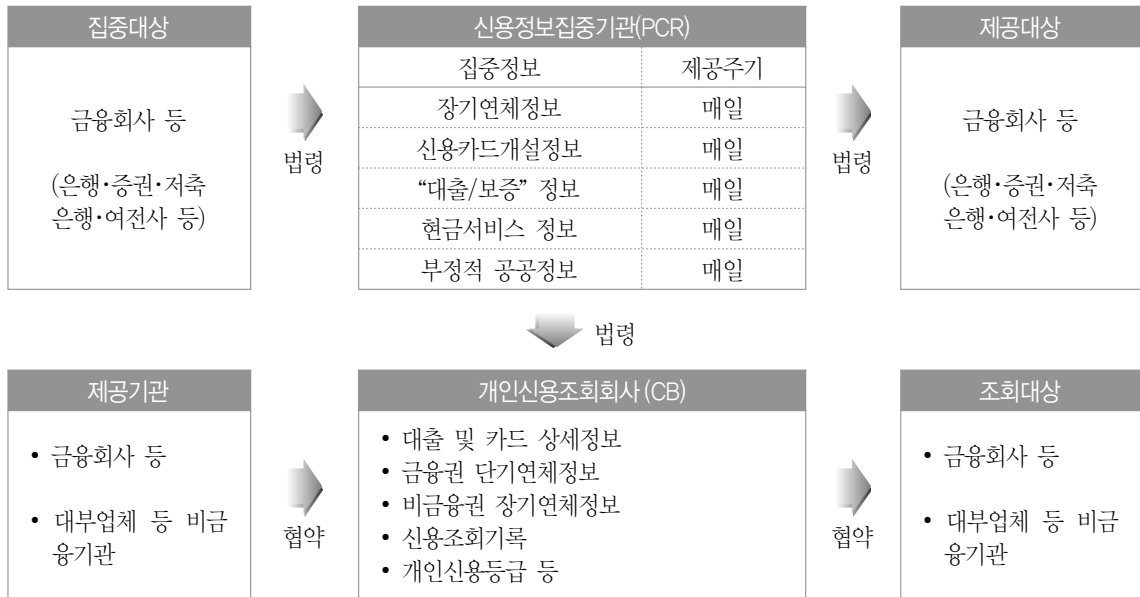
■ 정보의 공적 집중을 통한 신용정보의 관리와 공유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와 5개의 업종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음.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기관,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다.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임.
 - 현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저축은행연합회 및 정보통신산업 협회 등이 있음.

■ 계약에 기초한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과 신용정보의 가공·평가 및 조회서비스 제공은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은 민간 신용정보업자(CB)가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및 한국기업데이터(KED) 등의 민간 회사가 영업 중에 있음.

〈그림 1〉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관



자료: 금융감독원(2013. 3. 5),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참조.

■ 올해 초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신용정보 관리기관의 공적기관화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회사인 CB에 무작위로 제공함에 따른 공적 기능의 약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관련 산업의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로서 해당 업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대변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인식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모두 6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이 곤란

■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공적 기능 부여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개선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격, 역할 등을 재정립해서 정보보호·보안체계에 대한 관리와 책임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금년 2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행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설립하고, 각 협회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으로 모두 이관하도록 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³⁾

-
- 한편 4월 23일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⁴⁾

■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공적 기능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해킹 등 정보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임.
 - 은행연합회는 외형상 민간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법규에 의해 그 권한과 기능이 세밀히 규제되고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⁵⁾
 -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차선책으로 외국의 예처럼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등에 PCR기능을 부여할 경우에도, 신용정보의 관리 및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현행 방식보다 정보유출이나 오·남용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내부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골격을 유지하거나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나가되, 현시점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취급정보 최소화나 CB로의 정보제공 금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 관리에 공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취급정보 최소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들도 은행연합회가 집중하는 기초정보만을 취급하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PCR이 공적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취급정보 최소화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인식 및 신뢰성 제고
- (CB로의 정보제공 제한) CB는 민간회사로서 신용정보 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PCR의 보유 정보를 CB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거나 건별 조회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PCR의 공적 취지를 유지하고 정보 남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불안감을 최소화. [kiri](#)

3) 국회사무처(2014. 2. 21),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322회 국회(임시회) 정무소위 제1차 회의, p. 5.

4) 파이낸셜뉴스(2014. 4. 23자 인터넷판), 「정무위 소위, 신용정보보호법 의견 '접근」.

5) 한국개발연구원(2013), p. 84.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현재의 손해배상 제도는 전보(compensational)배상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일으킨 직·간접적인 손해를 원상복구 시켜 주는 수준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불법행위 예방효과는 미미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 명과 관련된 부분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 예방장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세월호 참사의 경우 무리한 증축 및 화물 과다 적재,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구호 노력 소홀 등 회사의 관리 소홀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됨.¹⁾
- 실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영진 및 소유주의 관리책임 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징벌 차원의 금전 부담을 지우는 제도임.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함.²⁾
 - 법률상 손해배상은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³⁾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⁴⁾으로 나눌 수 있음.⁵⁾

1) 사법당국 역시 상기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2) 이상윤(1996), 『영미법』, 박영사, p. 252.

3) 민법 제390조.

●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⁶⁾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켜주는 수준임.

–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손해를 복구하는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전보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보배상”의 불법행위 및 관리 소홀 예방 효과는 미미함.

– 세월호 참사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자의 기대여명 동안의 평생소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보상해 준다고 해도 이는 유족과 사망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것일 뿐 가해자가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적 해외사례는 1989년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의 경우를 들 수 있음.

● 1989년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선주사인 엑슨(Exxon)사의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25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음.

● 엑슨 발데즈호 원유 유출 사고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져 유조선의 경우 바다와 원유탱크 사이의 격벽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설계방식이 의무화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태안반도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의 대규모 원유 유출사고가 있었으나 벌금 총액은 6,000만 원이었고 안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별다른 제도적 변화는 없었음.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형사처벌이 수반될 경우 이중처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임.⁷⁾

● 징벌적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이 존재하므로 금전적 부과는 하나의 범법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하는 주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징벌적 제재로 인한 불법행위 예방효과임.

4) 민법 제750조.

5)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의 대상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한정함. 영미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요 대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고 있음.

6) 2013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 3배 이내에서 보상하도록 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고 있음.

7) 김현수 외(20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피해자에게 원상복구 이상의 충분한 배상을 해주어야 함.
 - 현재 손해배상 제도 하에서 세월호 참사의 주된 희생자인 학생들의 예상 배상액은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 수준임.
- 영국,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4개 주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불법행위 억제에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 전보배상과 징벌적배상 비교

구 분	전보(Compensational)배상	징벌적(Punitive)배상
적용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
배상의 범위	손해액에 한정	손해액 이상
불법행위 징벌	형사법적 징벌	형사법적, 금전적 징벌
불법행위 징벌 대상	실무자	실무자, 경영자 및 소유주
불법행위 예방효과	예방효과 없음	예방효과 있음
배상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큼

주: 배상의 범위에서 손해액이란 정신적 손해 등 불법적 행위로 일어난 모든 손해를 포괄함.

■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대상도 실무자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재할 경우,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묵인할 유인이 발생함.

-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해 기대되는 추가적인 이익이 사고발생 시 예상되는 복구비용보다 클 경우 기업소유주는 실무진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유인이 있음.
- 이에 반해 불법행위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한 사상자 발생 시, 피해자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됨.

■ 세월호 참사의 경우 관리부실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이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안전관리부실로 인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8) 메사추세츠,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위싱턴.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생명 혹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배상액 결정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kiri](#)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란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보험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보험가입으로 인한 징벌효과 무력화와 보험료의 전가 가능성임.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주별로 상이하나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대형 주(州)들의 경우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허용사례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항공, 항공, 철도 등 교통이용 관련 사고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¹⁾
 - 가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울 경우 피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하는 현재의 전보배상 제도에 비해 사고 발생 시 경영자의 부담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는 안전관련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임.²⁾
- 본고에서는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보험가입 대상에 관한 형평성³⁾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1) MBC 뉴스데스크(2014, 5. 21),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67087_13490.html 참조.

2) 정원석(2014),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간이슈.

3) McCullough Campbell & Lane(2005), "The Insurability of Punitive Damages".

- 보험가입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사적계약이므로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⁴⁾, 보험가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 등이 있음.⁵⁾
-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래 목적인 징벌 효과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있음.⁶⁾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료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인상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⁷⁾, 그리고 배상액에 대한 예상이 어려우므로 보험회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임.

■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각 주별로 상이하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주들은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음.⁸⁾
- 우리나라와 인구나 경제규모에서 유사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경우 허용하지 않고 있음.⁹⁾

〈표 1〉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미국 주별 징벌적 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허용여부

주, 나라	인구 수	경제규모	보험 허용여부
캘리포니아	3,833만 명	19,589억 달러	불허
텍사스	2,644만 명	13,081억 달러	결정되지 않음
뉴욕	1,965만 명	11,579억 달러	불허
플로리다	1,955만 명	8,430억 달러	불허
일리노이	1,288만 명	7,511억 달러	불허
대한민국	5,000만 명	11,162억 달러	-

자료: 미국 경제분석청 2012년 자료¹⁰⁾와 IMF 2012년 자료¹¹⁾ 그리고 WilsonElser(2011)¹²⁾을 재구성함.

4) Mazza v. Medical Mutual Insurance Co.(1984), 319 S.E.2d.

5) First National Bank v. Fidelity & Deposit Co.(1978), 283 Md. 228, 243, 389, 367.

6) McCullough Campbell & Lane(2005), "The Insurability of Punitive Damages".

7) 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보험가입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서비스 및 재화의 가격에 반영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됨.

8) WilsonElser(2011), Punitive Damages Review.

9) 우리나라와 비교될 만한 미국 경제규모 상위 9개 주 중 텍사스를 제외한 8개 주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미국의 주별 경제규모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뉴저지 등의 순서임.

10)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2), "WIDESPREAD ECONOMIC GROWTH ACROSS STATES IN 2011".

11) IMF(2012), "Report for Selected Countries and Subjects".

12) WilsonElser(2011), Punitive Damages Review.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징벌로서 지불해야할 비용을 보험료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발생이 줄어들 수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이 허용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및 배상금액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징벌적 배상에 대한 위험인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상이한 점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유사한 미국의 대형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초기 단계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제도가 정착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할 것임. [kiri](#)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대법원은 이자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피고)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을 취소해 달라면서 한화생명 등 9개 보험회사(원고)가 낸 소송에서 보험회사 이자율에 관한 단순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원고의 승소를 확정
- 이는 이자율에 대한 보험회사들 간의 정보교환과 같은 사업자 간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를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로 향후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보험회사는 상호 정보교환을 상품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특히 각자 보험가격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였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비하고 법규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음.

■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화생명 등 9개 보험회사가 낸 이자율 관련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줌.

● 이자율과 관련한 보험회사 간 정보교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 고등법원¹⁾은 지난 2013년 7월, 보험회사 간의 단순 정보교환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없고 교환된 정보를 참고하여 각 사가 이자율을 결정하였으며, 각 사의 이자율에도 뚜렷한 외형적 일치가 없어 담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1) 서울고등법원 2013.7.17 2012누2346.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공동행위) 제1항에서 말하는 “합의”의 개념으로 단순 정보교환과 같은 사업자 간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는 포함시킬 수 없으며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 등을 합의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심결²⁾에서 부당 공동행위 합의는 명시적 합의 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하며 정보교환도 시장상황, 정보종류에 따라 공동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생명보험회사의 정보교환과 이에 근거한 가격결정을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였음.

- 16개 생명보험회사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회의를 통하여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 사의 이자율을 각자 결정하였음.
- 이와 같은 보험회사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자율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보험회사 간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16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2개 생명보험회사에 총 3,6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가른 중요한 차이는 사업자들의 정보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로 이는 사업자 간 묵시적 합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임.

- 유럽 경쟁법 제101조³⁾제1항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 간 모든 합의, 사업자 협회의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를 불법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합의의 추정⁴⁾은 시장 또는 상품 특성, 사업자간 접촉 횟수 및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 공동행위의 개연성이 상당한 때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동조적 행위까지 이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는 “직·간접적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⁵⁾”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 추정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11-284호, 2011.12.15.

3) EU 실행조약 제101조,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EFU) article 101(1),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may affect trade...

4) 추정이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5호, Ⅱ-2 나. 합의의 추정).

-
- 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⁶⁾ 합의의 증거가 없는 경우, 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에만 의존하여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의 또 하나의 주요 근거는 각 보험회사가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이자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 사의 이자율에도 뚜렷한 외형적 일치가 없었다는 점임.

- 만약 이자율이 “공동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설령 보험회사들이 이자율을 “각자” 결정하였더라도 각 사의 이자율이 외형상 일치하는 경우 전술한 정보교환이 합의 추정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되었을 수도 있음.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 간 의사연락 및 정보교환 등 동조적 행위 자체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성립을 위한 “합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음.
- 또한 보험회사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하였더라도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 각 사 이자율에 차이가 있다면(또는 각 사 이자율에 뚜렷한 일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합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보험회사는 상호 정보교환을 상품 특성 상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특히 각자 보험가격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였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비하고 법규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간의 단순한 정보교환은 보다 확실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담합 증거를 보강하는 정황증거로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한된 행정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kiri](#)

5) 예를 들어, 1)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3) 특정 기업의 가격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등에 대한 향후계획 등 쉽게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4)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등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본 후 그에 따라 가격인상을 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5호, II-2 나. 합의의 추정).

6) 보험회사 이자율이 외형상 뚜렷하게 일치하는 경우,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묵시적 합의의 증거로 판단할 수도 있음.



보험회사 행정지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공동행위를 유발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안 통과 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가 예상됨.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정보공유와 협력을 법으로 강제하는 한편 양 기관 업무협약(MoU) 활성화를 촉진하여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낮추고 보험시장 경쟁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가 같은 행정목적¹⁾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¹⁾이 지난 8월 13일 발의되었음.

- 본고는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배경,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개정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함.

- 보험시장에서는 그 동안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제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원적²⁾ 규제의 상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2002년 4월에 마무리된 보험료 자유화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보험료 책정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었으나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자율 및 보험료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1) 김종훈 의원(대표발의) 외 11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393.

2) 전문적 금융규제와 일반적 독점규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규제보다 “이원적” 규제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나 일선 보험회사는 “중복” 규제로 느낄 개연성도 있음.

– 보험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보험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여러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부당 공동행위(담합) 혐의로 제재를 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왔음.

– 2000년 이후 공동행위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8건³⁾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독당국의 가격관련 행정지도가 연관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료 등 결정과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였음.

■ 보험시장에 대한 두 행정기관의 상충되는 규제는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담합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보험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⁴⁾에 대해 고등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판결로 확정⁵⁾되었으나, 이미 보험회사 담합혐의 언론보도로 실추된 소비자 신뢰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 보험시장에 대한 규제상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존 보험업법 제131조의2⁶⁾를 제131조의3으로 하고 제131조의2 (행정지도)를 신설하였으며 총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포함)가 보험업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2항은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행위가 부당 공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지도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이승준·강민규·이해랑(2014. 3),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pp. 17~18.

4)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11-284호, 2011. 12. 15.

5) 대법원 2014. 7. 24. 2013두16951 및 서울고등법원 2013.7.17 2012누2346.

6)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표 1〉 「보험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설〉	제131조의2(행정지도) 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지도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생략)	제131조의3(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현행 제131조의2와 같음)

■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원적 규제의 상충을 입법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금융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보험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 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적 협의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규제 상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에 따라 양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가능성은 줄어들.
- 둘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적 협의는 양 기관 사이의 업무협약 활성화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반의 법규리스크를 낮추어 금융시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07년 12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 공정거래규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여 왔음.
 - 최근 양 기관은 금융회사 공정거래규제에 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하여 보험시장 이원적 규제의 상충이 완화되어 보험회사 법규리스크가 낮아지고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와 협력 강화를 통해 법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kiqi**



일본의 정성적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시사점

이경아 연구원

요약

■ 2014년 4월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정성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을 발표함. 일본의 정성평가 강화는 지급여력제도를 통한 정량적 위험관리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이번 지침에는 전사적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됨. 이로 인해 일본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정성적 정보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정성평가 수단 역시 내부통제에서 전사적 위험관리를 유인하는 ORSA로 강화될 것임을 뜻함. 유럽과 미국 역시 정성평가체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정성평가 규제 강화는 일본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2014년 4월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을 발표함.

- 감독지침에는 전사적 위험관리 개념이 상당 부분 보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ORSA)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됨.
 - 앞서 일본은 2012년 지급여력비율(RBC, risk based capita) 산정기준을 개정¹⁾한 바 있음.
- 2012년 지급여력비율 개정이 정량적 측면의 위험관리 강화였던 반면 금번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은 정성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일본의 정성평가 강화는 지급여력제도를 통한 정량적 위험관리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2000년 이후 일본에서는 아파토생명 등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높은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고 있었

1) 2012년 일본 금융청은 가용자본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요구자본 산출 신뢰수준을 90%에서 99%로 상향하는 등 지급여력비율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음에도 파산한 사례가 있음.

- 이를 계기로 정량적 위험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위험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급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표 1〉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사례

(단위: %)

구 분	파산시기	지급여력비율	
		FY1999	FY2000
동방생명	1999. 6. 4	154.3	8.5
제백생명	2000. 5. 31	304.6	-380.2
대정생명	2000. 8. 28	384.7	67.7
제일화재	2000. 5. 1	330.0	-298.4

자료: 일본 금융청.

- 이에 정량적 위험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험관리 통제 및 내부절차와 같은 비계량적·정성적 사항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념들이 강조되기 시작함.

- 첫째, 내부위험(operational risk)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내부위험관리를 위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개념이 강조됨.
- 둘째, 전사적 위험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함.²⁾

- 내부통제는 보험회사의 모든 통제의 총합으로 기업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체계임.

- 내부통제가 강조된 이유는 기업의 외부위험(business risk)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내부위험관리가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임.
 - － 취약한 내부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경우 규모가 크고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패 시 금융회사의 평판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 － 또한 외부위험에 비해 위험요인(risk factor)의 식별과 관리가 보다 어려움.
- 내부통제 강화로 위험관리 규정의 실행책임과 회계정보의 생성 및 보고에 관한 내부책임자의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되었음.³⁾

2) 2010년대 들어 대형사를 중심으로 전사적 위험관리가 도입됨.

3) 내부통제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SOX(sarbanes-oxley act)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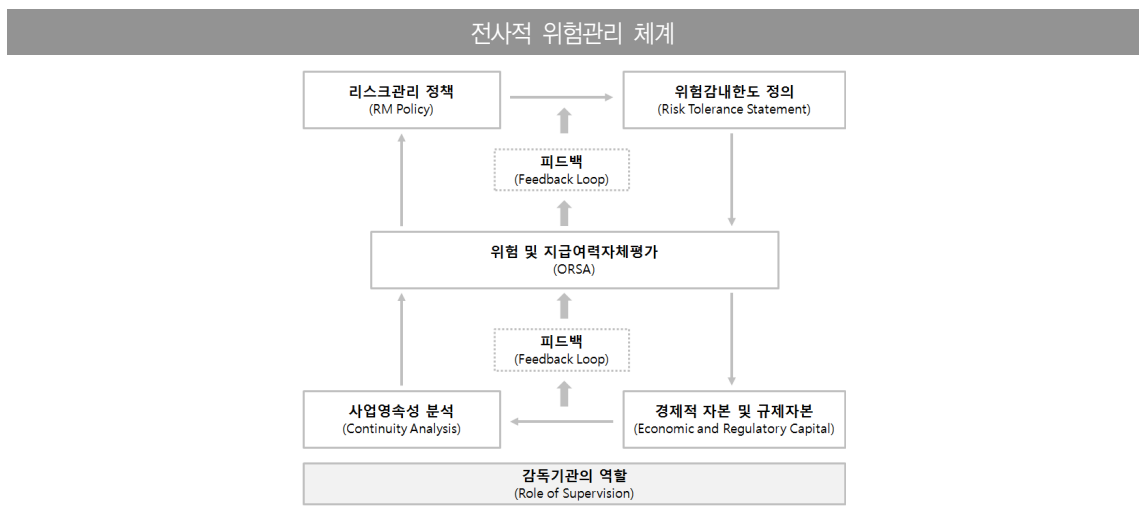
■ 전사적 위험관리는 보험회사의 위험한도 설정, 규제적·경제적 자본관리, 위험감시 및 위험관리방법이 규정된 관리 체계임.

- 전사적 관점이란 영업활동과 리스크관리를 분리하여 인식하던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개념임.
 - 부서별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왔음에도 위험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사적 위험관리가 강조되기 시작함.
- 전사적 위험관리 체제에서 보험회사는 노출된 모든 위험에 대해 위험관리전략을 사전적으로 수립하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ORSA를 통해 얻어진 정성적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ORSA는 보험회사 스스로 자사의 보유위험과 위험관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내부적 위험평가체계임.

- ORSA는 보험회사가 표준방법⁴⁾에 의해 산출된 규제자본과 자신들의 위험특성을 반영하는 경제적 자본을 스스로 평가한 뒤 평가결과와 자신들의 재무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평가체계임.
 - 지급여력비율이 계량적 위험정보만을 포함하는 반면 ORSA는 계량적·비계량적 위험정보를 모두 포함

〈그림 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표준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



자료: Insurance Core Principles, IAIS.

4) 표준모형 감독당국이 승인한 내부모형.

■ 일본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회사법(2006년), 금융상품거래법(2008년)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왔음.

- 회사법은 내부통제의 정비 및 운영을 이사회의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음.
- 금융상품거래법은 내부통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 － 내부통제보고서는 재무제표 등 공시정보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보고체계에 관한 평가보고서로 내부통제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
- 금융상품거래법은 회사법에 비해 내부통제에 관한 요건이 보다 구체적이며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
 - － 회사법이 업무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감사보고서만을 둔 것에 비해 금융상품거래법은 회사법에 비해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규정과 벌칙조항을 포함

〈표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및 회사법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

구 분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대상기업	대기업, 위원회설치회사	상장기업과 자회사
목적	업무의 적절성 확보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대상자	이사회	경영자
공시	사업보고서	내부통제보고서
감사	감사·감사위원회	외부감사(감사법인·공인회계사)
감사결과	감사보고서	내부통제감사보고서
벌칙	없음	내부통제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내부통제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자료: 이흥무(2014), 『환경의 변화와 보험회사의 ERM 규제』.

■ 새롭게 공표된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는 재무건전성 목적의 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보다 강화되었음.

- 전사적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ORSA에 대한 내용이 보험회사 위험관리 지침에 새롭게 포함됨.
 - － 정성적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토대로서 위험의 식별 및 계량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사적 위험관리 개념이 강조됨.

■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와 이를 위한 정성적 위험관리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평가됨.

-
- 첫째, 정량적 정보만을 근거로 평가되던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제도에 정성적 정보가 반영될 것임.
 - 이로 인해 향후 정성적 평가 결과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뜻함.
 - 둘째, 재무건전성 정성평가의 수단이 내부통제에서 전사적 위험관리를 유인하는 ORSA로 이행하고 있음.
 - 셋째, 정성적 평가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이 향상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보험핵심원칙(ICP)은 ORSA를 각국 보험감독당국에 권고
 - 유럽 Solvency II 역시 ORSA 실시와 점검에 관한 내용을 포함
 -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SMI(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일환으로 ORSA를 공표

■ 현재 국내 보험감독당국 역시 ORSA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정성적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발표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⁵⁾에 따르면 ORSA는 2015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2017년에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ORSA 시행에 대비해⁶⁾ 국내 보험회사들도 정확한 내부위험평가를 위한 통제구조 정비, 위험 평가 및 보고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kiri](#)

5) 금융감독원(2014. 7. 31).

6) 구체적인 ORSA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논의 단계임.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필요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들어 대형 안전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용노임이 소득기준으로 사용되고 연 5%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함.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인 일용노임은 해외에서 사용되는 급여노동자 평균 임금에 비하여 낮은 기준이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기대값보다 낮게 정해지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형 안전사고 발생으로 배상책임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인구¹⁾의 불합리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제5차 경제자문회의는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등 형사·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금년 8월 26일).²⁾
- 그러나 인구의 54%³⁾를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문제점은 논의되지 않고 있음.

■ 본고는 배상책임의 합리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중 일실이익

1) 비경제활동인구는 미취학아동, 학생, 주부, 무직자 등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일정한 소득기준이 없는 사람을 뜻함.

2) <http://www.neac.go.kr/news>.

3)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17,491,134명, 15세 이하 인구가 8,888,761명, 총 인구 수는 48,580,293명임.

(逸失利益)⁴⁾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비경제활동인구 소득기준인 일용노임은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을 소득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개인차를 인정해 주는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기준은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의 기대값 보다 낮게 산정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피해자가 사고로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인 일실회익은 소득기준, 가동연령⁵⁾을 고려한 호프만 계수⁶⁾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됨.⁷⁾

- 사망과 장애에 대한 일실회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됨.⁸⁾
 - 사망의 일실회익 = 소득기준×가동연령을 고려한 호프만 계수 - 생활비
 - 장애의 일실회익⁹⁾ = 소득기준×노동능력상실률¹⁰⁾×가동연령을 고려한 호프만 계수
- 일실회익 계산에서 소득기준은 피해자의 경제활동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됨.
 - 급여 소득자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 중 피해자가 기여한 부분, 즉 사업 소득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일실회익으로 인정
 - 학생, 미취학 아동, 주부, 일용노임자, 무직자 등 소득기준이 일용노임보다 적거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용노임¹¹⁾을 기준으로 함.
 - * 일용노임은 피해자의 거주지역(도시, 농촌)과 성별(남, 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
 - * 대학생의 경우 전공이나 졸업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일용노임 이상의 기준 적용 가능
- 가동연령은 피해자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으로 20세부터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통상 2년)을 가동연령에서 제외
 - 정년이 보장된 직업의 경우 정년 인정, 일용노동자의 경우 60세를 가동연령 종료시점으로 인정, 특수직·전문직은 직업별 특성 인정¹²⁾

4) 일실회익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임.

5)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기를 뜻함.

6) 호프만식은 단리식 현재가산방법이고 복리식인 라이프니츠 방법이 쓰이기도 함. 호프만식이 피해자에게 유리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4521&cid=40942&categoryId=31721> 참조.

7) 본고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본고와 다른 판결이 가능함.

8) 장중운(2014), 『최신 손해배상실무』, ISBN: 9788963463544, 진원사, pp. 54 참조.

9)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함.

10) 장중운(2014), pp. 85 참조.

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2013년도 4/4분기 일용노임은 남자(93,507원), 여자(61,915원), 장중운(2014) 참조.

12) 변호사·법무사 70세, 의사 65세, 보육교사 57세, 간호학원 강사 65세, 목사 70세, 암자(불교) 경영자 60세 등.

- 실무에서 월 급여 산정을 위한 월 노동일수는 22일임(농촌의 일용노무자는 월 25일).
- 2013년도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일용노무자 연간 수입은 남(2,400만 원), 여(1,600만 원)

■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국내 일실이익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조사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피해자와 유사한 특징(성별·연령·지역·학력 등)을 가지는 집단의 평균 소득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으로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차를 인정함.
 - 미국은 피해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집단의 평균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차¹³⁾, 주부 가사노동의 가치, 물가 상승률 등을 소득기준에 반영함.
 - 영국은 아버지의 수입을 자식의 소득기준으로 인정하는 등 개인차 인정
 - 일본은 성별 전 연령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을 주부, 학생, 아동의 소득기준으로 함.
 - 중국은 지역별 평균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인정하는데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농촌은 수입을, 도시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일용노임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것임.
 - 일용노임이 기준이 된 것은 과거 충분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결정한 판례에 의한 것임.

〈표 1〉 국가별 비경제활동인구 일실이익 산정 시 소득기준 비교

국 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국
일반적 기준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임금, 개인차 인정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임금, 개인차 인정	성별·학력별 평균임금 인정	지역별 평균소득을 인정, 단, 농촌은 수입으로 도시는 가처분소득으로 함	일용노임

자료: 법원행정처(2007. 2),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발간등록번호: 32-9740029-000079-14, LSC종합법률사무소 웹사이트¹⁾, 동경변호사회변호사연수센터일동운영위원회(2012), 交通事故訴訟における典型後遺障害と損害賠償実務, ISBN: 4324094667, ぎょうせい 미래종합법률사무소(2010), 民事交通事故訴訟の実務一保険実務と損害額の算定, ISBN: 4324088055, ぎょうせい, <http://www.chinalawedu.com>.

■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피해액의 기대값보다 낮아져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에서와 같이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생이 사망한 경우 일용노임이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어 손해액의 기대값과 실제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함.¹⁴⁾

13) 부모의 직업과 부(副), 학업 성취도, 지역, 성별, 인종 등.

- 일용노임 기준 연소득 2,400만 원은 경제활동 남자인구 연 평균임금인 3,453만 원¹⁵⁾의 69% 수준이므로 이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갖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미래 수입을 기대값보다 31% 낮게 책정하는 것임.
- 이렇게 낮게 책정된 소득기준은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1억 3천 2백만 원의 차이를 발생시킴.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 5% 이자율은 최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¹⁶⁾
-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 3%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5억 8천 3백만 원) 5%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4억 7천 7백만 원)보다 1억 6백만 원 손해배상액 증가

〈표 2〉 소득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

구 분	연 소득기준	손해배상액 (5% 이자율, 현행)	손해배상액 (3% 이자율)
일용노임 기준(현재)	2,400만 원	3억 4천 5백만 원	4억 1천 9백만 원
평균임금 기준(합리화)	3,453만 원	4억 7천 7백만 원	5억 8천 3백만 원
차이	1,053만 원	1억 3천 2백만 원	1억 6천 4백만 원

설명: 남자 고등학교 2학년생이 17세가 되는 시점에 사망한 경우 22세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60세까지 468개월간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일용노임과 평균임금을 소득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비교, 기대소득 현재가에서 1/3을 생활비로 공제한 후 사망 위자료 4천만 원과 장례비 5백만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였음. 실제 손해액은 보험회사의 보상관련 약관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일실이익 산정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는 것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기준이며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의 기대값보다 낮게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현행 일용노임 기준을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손해율 산정에서 이용되는 연 5% 이자율은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경제주체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kiri](#)

14) 손해액은 가정에 따라 다소 달리질 수 있음.

15) 통계청(201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참조.

16) 높은 이자율은 손해액을 낮춤.



손해사정의 외부위탁강제 법안에 대한 검토

송윤아 연구위원, 이성은 연구원

요약

■ 9월 30일 이종걸 의원은 보험금 지급 및 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동 법안은 전반적으로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법안 내용 중 보험회사의 내부 또는 자회사 위탁 손해사정 비율을 50% 이하로 강제한 조항은 핵심역량의 외부위탁을 강제하는 것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보험소비자의 만족도 저하가 우려됨.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손해사정능력을 보험사업의 핵심역량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여부 및 수준은 온전히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적 판단에 맡기고 있음. 또한 손해사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비대칭이 완화되면 손해사정의 공정성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회복가능한 부분임. 더불어 손해사정사제도는 보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이외에도 시장왜곡을 줄이면서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여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의 결정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9월 30일 이종걸 의원은 보험금 지급 및 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 동 법안은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인지 부족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 부재가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봄.¹⁾
-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손해발생 사실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⑤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업무형태별로 구분하면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음.

1) 본고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을 통칭하여 보험소비자라 함.

-
-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2013년 11월 말 현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5,184명이며, 이 중 보험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2,897명, 보험회사 위탁업체 소속이 1,480명,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손해사정사는 807명인 것으로 나타남.

■ 법안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 받은 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제9-20조),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코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의사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제9-16조).
 - 그러나 동 규정과 「보험업법」 등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가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둘째,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보수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²⁾
 - 법안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셋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³⁾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전반적으로 동 법안은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2) 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 제9-16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사정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

3)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함: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상에서 정한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상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등.

-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조항보다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수수료 부담원칙 조항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에 불만이 없거나, 있더라도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10월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75.4%가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함으로써 기업 간 상하 수직적 구조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바람직함.

〈표 1〉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인지 상태

(단위: 명)

구 분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액을 조사할 수 있다		계
	예	아니오	
보상 유경험자	463(79.2%)	122(20.9%)	585
보상 무경험자	291(70.1%)	124(29.9%)	415
계	754(75.4%)	246(24.6%)	1,000

주: 1) 본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간 동안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부산 등에 거주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2) 보험경험 유무는 응답자 본인 또는 가족의 경험임.

자료: 보험연구원(2014. 10),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 그러나 동 법안 내용 중 보험회사의 내부 또는 자회사 위탁 손해사정 비율을 50% 이하로 강제한 조항은 핵심역량의 외부위탁을 강제하는 것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보험소비자의 만족도 저하가 우려됨.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포함한 보상능력은 조직내부의 기술이나 단순한 기능을 뛰어넘는 노하우를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으로서, 이를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⁴⁾
- 즉,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능력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편익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다양한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을 제공하며, 경쟁자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핵심역량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⁵⁾

4) J. Hood and W. Stein(2003), "Outsourcing of Insurance Claims: A U.K. Case Stud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8(3).

5) Prahalad C. K. and G. Hamel(1990),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
- 이러한 핵심역량의 외부위탁은 보험회사가 원스탑(one-stop) 보상서비스 등 고객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차단함.
 - 비용절감과 대내외적 경영환경변화로 인해 손해사정이라는 핵심역량의 외부위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손해사정능력을 보험사업의 핵심역량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여부 및 수준은 온전히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적 판단에 맡기고 있음.⁶⁾

- 미국의 대형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State Farm은 2005년 기준 전 직원의 절반인 30,600명이 손해사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재해위험의 손해조사에 한해 외부위탁을 하고 있음.
 - Travelers는 2005년 기준 11,000명의 내부직원이 손해사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위험의 손해조사에 한해 외부위탁을 하고 있음.
 - Progressive의 경우 손해사정을 전략적 분야로 간주하여 외부위탁 없이 내부직원이 처리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사의 상황에 맞게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여부 및 수준을 전략적으로 정하고 있음.
- 그 외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

■ 또한 손해사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비대칭이 완화되면 손해사정의 공정성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회복가능한 부분임.

- 손해사정사제도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의 평가, 사정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있고 손해사정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한, 손해사정의 질적인 측면인 공정성과 신속성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회복 가능함.
 - 향후 보험소비자가 특정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것이고 시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보험회사가 경쟁우위에 있을 것임.

6) 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2008), 『欧米損害保険会社における損害調査実務の現状分析』.

■ 더불어 손해사정사제도는 보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써, 이외에도 시장왜곡을 줄이면서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음.

● 지난 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음.⁷⁾

■ 손해사정능력이 보험회사의 핵심역량이고 손해사정의 공정성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회복가능하며, 시장왜곡을 줄이면서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여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의 결정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손해사정 관련 법규는 손해사정의 공정성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회복가능하도록 손해사정의 투명성 강화와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조항,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수수료 부담원칙 조항,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은 공정한 보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의 효과를 가짐. [kiri](#)

7) 송윤아(2014.8),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제도개선의 향후 논의방향」,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 보상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무보험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자 보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업무상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는 현행 의무보험 제도는 가입대상자 관리 시스템 부재,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기준 미비, 낮은 보상한도, 보상한도의 일관성 결여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무보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자 보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무보험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자 보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금융위원회는 안전사고 관련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방침¹⁾을 발표(2014. 10. 13)하였으며 세월호 3법²⁾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4. 11. 7)하였음.

● 위와 같은 움직임에 앞서 관리체계에 컨트롤 타워 부재, 위험 사전진단·보험 사후관리 프로세스 미비 등 의무보험 제도의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³⁾

1) 재난관련 의무보험 확대 및 미비점 개선(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 벌칙조항 법령에 명시),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보험회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방재 컨설팅, 재난시설 안전점검, 위험관리 서비스 등 부수업무 활성화),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0061 참조.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피해자 보상을 위하여 사고의 가해자가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추정. 정부조직법: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 한국금융신문(2014. 10. 30),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우선되어야 할 것은”,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34424> 참조.

■ 의무보험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나 제3자에게 사업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화하는 제도⁴⁾이므로 의무보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최소한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대연각호텔 화재 사고(1973년) 이후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 의무화, 서해페리호 침몰 사고(1993년) 이후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화성씨랜드 사고(1999) 이후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 대형사고 이후 의무보험이 도입되었음.

■ 한국금융신문(2014. 10. 30)이 지적한 문제 이외에 국내 의무보험은 낮은 보상한도 및 보상한도의 일관성 결여, 미가입자 처벌 규정 부재, 가입대상자 관리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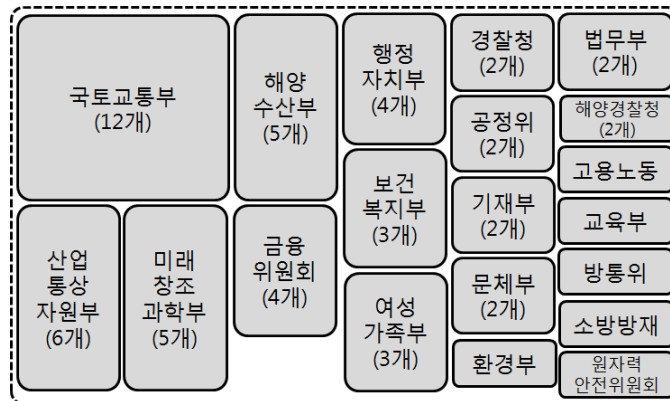
- 일부 의무보험은 시행 이후 보상 한도가 꾸준히 상향되어 온 자동차 종합보험의 의무보험 최저 보상한도⁵⁾를 준용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의무보험은 자동차 의무보험 수준의 보상한도를 차용하여 도입된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책임 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납시관리및육성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유어장의 지정 및관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 제3항 등은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현재 의무보험들은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보상 한도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수준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아래는 보상한도 예시임).
 - * 「도로교통법 시행령(운전학원)」: 대인 1억 6천만 원, 사고당 2억 원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천만 원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사망 8천만 원, 부상 1,500만 원, 후유장해 8천만 원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사망 8천만 원, 부상 1,500만 원, 후유장해 8천만 원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은 최저 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

4) 보험개발원 의무보험 목록 참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건축사보험, 경량항공기에 대한 보험, 공인인증기관 책임보험, 납시어선보험, 다중이용시설 화재 배상책임보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복합운송주선업자화물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산림보험, 선원근재보험,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 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수렵보험, 수상레저보험, 승강기보수업자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연구기관종사자 상해보험,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연안체험시설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외국인노동자상해보험, 우주발사체보험, 운전학원 종합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학원 배상책임보험, 항공보험, 해외근재보험, 화재보험의 특수건물 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망 1억 원, 부상 2천만 원, 후유장해 1억 원, 대물사고 1천만 원.

- 보험개발원(2006)⁶⁾은 대형 사고의 인당 평균 사망 보상금이 2~3억 원 수준이므로 현재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가 피해자 손해배상에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다수의 의무보험이 미가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대부분 의무보험이 가입 대상자 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음.⁷⁾
 - 일부 기관은 사업자 등록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은 이후에 가입 대상자가 의무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어렵고 미가입자가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1〉 의무보험 담당 기관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기관이 담당하는 의무보험 법규의 수, 괄호 안에 수치가 없는 기관은 1개의 의무보험 담당. 〈표 1〉 참조.

■ 따라서 의무보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사업자 등록 시 또는 재산 취득 시 의무보험 가입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대상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입 대상자 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재 20여 개 기관이 60여 개 의무보험을 관리하고 있어 각 기관에 가입 대상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1〉 참조).

6) 보험개발원(2006), 『의무보험의 현황과 과제』, CEO Report, 보험개발원.

7) 보험개발원(2006) 참조.

- 따라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의무보험 도입 시 가입대상자 관리 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강화
- 미가입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는 의무보험 법규 정비
 - 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도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무 가입 조항 삭제
 -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입 촉진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 정해진 규정이 없거나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천차만별인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는 의무보험들의 최소 보장한도를 손해배상책임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한도로 준용하는 방안 검토⁸⁾
- 중장기적으로 의무보험의 관리 효율을 높이고 피해자 보상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보험 관리 업무를 의무보험관리 기구 또는 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kiri**

〈표 1〉 의무보험 담당 기관 및 근거법

담당기관 (보험개수)	근거법	담당기관 (보험개수)	근거법
국토교통부 (12개)	1. 건설기술 관리법	행정자치부 (4개)	3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 건설산업 기본법		3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5. 유선 및 도선사업법
	4. 궤도운송법		36. 인감증명법 시행령
	5. 물류정책기본법	보건복지부 (3개)	37. 노인장기요양법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38. 사회복지사업법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9. 영·유아보육법
	8. 주택법(1)	여성가족부 (3개)	4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9. 주택법(2)		41. 청소년활동진흥법(1)
	10. 항공법		42. 청소년활동진흥법(2)
	11.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경찰청 (2개)	43. 도로교통법 시행령 (견인 등 대행법인)
	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4. 도로교통법 시행령 (운전학원)

8)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참조. 일본은 「민사고통상사고소송손해배상액산정기준」과 같이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액을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하고 있음. 법원행정처(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발간등록번호: 32-9740029-000079-14, pp. 397~398 참조.

담당기관 (보험개수)	근거법	담당기관 (보험개수)	근거법
산업통상 자원부 (6개)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정거래 위원회 (2개)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4. 도시가스사업법		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 대외무역법	기획재정부 (2개)	47. 관세사법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48. 세무사법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화체육 관광부 (2개)	49. 관광진흥법
	18.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50.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 과학부 (5개)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개)	51. 변호사법
	20. 우주손해배상법	해양경찰청 (2개)	52. 입목에 관한 법률
	21. 우주개발진흥법	고용노동부 교육부	53. 수상레저안전법
	22. 전자거래기본법		5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3. 전자서명법	방송통신 위원회	55.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5개)	24. 낚시관리 및 육성법	소방방재청	5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5. 선원법		
	26.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원자력안전 위원회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환경부	5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8. 해운법		59. 원자력손해배상법
금융위원회 (4개)	29. 공인회계사법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전자금융거래법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주: 보험개수가 없는 경우는 1개의 의무보험 담당.
자료: 손해보험협회.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공동 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을 취소해 달라면서 신한생명이 낸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한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이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설립된 작업반 운영과정에서 의견개진 및 정보교환과 같은 공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 향후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서울고등법원¹⁾은 지난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신한생명보험(원고)이 낸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신한생명보험의 청구를 받아들임.

● 앞서 2013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심결²⁾에서 이들 생명보험회사가 변액연금 보증수수료율을 공동책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 공정위는 보험회사들이 작업반, 실무과장회의, 상품담당부서장회의 등 수차례 모임 및 정보교환, 의사연락 등을 통해 2002년 8월 30일 경 변액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을 담합하였다고 함.

● 그러나 법원은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작업반 활동에서 이루어진 보험회사 간 의견개진 및 정보교환만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음.

1) 서울고등법원 2013누1180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2013-069호, 2013. 4. 4.

■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만들어진 작업반 등에서 이루어진 보험회사의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 등을 합의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일부 공동행위 가담 보험회사가 조사협조를 통해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담합 증거로 인정 않은 점 등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함.

● 본고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담합을 위한 합의와 조사협조를 포함한 자진신고의 증거능력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봄.

■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행위에는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이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서울고등법원은 보험회사가 작업반, 실무과장회의, 상품담당부서장회의 등에서 행한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을 가격 결정을 위한 “합의”로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 보험상품 심사과정을 통해 사실상 보험료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만들어진 작업반 활동에서의 의견개진 및 정보교환은 합법적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개발원 직원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았으며 단지 수수료율 산정 능력을 갖춘 일부 대형사의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보았음.

● 실무과장회의는 그 성격이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상품개발 시 유의사항을 통보하는 성격이 강한 회의이며 상품담당부서장회의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이 그동안 결정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회의이므로 작업반 활동과 별도로 합의한 정황으로 볼 수 없음.

●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의 외형상 일치는 보증수수료 산출이 가능한 일부 대형사의 가격을 하위 보험사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행태로 볼 수 있음.

■ 자진신고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조사협조자를 포함하여 작업반에 참석한 일부 회사 직원들이 합의를 인정한 진술을 했으나 그 반대되는 진술도 있음을 들어 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를 공동책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음.

- 이는 부당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와 조사협조³⁾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공정거래당국의 향후 담합 관련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면제해 주고 두 번째 자진신고나 조사협조의 경우 시정명령을 감경하고 과징금의 50%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조사협조자의 경우 이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담합의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면제와 감경을 받기 위하여 합의 사실을 인정할 경제적 유인이 있으며 이는 매출이 큰 대형사일수록 크다고 볼 수 있음.⁴⁾

■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적법한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라는데 그 의미가 크며,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원적 규제의 상충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공동행위 당시(2002년) 감독당국의 실질적 보험가격 통제가 가능했던 점 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작업반에서 대형사를 추종하여 책정된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의 외형상 일치를 보험회사 가격 합의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자체로도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의 이원적 규제 상충 완화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kiri](#)

3)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의하면 자진신고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조사 시작 이전에, 조사협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행위 조사 시작 이후에 해당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4)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됨(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2).



공유형 모기지 국내외 현황과 전망

박선영 연구위원

요약

■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주목받고 있음. 공유형 모기지는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 서민층 주택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취급된 주택지분 대출상품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유형 모기지가 본격 도입되었음.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주택구입에 부족한 일부 자금을 대출기관으로부터 시중보다 저금리로 대출받는 대신에 향후 주택매각시 가격 상승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주택지분 대출상품임. 국내 공유형 모기지 도입은 서민층의 주택 구매여력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되고 있음. 과거 영국 사례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대출기관의 과도한 수익공유로 인한 불완전 판매 민원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의 수익공유 제한폭을 설정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대출기관과 소비자가 공유한다는 인식을 판매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소비자 민원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구입 여력 확대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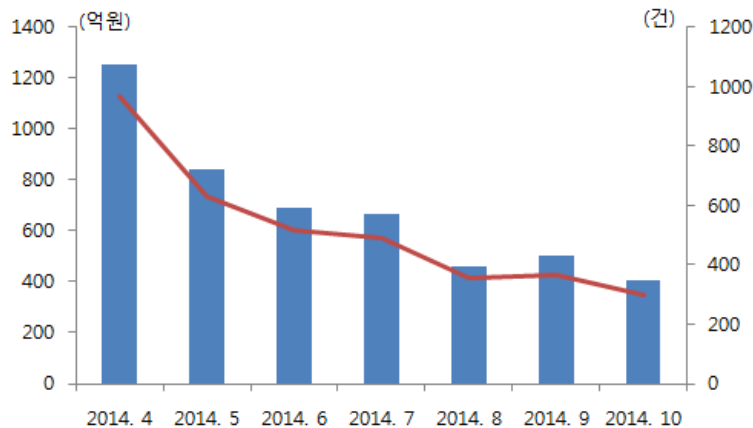
●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지원자금의 출처 및 성격에 따라 공익형과 사모형으로 나뉘며 대출기관과 차입자가 이익만을 공유하느냐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공유하느냐에 따라 각각 수익(收益)공유형과 손익(損益) 공유형으로 나뉨.

- 공유형 모기지는 차입자가 주택구입에 부족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에 대출받는 대신에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 따른 손익을 대출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임.
- 공유형 모기지는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 서민층의 주택구입 여력 확대를 위한 국가적 정책지원 형태로 활용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되었으나 현재로서는 도입단계에 불과함.

-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차입자는 1~2%대 저금리를 제공받는 대신에 대출기관과 주택상승(상승 및 하락)에 따른 수익(손익)을 공유함.
 -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소득제한규정이 있음.
 - 지원한도는 수익공유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 원 한도, 소득 4.5배), 손익 공유형의 경우 최대 40%(2억 원 한도, LTV 70% 이내, 소득 4.5배 이내)임.
-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2014년 4월 기준 1,250억 원(97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10월에는 404억 원(300건) 규모로 감소했음.

〈그림 1〉 우리나라 공유형 모기지 판매실적 추이



자료: 각종 언론보도 종합.

- 영국과 호주에서는 일찍부터 공유형 모기지 시장이 형성되어 온 반면에 미국에서는 2000년 초반 주택가격 상승기에 공유형 모기지가 인기를 끌었다가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채무조정의 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영국의 주택지분 대출상품 시장은 4억 7,300만 파운드 규모로 전년대비 12% 이상 성장세를 보여 왔음.
 - 영국 캠브리지 대학 주택개발연구소(Cambridge Centre for Housing & Planning Research, CCHP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주택지분 대출상품은 2012년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 판매건수의 2.2%, 판매금액으로 0.6%를 차지함.

- 미국 정부는 대출기관들이 채무조정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한 가계대출의 원금 일부를 탕감해 주는 대신에 미래 주택가격 상승 시 매각차익의 일정 부분을 대출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¹⁾
 - 납세자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면서 대출기관에게 채무 삭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방식이 활용됨.

〈표 1〉 공유형 모기지 유형과 특징

유 형	특징	국가별 상품
공공지원 보조금 지원방식	• 저소득계층 지원책의 일환으로 정부 보조금 지급액 만큼 주택구매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 • 향후 주택을 되팔 때에도 시장가격이 아닌 사전에 합의된 가격에 매각해야 함(통상 중간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인상분 반영) • 인구밀도가 높거나 고용문제 때문에 임대료 및 주거비 통제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적용	• Community Land Trust, Limited Equity Cooperative, Deed-Restricted Home(미국)
공공지원 수익공유형 모기지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차입자에게 전체 주택구입가의 일정부분 대출을 지원 • 차입자는 집을 매각할 때 대출원금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분을 대출기관의 지분만큼 계산해 대출원금에 더해 되갚는 방식 • 주택시장의 경기상황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음	• “Shared Appreciation Mortgage”(미국, 영국) •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한국)
공공지원 손익공유형 모기지	•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 발달 •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에 전체 주택가격의 25%의 지분을 대출기관에게 양도 • 차입자는 대출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금을 되갚고 지분을 재매입할 수 있음 • 차입자 입장에서 주택구매시 현금유동성 제약을 보완할 수 있고 대출기관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공유할 수 있음 • 정책지원 성격이 강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주로 공급됨	• “Homebuy”(영국) • “Goodstart Shared Equity”(호주)
사적 수익공유형 모기지	• 공공기관이 배제되고 민영에서 자금지원 • 보조금이 차입자에게 대출지원이나 주택지분의 현금화 방식으로 부과됨 • 차입자는 집을 매각할 때 상승한 주택가격을 현금화해 이를 되갚는 방식	• “The Affordable Home Account(AHA)”(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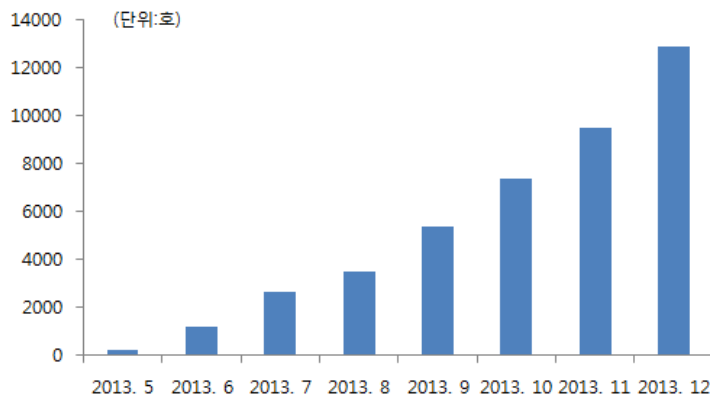
자료: Center for Housing Policy, “What's in a Name? Clarifying the Difference Forms and Policy Objectives of “Shared Equity” and “Shared Appreciation” Homeownership Programs”.

1) John Griffith and Jordan Eizenga(2012), “Sharing the Pain and Gain in the Housing Market”,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pp. 1~31.

■ 영국에서는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기존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해 2013년에 한시적으로 “Help to Buy 제도”를 도입함.

- 주택구입자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분대출(equity loan)과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주택금융보증(mortgage guarantee)으로 구분됨.
 - 매매가격 60만 파운드 이하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차입자에 대한 소득제한은 없음.
 - 차입자는 신규주택 구입가격의 최소 5%, 정부는 최대 20%, 대출기관은 75%를 부담하며 지분대출 후 최초 5년간은 무이자, 6년차에는 지원금액 잔여분의 1.75%를 이자로 지급함.
 - 지분대출 실적은 2013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말 현재 1만 2,875가구가 지분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함.

〈그림 2〉 영국의 지분대출 실적 추이



자료: 강종만(2014), 『영국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제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4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p. 17.

■ 과거 영국에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판매하면서 대출기관이 과도한 수익공유를 요구해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음.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²⁾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³⁾ 일부 상품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분의 최대 75%까지 대출기관이 회수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유인했다는 민원이 쇄도해 집단 소송 사태로까지 번짐.⁴⁾

2) Financial Times(2009. 1. 24), “Banks face suit over ‘unfair’ mortgages”.

3) 영국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기관이 차입자에게 20년 이상 장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에 대출만기 시점에 주택 가격 상승분을 대출기관과 차입자가 최초 대출시점의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공유하도록 설계됨.

- 영국에서 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한 한 차입자의 경우 1990년대 말 대출기관 차입금 75%, 자기 자본 25%로 66,000파운드(한화 1억 1,8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 뒤 주택가격이 199,700파운드(한화 3억6,000만 원)까지 올랐음.
- 이 차입자는 2007년 해당 주택을 매각하면서 대출기관이 대출원금과 수익공유분을 통틀어 15만 파운드(한화 2억 7,000만 원)를 회수한 뒤 남은 돈으로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됐으며 민원을 제기했음.

■ 공유형 모기지가 활성화될 경우 서민층의 주택구매 여력 확대로 인해 전·월세난 해소에도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영국과 같은 소비자 민원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제한폭을 설정하고 대출기관의 수익공유분이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책을 강구해야 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공유 측면을 소비자들에게 잘 인지시켜 판매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민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주택지분 대출시장⁵⁾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처럼 국내 보험회사들이 만기가 20년 이상인 주택지분 대출상품을 듀레이션 매칭에 활용한다면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Towers Watson⁶⁾은 주택지분 대출상품의 경우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은행이 판매를 담당하고 대신에 보험회사가 주택지분 대출상품의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하이브리드형 사업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음. [kiri](#)

4)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세를 감안하면 대출기관의 지분은 이 기간 동안 평균 4.4배 이상 늘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연환산 이자비용은 연평균 35~40%에 달함.

5) 영국에서는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Home equity release club”에 가입해 평생주택담보대출(Lifetime mortgage)을 제공하고 있음. 참여기관으로는 영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인 Aviva, Bridgewater, Hodge Lifetime, Just Retirement, More 2 Life, New Life, Partnership, Retirement Plus and Stonehaven 등이 있음.

6) Towers Watson(2013), “Equity Release: Accessing Housing Wealth In Retirement”, p. 17~18.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상우 수석연구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요약

■ OECD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인 인구고령화와 세계경제 침체가 결합되면서 연금제도가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유럽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특징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됨. OECD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기간 상향 조정 등의 정책과 더불어,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정책 등을 제시함. 향후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재정 불안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사연금제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OECD는 회원국 연금제도 동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한 ‘2014년 연금전망(이하 OECD)¹⁾’을 12월 8일 발표함.

- OECD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재정의 고갈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제도가 세계경제 침체와 인구고령화가 결합되면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특히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구조가 정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연금제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상당수 국가에서 적극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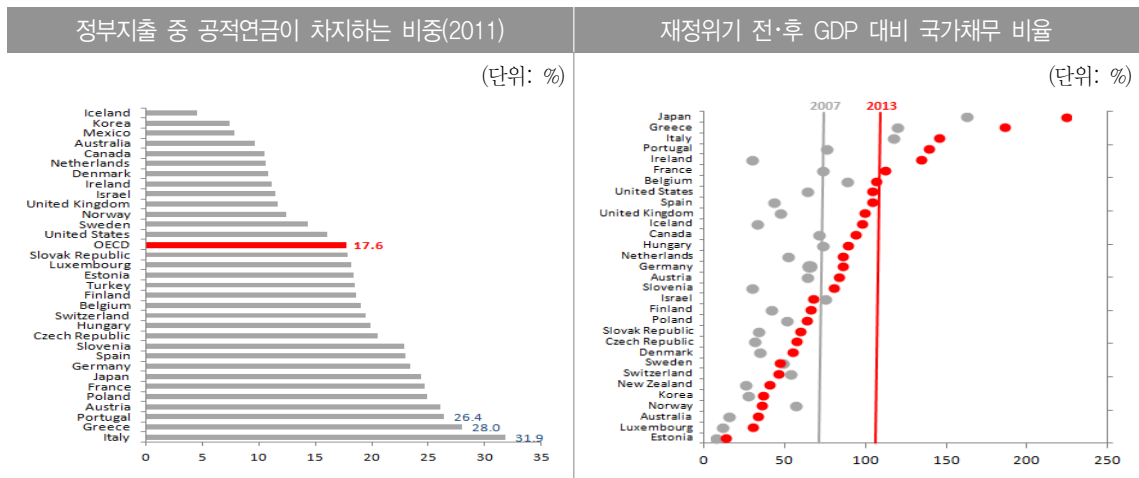
■ OECD 주요국들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복지관련 지출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재정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차입을 통한 추가적 연금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은 평균 17.6%에 이르고, 특히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와 국가재정이 불안한 일본 등에서는 20%를 상회하고 있음.

1) OECD Pensions Outlook 2014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유럽 재정위기 전 73.3%(2007)에서 이후 109.5%(2013)로 36.2%p 급증하였으며, 특히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60%p 이상 증가함.
- 이에 OECD는 이들 국가에 대해 국채발행 등 무리한 정부차입을 통한 과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끊고 재정안정과 국가부채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정책의 추진을 권고함.

〈그림 1〉 정부지출 중 공적연금의 비중 및 국가채무비율 현황



자료: OECD Pensions Outlook 2014.

■ 유럽재정 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개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함.
- 공적연금 개혁은 주로 연금수급연령 상향, 연금급여 삭감, 자동조정장치 도입²⁾, 근로유인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표 1〉 참조).
-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자동가입제도 도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투자규제 개선, 연금관리비용 절감 정책 등이 추진됨(〈표 1〉 참조).

2) 인구고령화와 경제적 변화를 연금급여나 수급연령에 자동으로 연계시키는 장치임.

〈표 1〉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정책동향 요약(2012~2014)

구 분	재정건전성: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은퇴소득의 적정성: 급부 개선
보장범위	-	-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신규 급여 도입 - 프랑스,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 자동가입제도 - 칠레, 영국, 아일랜드, 터키, 룩셈부르크 - 사적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연기금 투자 다각화 및 안정성	-	- 투자자 선택권 강화 -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영국 - 연기금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연금급부	- 급여액 삭감 - 그리스, 포르투갈	-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혜택 강화 -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 DC형 제도의 보험요율 인상 - 뉴질랜드, 이스라엘, 영국
연금세제 및 보험요율	- 연금소득세 인상 - 호주, 프랑스, 포르투갈 - DB형 보험요율 인상 -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 세율 인하 - 스웨덴, 미국, 일본, 멕시코, 폴란드
연금액 연동장치 (Indexation)	- 급여액연동과 연금재정을 고려한 자동조정 장치 - 체코,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 장기 연금액 연동 축소 -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조합하여 연금액 조정
근로유인 강화	- 남성과 여성의 은퇴연령 동일화(상향조정) -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 은퇴연령 상향조정 - 캐나다, 아일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호주 - 보험료 최소 납입기간 상향조정 - 프랑스, 룩셈부르크 - 조기은퇴 제한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
제도운영 효율성	- 관리조직 통합을 통한 비용 감축 - 덴마크, 그리스, 일본, 캐나다	- DC형 연금의 수수료 인하 - 칠레, 호주, 영국 -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공시 -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자료: OECD Pensions Outlook 2014 요약.

■ OECD는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OECD가 제시한 연금개혁 목표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것임.
- 이에 따라, OECD는 향후 연금개혁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 첫째, 근로기간의 연장,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보험요율 인상 등의 정책 추진

- OECD는 조기퇴직 억제, 정년연장, 퇴직 후 재취업 등 소득활동 연장을 통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상향조정이나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 등이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함.
 - 이를 위해 정년연장, 취업연령 차별 폐지, 취업조건 개선, 재교육 기회 확대 등의 노동정책이 동반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둘째, 평균수명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장수리스크 관리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³⁾

- 가입자의 평균수명 증가 추세를 연금제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생명표의 조기 개정 등이 요구되며, 장수리스크 헤지 기법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함.
 - 예를 들어,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수채권 발행, 관련 상품의 가격 또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수 개발 및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 셋째, 강제가입 또는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 사적연금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가입 의무화나 자동가입제도 도입⁴⁾ 등 사적연금 접근성 강화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OECD는 사적연금제도에서 자동가입을 실시하고 있는 6개국 경우, 자동가입제도가 사적연금 가입률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함.

3) OECD는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 추세를 연금정책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연금 책임준비금이 10% 이상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OECD Pensions Outlook 2014, p. 37).

4) 자동가입제도(automatic enrolment schemes)는 근로자가 가입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동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사업주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이직 시 새로운 직장에서 가입한 연금제도로 자동이전되는 연금가입방식임.

〈표 2〉 국가별 자동가입제도 도입 전·후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구 분	캐나다 (2000)	미국 (2006)	이태리 (2007)	뉴질랜드 (2007)	칠레 (2013)	영국 (2013)
도입 전	—	27.5%	8.5%	15.8%	77.5%	46.5%
도입 후(2013)	21.5%	29.4%	15.9%	64.4%	78.9%	49.8%

주: 생산활동 인구대비 사적연금(미국은 401k, 영국은 퇴직연금 기준) 가입률.
 자료: OECD Pensions Outlook 2014.

- 또한, 저소득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 강화, 연금제도 운영비용 절감,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분담 비율 설정 등이 필요함.

■ 이러한 OECD국가의 연금개혁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사연금제도 간 유기적 역할분담체계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공·사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정립,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고령자의 소득활동 유인, 비효율적인 공적연금의 부담체계 개선, 사적연금 가입률 확대 정책 등이 필요함.
- 공적연금의 역할 조정에 따라 노후소득 확보가 불안한 중산층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의 가입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금·퇴직연금의 이원화 퇴직급여체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여 가입이 미진한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저소득층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과 연금관리 비용 절감 등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요구됨. **키리**

4. 거시금융 및 기타

- | | |
|-------------------------------------|---------|
| 1.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요인과 시사점 | 최 원 채원영 |
| 2.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의 배경과 영향 | 박선영 |
| 3.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 윤성훈 |
| 4. 국내 금융업권간 인수합병 추진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 최 원 |
| 5. 국가간 개인정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 | 이아름 |
| 6. 잠재성장률 제고와 금융의 역할 | 채원영 |
| 7. 최근 금융정책 변화와 시사점 | 이태열 이성은 |
| 8. 일본 경제 장기부진의 시사점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윤성훈 |
| 9.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 | 황인장 |
| 10.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논의와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검토 | 전용식 이해은 |
| 11.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소고 | 윤성훈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요인과 시사점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

요약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Global Risks 2014’ 보고서는 31개의 글로벌 위험요인 가운데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소득불균형 심화를, 그리고 발생 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으로 주요국 재정위기를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 수준이 비교적 높아졌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도 글로벌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함. 또한 늘어나는 빈곤층 복지 수요 충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공·사 부문의 효율적인 역할제고 방안이 필요함.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¹⁾ 개최에 앞서 발표된 ‘Global Risks 2014²⁾’ 보고서에서는 향후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31개의 글로벌 위험요인을 제시함.

- 개별 위험요인 가운데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는 심각한 소득불균형 문제가 제시되었으며 구조적 고실업 문제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함.
- 주요국 재정위기 문제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으로 선정됨.

■ 소득불균형 심화는 사회적 갈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경제시스템의 불안정 등을 초래하여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소득불균형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1) 정·재계, 언론계, 그리고 학계 등 글로벌 리더들이 세계적인 현안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포럼을 말하며, 1971년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주최한 유럽인 경영심포지엄에서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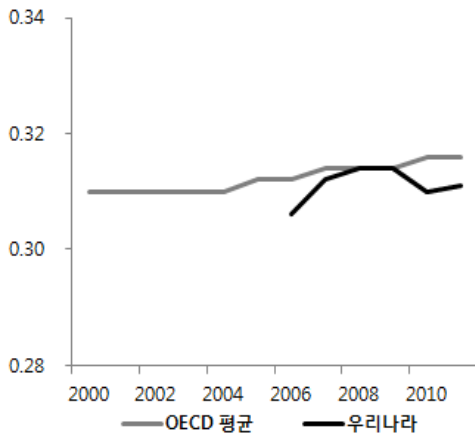
2) 각 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발표함.

- OECD는 금융위기 직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빈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음.³⁾

■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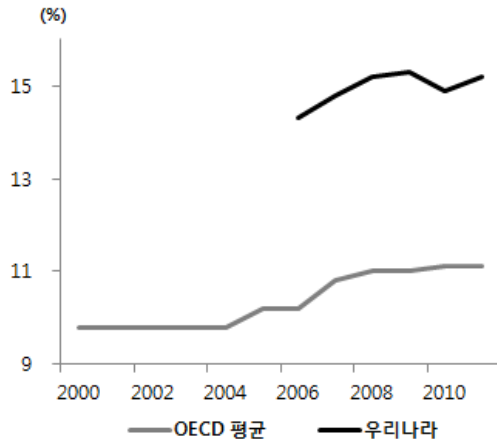
-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니계수⁴⁾는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율⁵⁾은 OECD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그림 1〉 OECD의 지니계수 비교



자료: OECD.

〈그림 2〉 OECD의 상대적 빈곤율 비교



자료: OECD.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지니계수는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빈곤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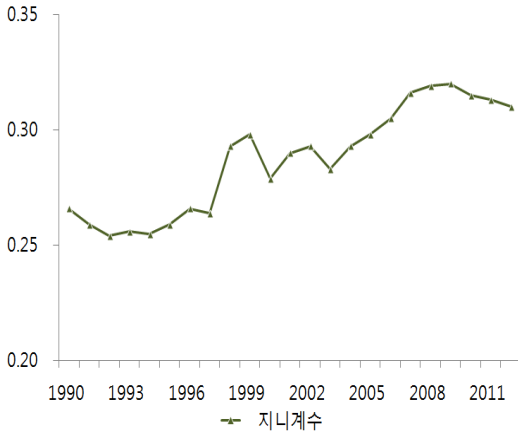
3) OECD(2013),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4)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불균형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5)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의 인구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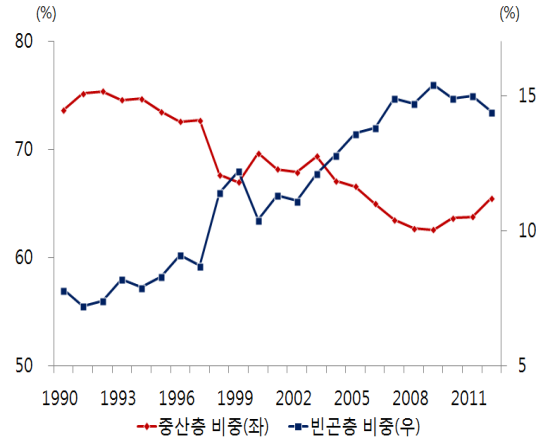
6)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 미만 계층을,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을 의미하며, 통계청 자료를 참조함.

〈그림 3〉 우리나라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근로자)



자료: 통계청.

〈그림 4〉 우리나라 중산층/빈곤층 비중(2인 이상 도시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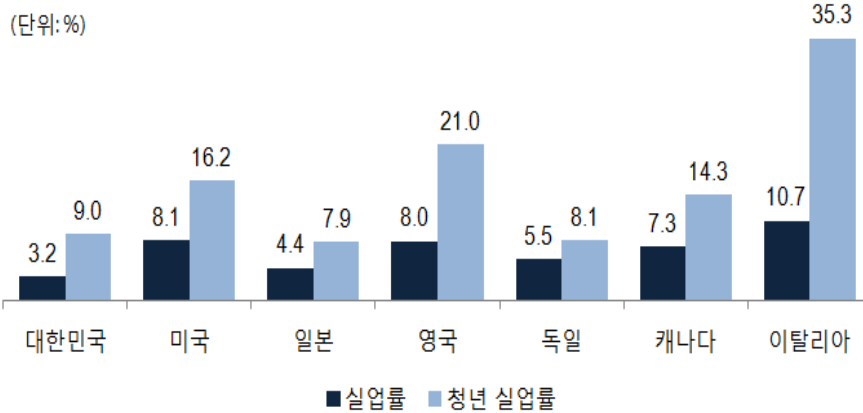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실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충분한 고용 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경기회복세는 소득불균형 확대로 인한 사회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2013년 전 세계 실업자 수가 2012년보다 500만 명 증가한 2억 2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2억 1,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2014년 전 세계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보다 0.6%p 높은 수준인 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향후 5년 동안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전 세계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중 확대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가 세계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꼽힘.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실업률은 2012년 기준 3.2%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0%로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5〉 주요국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비교(2012년 기준)



자료: Bloomberg, OECD.

■ 한편, 선진국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주요국 재정위기를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제기하고 있음.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0%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국가채무 규모 축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함.⁷⁾
- 미국과 일본의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105.9%, 243.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이후 국가채무 규모의 축소 방안이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추정되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5%로 높게 나타남.
 - － 일부 전문가들은 4대 연기금 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⁸⁾할 경우 현재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함.
- 향후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7)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12년 기준으로 발표된 추정치를 참고함.

8) 국제통화기금(IMF)은 확정채무만을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음.

〈표 1〉 주요국 국가채무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2013년 ¹⁾)	35.7	105.9	243.5	80.3	93.4	132.2	93.7	175.7
연평균 증가율 (2000~2012년)	12.5	9.8	3.9	4.9	6.9	3.6	7.4	6.6

주: 1)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된 추정치를 사용함.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 우리나라도 글로벌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글로벌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불균형 개선과 재정효율화를 모색해야 함.

-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여건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거시정책 마련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 노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한편,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공·사 부문의 효율적인 역할제고 방안이 필요함.

- 빈곤층 확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는 반드시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복지 지원은 지양해야 함.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시스템 내에서 늘어난 빈곤층에 대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험산업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kiri](#)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의 배경과 영향

박선영 연구위원

요약

■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가계대출 부실 등 금융권의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전·월세 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 이 같은 배경에는 주택가격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매매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임대시장의 수급 및 가격구조의 왜곡 현상이 있음. 또한 임대주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품귀현상이 일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고, 월세의 세액공제 전환과 공공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및 세제혜택 지원 등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음.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임대주들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월세소득 노출로 인해 늘어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경우 오히려 월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보험회사들은 정부가 민간 투자자들의 공공임대 주택시장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 진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단, 가계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임대차 시장의 잠재부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관리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국제통화기금 IMF가 2013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금융권의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전세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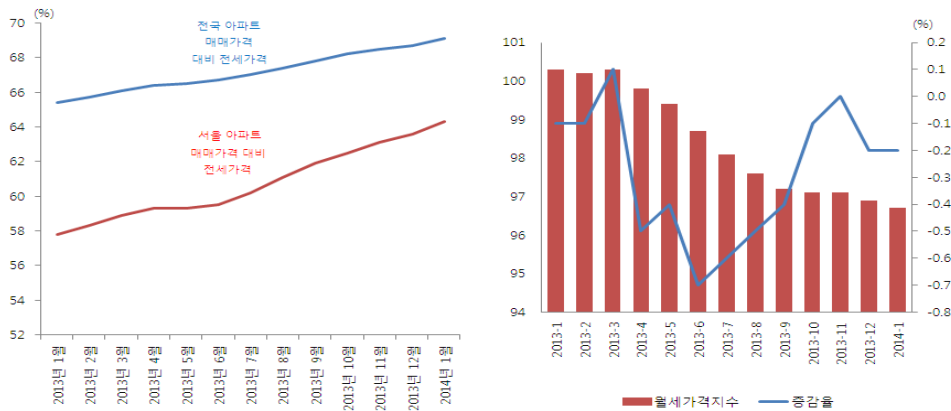
● 과거 임대주들이 전세금 투자를 통해 이윤확보가 용이했던 고금리 환경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세제도의 장점은 사라지고 임대차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 최근 전·월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였고 월세가격도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여 왔음.

1) 조선일보(2014. 2. 11), “IMF, 한국 부채 위험한 수준, 월세로 바뀌라 경고” 경제종합면 인용함.

-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3년 1월 65.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4년 1월 현재 69.1%로 70%에 육박하고 있음.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주택가격의 추세적인 변화를 확인한 뒤 실제 매매에 나서겠다는 수요자들의 대기심리 확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임.
- 월세가격지수도 지난 2012년 6월 100을 기준으로 2013년 1월 100.3에서 6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상승세로 반전, 지난해 11월까지 전월대비 상승세를 기록했음.

〈그림 1〉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그림 좌) 와 월세가격지수(그림 우) 추이



주: 월세가격지수는 2012. 6=100 기준.
 자료: 국가통계정보(<http://www.kosis.or.kr>).

■ 선행연구²⁾에 따르면 최근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자산시장의 가격균형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

- 부동산 소유에 따른 매기의 수익을 임대료와 자본이득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일정한 비율의 전월세 전환율(f), 즉 $R = f \cdot D$ (R : 임대료, f : 전월세 전환율, D : 전세가격)라 가정하면 부동산 매매가격(P) 대비 전세가격(D)의 비율은 아래의 수식과 같음.³⁾

$$\frac{D}{P} = -\frac{(1-g-c)}{f} \cdot E\left[\frac{\Delta P}{P}\right] + \frac{(b+m+r+a)}{f}$$

(a: 부동산 투자 위험프리미엄, g: 자본이득과세 실효세율, b: 보유과세 실효세율,
 c: 거래세율, m: 가격대비 유지보수비 비율)

2) 손재영(2001), 「전월세 시장의 변화와 임차가구의 주거안정대책」, 『주택』 제 70호, 주택은행.
 임정호(2006), 「주택매매시장, 전세시장 및 월세시장 간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 14권 1호, pp. 165-193.
 3) 임정호(2006), 「주택매매시장, 전세시장 및 월세시장 간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 14권 1호, p. 169 인용함.

- 위의 수식에 따라 부동산 매매가격 대비 부동산 가격상승률에 대한 기대값($E\left[\frac{\Delta P}{P}\right]$)이 낮을수록, 즉 소비심리 위축과 부동산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frac{D}{P}$)은 상승함.

■ 최근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도 이같이 왜곡된 전세시장의 가격구조 개선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세수요를 매매 수요로 흡수하고 임대시장을 월세시장 위주로 재편하는데 목표가 있음.

- 이번 정책발표의 주요 골자는 첫째, 월세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둘째,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위한 규제완화 및 폐지 그리고 셋째, 준(準)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표 1〉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주요항목	현행	개선안
월세 세액공제 전환	• 총급여 5,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월세지급액 중 60%를 소득공제(한도 500만 원)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	• 월세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2주택자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총급여 7,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 단, 월세소득 2,000만 원 이하 2주택자는 월세 소득과세 2016년부터 시행 • 2016년부터는 2주택자 전세 소득에도 과세
임대주택 공급확대	• 임대주택법 제 2조 및 부칙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 한해 준(準)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3년 4월 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準)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매매임대주택을 준(準)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 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準)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준(準) 공공 임대주택 세제 지원 강화	• 재산세 감면율 현행 60㎡이하 50%, 현행 85㎡ 이하 25%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현행 20%	•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시 준(準)공공임대로 활용 시 양도세 면제 조항 신규적용 • 재산세 감면율 60㎡이하 75%, 85㎡이하 50%로 확대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30%로 확대

주: 준(準)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의무 임대기간 10년을 지켜야 하는 임대주택을 말함.

자료: 1) 국토교통부 외 5개 부처 합동 간담회 보도자료(2014. 2. 26),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을 재정리함.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3. 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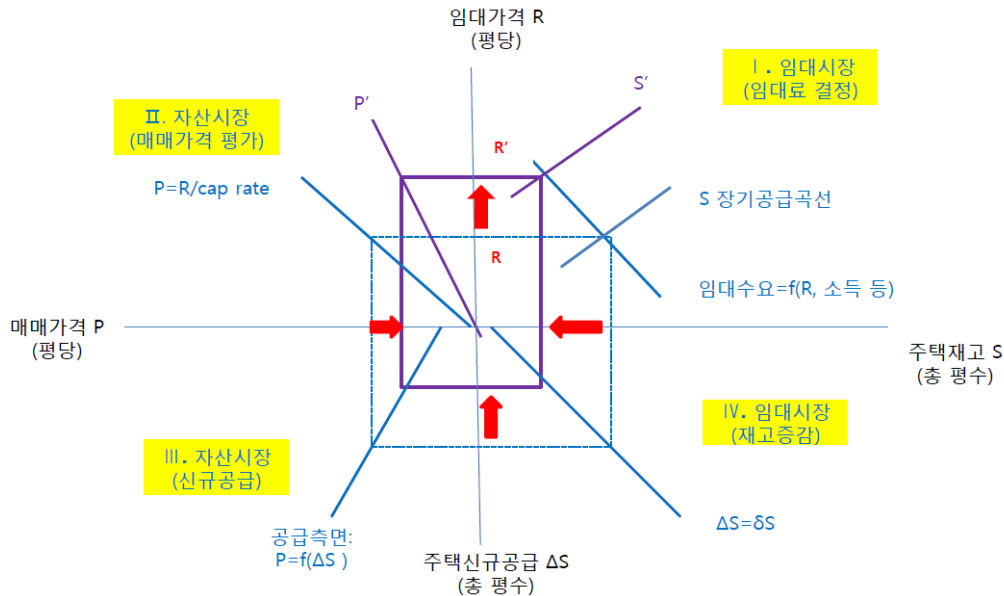
■ 이번 정부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의 세액공제 전환인데, 이 경우 그동안 소득에 잡히지 않던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음.

● 임대주들의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효과는 DiPasquale-Wheaton의 4분면 모형⁴⁾으로 분석이 가능함.

- 4분면 모형은 임대시장의 부동산 자산가격이 매매 시장의 자산가격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산가격 균형결정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음.
- 임대주는 세금증가분을 기대수익에 반영해 이를 보전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투자 기대이익률(cap rate)이 상승하여 Ⅱ사분면의 직선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함.
- 이와 함께 Ⅰ사분면에 표시한 장기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할 경우, 즉 각 임대료 수준에서 장기적인 주택재고물량이 줄어들 경우 그림에서 임대료는 R 에서 R' 로 이동, 즉 새로운 균형점을 통해 임대료는 상승하고 주택재고는 감소하게 됨.
- Ⅲ 사분면에서는 신규주택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Ⅳ사분면에서는 각 임대료 기준 주택재고량이 감소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박스플롯(box-plot)은 위쪽으로 상향 이동하는 결과를 보임.

4) 김경환(2004)에 따르면 제1사분면은 주택임대시장의 수급균형을 반영하는데, 주택재고에서 나오는 주택서비스의 양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 임대가격이 결정됨. 제Ⅱ사분면에서는 임대가격으로부터 매매가격이 결정되며 임대료를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 즉, capitalization rate(cap rate)는 투자자들의 주택보유에 따른 요구 수익률로 해석할 수 있음. 제Ⅲ사분면은 매매가격과 주택신규공급량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기울기는 신규주택(평수 기준)을 건설할 경우의 생산비용(replacement cost)을 의미함. 제Ⅳ사분면은 신규 공급량과 기존 주택 재고증감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기존 주택재고의 변동은 신규공급에서 기존 주택의 감가상각분을 뺀 것과 같음.

〈그림 1〉 DiPasquale-Wheaton 4분면 모형



자료: 1) Geltner et al.(2006), "Commercial Real Estate Analysis & Investments" pp. 25-33 재구성함.
2) 김경환(2004),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 pp. 4-5 재구성함.

■ 한편 임대주들이 월세소득 과세 증가분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월세가 상승하고 각 월세기준 주택재고량이 감소하게 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임대주택 신규공급을 확대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주택 기금과 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임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기로 함.
 -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연기금, 보험사 등 금융기관 참여하에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키로 했음.
- 보험회사들은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공공임대 리츠에 간접투자 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음.
 - 단, 현재 가계 신용도가 우려할 수준인 만큼 보험회사들이 임대리츠에 투자 시 임대차 시장의 잠재부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 시장에 대한 위험관리를 병행해야 함. [kiri](#)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 비트코인에 대한 Krugman의 비판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Krugman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 그 이유는 화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첫째, 비트코인은 금 본위제도 하에서 나타난 문제점(통화 가치 변동성 확대,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그대로 갖고 있음. 둘째, 금과 같은 실물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 가치는 참여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어 이러한 신뢰가 하락할 경우 IT 버블붕괴와 같은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0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화폐 대용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Krugman의 비판을 계기로 비트코인(Bacterin)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같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으며, 온라인 코드에 불과함.

– 비트코인은 수학문제를 풀면 이에 대한 대가로 얻게 되는데, 이처럼 비트코인을 얻는 과정을 채굴(mining)이라 불림.

– 수학 문제를 풀어서 총 2,100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등 비트코인 총량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13년 8월까지 1,200만 비트코인이 채굴된 것으로 알려짐.

–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타나 거래소까지 생겼으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 중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정부 세금, 규제 등과 관련한 불신이 비트코인 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 Paul Krugman은 New York Times(2013. 12. 28) 기고에서 비트코인은 ‘Evil’이라며 화폐의 3대 기능* 중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화폐는 거래수단(mediums of exchange), 가치저장 수단(store of value), 회계단위(unit of

account) 등 3대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가치저장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가치는 불안정하다는 것임.

●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이 Krugman의 주장처럼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금, 은 등 귀금속이 화폐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이들을 평소에 보관하고 또 거래에 직접 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금의 가치에 연동된 화폐가 발행되고 거래에 사용되었는데, 이를 금본위제도 또는 금태환제도라 함.

● 화폐의 가치는 금 자체의 가치 및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금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금의 양이 많아지면 경제가 부유해진다는 중상주의가 당시의 패러다임이었음.

■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를 금 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화폐와 금의 교환(태환)이 어려워지게 되자 금본위제도가 포기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불태환 통화제도로 이행하게 됨.

● 금본위제도의 단점은 첫째, 화폐가치가 금 자체의 가치와 금 공급에 의해 변동함에 따라 안정되기 어려웠음.

● 둘째,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화폐 수요는 늘어나지만 금 공급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게 되면 금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화폐 사용을 억제하여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키게 됨.

– 그렇다고 경제가 보유한 금의 총량 이상으로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금본위제도가 유지될 수 없게 됨.

■ 금본위제도하에서 화폐 가치는 기본적으로 금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불태환 통화제도에서 화폐 가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세권(재정 건전성)에 의해 결정됨.

●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통화는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통화(화폐) 가치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으로 정부국채를 보유함.

-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걷을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부채인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B/S와 중앙은행의 B/S를 연결하면 결과적으로 통화(화폐) 가치는 조세권에 의해 지지됨(〈그림 1〉 참조).
 - 재정 건전성이 의심될 정도로 정부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화 가치도 하락하게 됨.
 -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경우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으며, 중남미에서 나타난 높은 인플레이션 역시 포퓰리즘에 의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임.

〈그림 1〉 정부 및 중앙은행 연결 B/S와 통화 가치

정부 B/S		중앙은행 B/S		연결 B/S	
조세권	국채	국채	통화	조세권	통화

- 가상화폐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화폐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며, 온라인 거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신뢰에 기반하여 화폐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금과 같은 실물 화폐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 총량이 고정되어 있어 비트코인은 거래수단이기 보다는 투자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참여자들이 주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물론 비트코인으로 화폐가 대부분 대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 금의 경우 화폐로서 기능이 없어지더라도 금 자체의 가치를 갖고 있으나, 비트코인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경우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금과 같은 실물 화폐의 경우보다 더 위험한 문제(예를 들면 IT 버블 붕괴)를 야기할 수 있음.

- 화폐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나,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네트워크 참여자, 편리한 거래수단 등이 결합되어 있어 이의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움. [kiri](#)



국내 금융업권간 인수합병 추진현황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최 원 선임연구원

요약

■ 최근 국내 금융산업에 인수·합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 검토,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참여 등은 은행과 보험업간의 업권간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이와 같은 업권간 인수합병은 시너지 제고, 수익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과 보험업의 분리 추세에 비춰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업권간 인수합병이 업권간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여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LI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LIG그룹은 2013년 11월 19일 보유 중인 LIG손해보험 지분 약 21%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공시함.
 - LI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 피해액이 약 2,1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1,300억 원의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분 매각을 결정함.
- 에르고다움다이렉트손해보험 대주주인 악사그룹은 보유 중인 에르고다움다이렉트손해보험 지분 100% 가운데 85%(약 100억 원) 가량을 BNP파리바그룹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¹⁾
 - 또한, BNP파리바그룹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생명에 에르고다움다이렉트손해보험 지분 15%를 18억 원 가량에 다시 매각할 것으로 예상됨.
- 교보생명이 보험회사 최초로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이 손해보험회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금융그룹의 수익성 둔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임.

1) 한국경제(2014. 3. 5), “BNP파리바, 에르고다움 인수”.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의 수익성 둔화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국내 은행의 2013년 총자산이익률(ROA)은 0.22%로 전년의 0.47%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2013년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82%로 전년대비 3.37%p 하락하였음.
 - 반면 손해보험산업의 FY2013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4%, 9.2%로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은행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 LIG손해보험은 약 19조 8,000억 원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 전체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4위로 인수기업 결정에 따라 시장점유율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²⁾
 - KB금융 이외에도 동양생명, 롯데그룹, 메리츠금융 등이 잠재 인수 후보이며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예상매각 가격은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임.³⁾
-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은행의 자금 이탈, 수익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은행중심의 금융그룹들의 손해보험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LIG 손해보험의 수익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	2012. 9	2013. 9
보험영업이익	-1,404	-2,737	-1,009	-2,392	-770	-1,204
투자영업이익	3,586	4,027	4,406	4,711	2,560	2,721
당기순이익	1,483	727	2,090	1,644	1,324	1,030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의 손해보험회사 인수가 가시화되더라도 금융그룹의 수익성 개선과 은행업과 보험업 겸업의 시너지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음.

- 씨티은행과 트레블러스보험의 합병과 분리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은행과 보험겸업의 미미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씨티은행(Citicorp)이 손해보험그룹인 트레블러스그룹을 인수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합병된 씨티그룹의 비용과 이익증가율은 경쟁사인 JPMorganChase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 영업비용 증가율은 씨티그룹 19.2%, JPMorganChase 4.2%인 반면 영업이익증가율의 경우

2) 2013년 12월 말 기준임.

3) 한국경제(2014. 3. 20), “MBK, ING생명 이어 LIG손보 인수전 뛰어든다”.

씨티그룹 7.9%, JPMorganChase 19.2%로 나타났다.⁴⁾

– 대등합병에 의한 트레블러스그룹과 씨티은행 경영진의 갈등으로 합병 시너지는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이후 사업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HSBC의 경우 영국, 아일랜드, 아시아 지역의 보험사업 매각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바젤III 등 은행의 보험업 겸영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⁵⁾

● 보험산업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와 회계제도 개편 등으로 보험산업의 자본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음.

■ 반면 영국의 Royal Bank of Scotland 그룹은 자회사인 손해보험사업인 Direct Line Insurance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사례임.

●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직전인 2008년 기준으로 그룹 수익의 21%를 보험사업이 차지하고 있었음.⁶⁾

– RBS그룹의 보험사업은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업이 중심이었으며 RBS그룹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455억 파운드를 지원받았음.

–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 원인은 ABN-AMRO 인수 후 공격적인 대출영업, 거액대출, 부동산대출의 부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공적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보험사업 지분의 일부를 시장에 매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2008년 자본수익률(ROE)이 18.3%에 이르는 보험사업의 높은 수익성 때문임.

– 1985년 창업한 혁신적 자동차보험회사인 Direct Line Insurance의 창업자금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한 RBS그룹은 2003년 손해보험회사인 Churchill을 인수하며 손해보험사업을 확대하였음.⁷⁾

■ 업권간 인수합병은 업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함.

● 씨티그룹의 사례와 RBS그룹의 사례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사업통합이 인수합병 효과를 제고하는데

4) 딜로이트(2011. 3), 「위기이후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성장전략」.

5) 전용식·윤성훈(2013),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6) European Commission(2009. 12).

7) Direct Line은 1985년 종업원 63명으로 시작한 영국의 자동차보험회사임.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 방법을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화영업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을 높인 보험회사로 평가됨. 2003년 RBS그룹이 Churchill사를 인수했을 당시 RBS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혁신적인 언더라이팅 기법으로 1985년 사업을 시작한 Direct Line, 키오스크를 통한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정방식을 1996년에 도입한 Churchill 등은 혁신을 통해 보험업의 수익성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되고 이러한 문화가 지속된 것으로 보임.
- 반면 경영진의 갈등으로 인수합병의 시너지효과가 미약해진 씨티그룹의 사례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이질성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음.
- 금융산업의 겸업화, 다각화가 경기순환에 따라 유행처럼 반복되지 않고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권간 사업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은행업과 보험업 겸영 등 금융산업의 다각화(Diversification)는 경기순환에 따라 강화와 약화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업구조 단순화, Back to Basic 등이 확산되고 있음.
 -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금융업 다각화 추세가 둔화되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북미와 서유럽에서 금융그룹의 Back to Basic 움직임이 있었음.⁸⁾
 - Back to Basic이 강조된 원인은 다각화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Too Big To Manage), 미미한 시너지 효과, 문화적 갈등 등임. [kiri](#)

8) Rogers·David(1999), 「The Big Four British Banks」.



국가간 개인정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

이아름 연구원

요약

■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한-미 FTA·한-EU FTA 발효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고객정보의 해외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독과 고객정보 유출 시 대응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제기됨. 또한 국가간 정보이전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들은 개인범죄 차원을 넘어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당사국들 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마련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양국간 협력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함.

■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와 한-EU FTA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¹⁾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유럽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고객정보 공유와 해외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그 동안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²⁾ 한-미·한-EU FTA의 본격 시행으로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이 가능해짐.

● 해외 소재 금융정보처리기관에서 국내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내 감독당국의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발생 통지와 유출정보 회수 및 폐기 등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3개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도 해당 금융기관들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로 이전된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1) 한-미 FTA는 2년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4년 3월 15일부터, 한-EU FTA는 2013년 7월 1일부터 한-미, 한-EU 상호간 금융기관들의 금융정보 이전이 허용되었음.

2)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포함)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제한하여 금융시스템의 해외이전이 어려웠음.

■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미·한-EU FTA 유예기간 종료로 외국계 은행들보다 외국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금융정보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은행의 경우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외국인 주주가 거의 없어 은행들의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활발하지 않을 것임.
- 반면에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국계 회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됨.
 - 알리안츠생명, 푸르텐셜생명, AIA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다수의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13년 4월 FTA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예고하였고, 수정된 규정이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동 규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업무를 국내외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이전인 경우에도 재위탁이 가능함.
 - 해외 위탁의 경우 위탁 금융회사의 본·지점 및 계열사에 한해 위탁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하였으나 금감원장이 인정할 경우 재위탁이 가능함.
- 한편, 해당 규정에서는 위탁이 금지된 경우나 관련 법령상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정보처리 관련 업무위탁을 제한하고 있음.
 -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 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위탁이 금지됨.

■ 특히, 금융위는 규제를 통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고객 주민번호의 해외이전 자체를 금지하였고,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정보 주체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도록 규정함.

- 정보처리 업무가 위탁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상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고객의 주민번호는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는 별개로 해외이전 자체가 금지됨.
- 또한 한-미·한-EU FTA 협정문은 ‘민감한 소비자 정보 보호’, ‘민감한 소비자 정보의 무단 재사용 금지’ 등을 포함하여 상호간의 민감한 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합의한 바 있음.

■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상호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

- EU-멕시코(2000), 미국-싱가폴(2004) 등 여러 국가의 FTA 조항에서도 금융정보의 상호 이전은 허용되어 있음.
- 미국과 EU는 2000년 7월 Safe Harbor 원칙에 상호간 합의하여 미국 기업들이 7가지 정보보호 항목³⁾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EU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 한편, 2014년 3월 12일 EU의회는 비EU국가로의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 일반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⁴⁾의 최종 법률안을 승인함⁵⁾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임.

- 미국의 불법 정보수집 스캔들로 인하여 동 개정법안에서 비EU회원국으로의 정보 이동⁶⁾, 제재별 금의 상향조정⁷⁾, 인터넷상 정보보호의 강화⁸⁾ 등이 강화됨.
-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강화로 미국 기업들의 유럽 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EU와 미국 간의 FTA 합의가 지연될 수도 있음.

■ 향후 국가간 금융정보 이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범죄 차원을 넘어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여 사전에 정보유출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양국간 협력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도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따른 보호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해외에서의 금융정보 유출이 국제법에 의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국 또는 제3국 등 국가별, 지역별 법원의 재판 관할권 및 적용될 법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kiri](#)

3) 첫째,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둘째, 이용자가 필요시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셋째, 국가 간에 적절한 원칙을 따르는 제3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며 넷째,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방안을 마련하고 다섯째, 데이터 무결성 방안을 마련하며 여섯째, 이용자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일곱째, 실효성 담보를 위해 원칙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국제간 거래가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4)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2012)0011 - C7-0025/2012 - 2012/0011(COD)), 일반 법 규정(regulation)에 검경에 의해 취합되는 정보에 관한 지침서(directive)로 구성됨.

5) 김진익(2014), 「EU의회,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안 승인」,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6) 2013년 발생한 감시활동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EU시민의 보호를 위해 어떤 기업이라도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에 공개하기 이전에 EU의 각국 국가정보보호기관(DPA)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7) 본 법 위반 기업은 최고 1억 유로 또는 국제 연간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함.

8) 개인정보의 삭제권리, 정보수집(profiling) 제한 확대,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분명하고 평범한 언어의 사용요청 등.



잠재성장률 제고와 금융의 역할

채원영 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정부-기업의 협력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보임. OECD 국가들의 1980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 추세가 하락하지 않은 국가는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칠레, 터키 다섯 나라에 불과하였음. 특히 미국과 핀란드는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독일과 이스라엘의 경우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성장 지원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음.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발전 초기의 기술모방, 규모확대 위주의 투자전략을 버리고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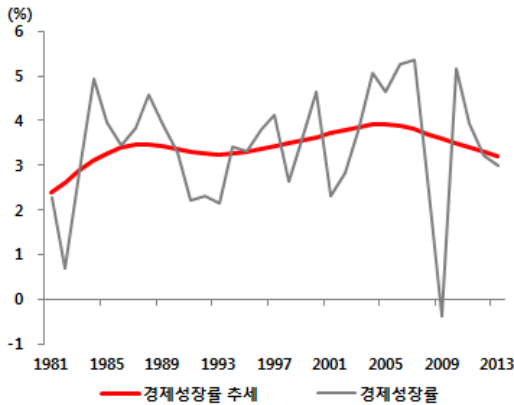
■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투자위축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최근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고용창출 효과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설비투자과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하였기 때문임.
- 또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것으로 보여 경제활력 저하, 저성장 고착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FT는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부족하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¹⁾

1) 글로벌경제회복지수*(TIGER: Tracking Indexes for the Global Economic Recovery)는 2014년 초 4.57을 기록하며 2013년 말 6.12보다 하락하였으나 2012년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세계 경제 회복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부재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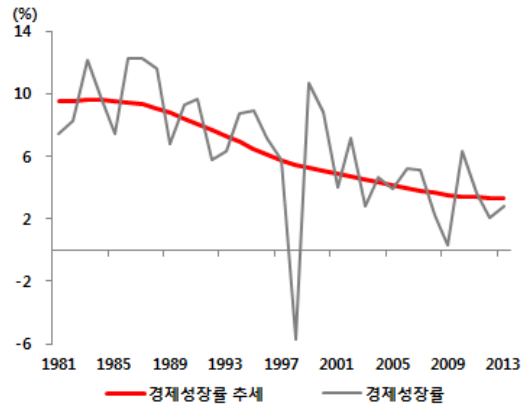
* FT와 미국의 Think Tank 브루킹스 연구소가 함께 경제생활력과 금융시장 변동성, 시장 신뢰 등을 바탕으로 추산함.

〈그림 1〉 세계 경제성장률 장기추세



주: 성장률추세는 HP필터를 이용하여 구함.
자료: IMF WEO(2014, 4).

〈그림 2〉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장기추세



자료: IMF WEO(2013, 10).

■ 이에 정부는 2014년 2월 말,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저성장 극복을 위해 1) 기초가 튼튼한 경제토대 마련, 2)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 3)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추진 등 3대 추진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과 원칙, 세부 시행 계획 등을 발표하였음.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는 4%대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임.
- 3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투자여건 확충, 내수(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통일시대 준비 등 10가지 과제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데 특히 IMF는 보고서²⁾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원활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 시행 5년 이후 매년 잠재성장률이 0.5%p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Barclays는 정책 방향이 단기적 성장부양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함.
- JP Morgan과 Bloomberg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며 금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강화에 따른 수출의존도 감소와 잠재성장률 제고 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함.

2) IMF(2014, 4), "How can Korea Boost Potential Output to Ensure Continued Income Convergence?".

● IMF는 한국정부가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노력하면 잠재성장률이 3.25%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함.

– IMF가 제안한 세 가지 구조적 개혁 조치는 1)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2) 경직적인 정규직 고용보호 개선, 3)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하였음.

■ 그러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제약 요인들을 극복해야 하며, 실행 과제 수행능력 제고 등 협력 강화와 갈등 해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음.

● JP Morgan은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다양한 갈등 해결이 필요하고, 국회승인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함.

● Barclays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행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해외 사례를 볼 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미국과 핀란드의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박원암 외(2012)는 OECD 국가들 중 2000~2010년 경제성장 실적이 좋은 국가들에서 시행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이중 핀란드와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세가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 금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R&D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체계를 전환하여 연구개발 인력이 늘어났는데, 이는 당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개편과 함께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함.

– 핀란드는 1993년에 대학체계를 일반 대학과 과학 및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폴리텍(Polytechnic) 대학의 두 분야로 구분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에는 대학교 지원예산을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였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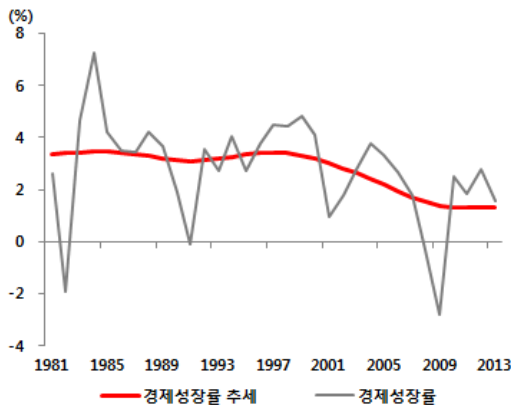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인력 증가율이 1991년부터 2007년 사이에 90.2%를 기록하였으며 피고용인 1,000명당 연구개발 인력도 매년 10.0명씩 증가하였음.⁴⁾

3) 1980년대까지 핀란드의 교육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정부의 개입이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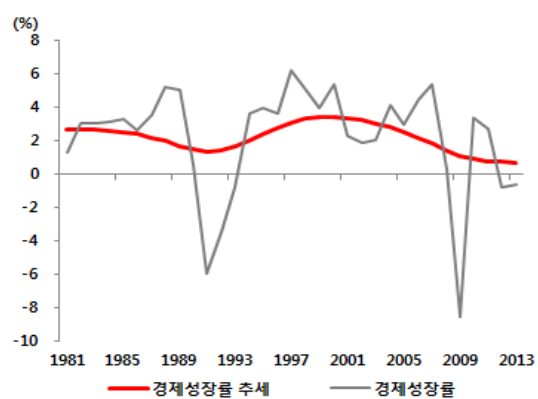
4) 국회예산정책처(2014. 4), 『북유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

- 미국 벤처산업⁵⁾은 학술 부문, 지식서비스 부문, 금융 부문이 융합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성장하였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 수 많은 기업들을 탄생시키며 1990년대의 미국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⁶⁾
 - 2000년 미국 벤처부문 일자리는 869만 개(민간부문 일자리 비중 7.8%)였으며 매출액은 1조 5,00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일자리는 1,190만 개(민간부문 일자리 비중 11%)로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미국 민간부문 매출액의 10%인 3조 1,000억 달러로 늘어났음.⁷⁾
- 그러나 미국과 핀란드의 경우 2000년 이후의 경제성장률 추세가 하락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그림 3〉 미국의 경제성장률 장기추세



〈그림 4〉 핀란드의 경제성장률 장기추세



자료: IMF WEO(2013, 10).

- 특히 핀란드의 경우, IT 관련 신산업 벤처 육성 및 복지체계 지원 등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전자산업 의존심화가 노키아의 몰락과 세계경제 위기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5) 미국 벤처캐피탈협회(NVCA, 2011)는 미국 내 각 지역의 성공적인 벤처 생태계의 특징으로 첫째, 최소한 하나의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존재하여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가를 배출하고, 둘째, 이 기업가들은 법률, 회계, 기타 경영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며, 셋째,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세금 및 투자 정책상의 혜택, 상식에 맞는 규제, 기초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 등을 제시함.

6) 박원암 외(2012),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 방안」에서 발췌,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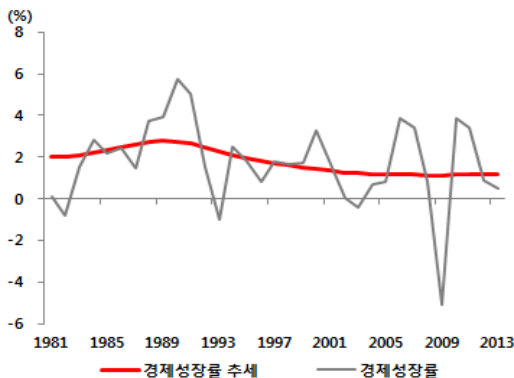
7)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 협회(NVCA 2011)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 민간 부문의 고용은 3.1% 감소하였으나, 벤처기업들은 2.0% 감소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민간부문 전체 매출액은 1.5% 감소한 반면 벤처기업들은 1.6% 증가하였음.

■ 반면, 독일과 이스라엘의 경우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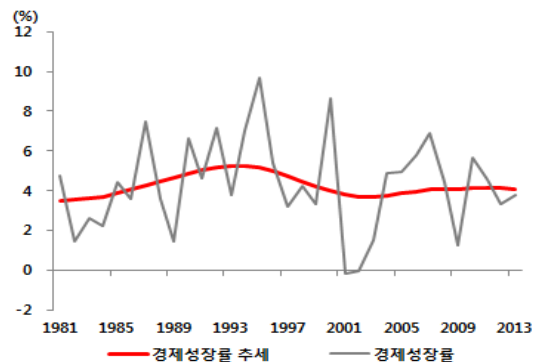
● 견조한 독일 경제성장세의 원동력은 중소기업 기반의 제조업 경쟁력이며, 특히 지역금융에 기반한 중소기업 금융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임.

-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유로지역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였는데 그 기반은 제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평가됨.
- 독일 중소기업은 2008년 대비 2011년 10%가 넘는 고용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부가가치도 10% 이상 증가하였는데⁸⁾, 중소기업 지원 금융제도, 독일의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제도, 독일의 R&D 지원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 5〉 독일의 경제성장률 추세



〈그림 6〉 이스라엘의 경제성장률 추세



자료: IMF WEO(2013, 10); 한국은행.

● 이스라엘의 경우, 잠재성장력 확충⁹⁾에 벤처산업이 중심적 역할을 했고 특히 요즈마(Yozma)¹⁰⁾ 펀드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음.

-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산업은 1990년대 요즈마 펀드와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음.

8) 한국은행(2013, 5),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주요 배경」.

9)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후 고성장세를 지속하다 1970년대 이후 재정문제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장기간 침체를 겪은 후 1990년대 초 해외 고급인력의 대규모 유입과 하이테크 산업 발전에 힘입어 경쟁력을 회복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함.

10) 히브리어로 창의, 독창, 창업 등을 뜻함.

-
- 요즈마 펀드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일종의 모태펀드 역할을 하였는데 요즈마 펀드의 성공에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해외투자 유치, 전문성 획득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일과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산업 지원이 필수적임.

- 경제발전의 성숙단계에서는 연구개발, 자체적인 기술혁신 등 혁신주도 전략이 성장의 전제조건이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혁신주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하준경(2004)은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은 질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규모 확대와 기술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음.
 - 특히 경영자 입장에서 기존의 팽창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경영자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여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음.
-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함. [kiri](#)



최근 금융정책 변화와 시사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이성은 연구원

요약

■ 최근 현정부 들어 두 번째 종합금융정책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발표되었음. 첫 번째 정책인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2013. 11)과 비교할 때 두 정책은 각각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라는 다른 화두에서 출발하였지만 정책 목표에 있어서는 ‘실물경제 지원’과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두 정책은 모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보험산업 입장에서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채널 활성화, 특히 채널 통합화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본고는 최근 발표된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2013년 발표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¹⁾ 비교를 통해 최근 금융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

- 정책당국은 2014년 7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공개하였으며, 보험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정책당국은 이미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금번 정책은 현정부의 두 번째 금융관련 종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고는 2013년과 2014년의 정책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보험산업 입장에서 유의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²⁾

■ 두 정책은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실물경제 지원’과 ‘경쟁력 강화’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1) 2013년 11월 발표된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른바 10-10 value-up(향후 10년 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10%)이라는 비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함.

2) 보험산업에 국한된 정책에 대해서는 CEO Report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 7)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가급적 논의하지 않고자 함.

- 2013년 정책은 창조경제와 고령화 등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발굴함으로써 실물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 특히 10-10 value-up이라는 비전 하에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었음.
- 2014년 정책은 강력하고 상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의 편의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결국, 두 정책은 각각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라는 사회적 화두의 차이 때문에 핵심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 ‘금융의 새로운 역할 발굴’과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실물경제 지원’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종합대책은 모두 ‘자본시장 활성화’에 일관된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모두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음.

〈표 1〉 자본시장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한 대책 비교(2013, 2014)

구 분	2013	2014
신서비스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상장지수증권(ETN)도입 선물 거래 확대(변동성지수, 장기국채) 장수채권 발행 -	(기 실행) (기 실행) 선물거래 (섹터지수, 미국달러, 단기금리) 추가 대재해채권 추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연금 자산의 자본시장 유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 자산 비중 조정	운용 위탁형 상품 도입으로 구체화 위험자산 운용 규제 완화, 디폴트 옵션으로 구체화
신채널	펀드 슈퍼마켓 도입 펀드 전문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펀드 슈퍼마켓의 보험 판매 장기 추진 독립투자자문업 펀드 부문 우선 도입 추진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상품판매업 도입 검토 복합접포 도입

자료: 1) 금융위원회(2013),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2) 금융위원회(2014), 『금융규제 개혁방안』,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은 첫째, 직접적인 보증 또는 기술 등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 공급의 확대, 둘째, 상장, 공모, 증권발행, M&A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 활성화로 요약되며, 따라서 두 번째 방향은 사실상 자본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금융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정책 모두 ‘규제 완화’와 ‘신성장 동력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의 신성장 동력 확충에 많은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의 신성장 영역과 관련해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세제혜택펀드, 상장지수 증권(ETN) 등 신상품 도입 뿐 아니라 퇴직연금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관련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책이 강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특히, 판매 채널과 관련해서 2014년 정책은 영역을 통합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험 상품의 영업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금융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보험 부문 정책의 경우 2013년 정책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영역 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2014년 정책은 주로 규제 완화와 모집 질서 건전화 분야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되었다고 평가됨.

<표 2>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한 대책 비교(2013, 2014)

구 분	2013	2014
신서비스	위험률 할증 고령층 특화 상품 개발 종합 노후건강관리 특화 보험 도입 안전관리서비스 상품 도입 건강상태 등 고려 연금액 조정 상품 개발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단기소액보험 도입 해외환자유치업 허용 단기수출보험시장 민간 개방	안전할증 확대로 추진 - - 비건강인 연금 상품으로 구체화 (기 실행) 상품·서비스 연계보험으로 구체화 - -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신채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온라인 전문 생보사 허용 단종 보험대리점 종합 상담사 제도 도입 검토	도입 검토 (기 실행) 지속 추진 금융상품자문업과 유사

자료: 1) 금융위원회(2013),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2) 금융위원회(2014), 『금융규제 개혁방안』,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정책은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 발굴에 많은 중점이 두어진 반면, 2014년 정책은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면이 있음.

- 보험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과 관련한 이러한 현상은 의료(종합 노후건강관리 특화 보험, 안전관

리서비스), 관광(해외환자유치업), 산업(단기수출보험)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존재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2014년 정책은 가격 자유화와 관련해서 이율과 위험률 결정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모집질서와 관련해서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GA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구체화하는 등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됨.

■ 보험산업은 최근 금융정책의 흐름 속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채널 통합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본시장이 스스로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상장, 공모, 증권발행 등과 관련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의 선진화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자산 운용 환경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판매 채널에서 보험 등 취급 상품을 추가하는 것이 근본적인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음.
- ‘상담’, ‘독립’, ‘자문’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 채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는 자문보수(fee)에 기반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충분한 여건 조성 없이 채널 활성화만 추진할 경우 변형된 형태의 판매수수료(commission)에 의존한 GA만 추가될 수 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 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 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 채널 다변화가 영업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kiri



일본 경제 장기부진의 시사점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 일본 경제 장기부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거시정책의 실패와 미흡한 구조조정 등을 장기부진의 원인으로 지적함.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은 경제의 장기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모두 중요하며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일본 경제 장기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제안된 정책들이 대부분 반영된 종합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며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그러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한 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향후 나타날 정책 효과가 예상과 부합하는 지를 예의주시하며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및 이로 인한 통화 강세, 자산시장 부진 등 우리 경제가 일본의 경험과 유사한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¹⁾을 지난 7월 24일 발표함.

●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① 내수 활성화, ② 민생 안정, ③ 경제 혁신 등임.

-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선순환을 통한 소비 및 투자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
- 민생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등 처우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노·사·정 대화 복원 추진,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을 제안
- 경제 혁신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경제 민주화 추진 등을 열거

■ 본고는 일본 경제 장기부진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평가해보고자 함.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 7. 24 참조.

-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경제정책방향을 평가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먼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 붕괴 이후 소위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간 주요 경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²⁾

- (1991년~1995년)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 붕괴 이후 일본 GDP의 3배에 달하는 자산가격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함에 따라 일본 경제는 0% 내외의 저성장이나마 유지될 수 있었음.
 - 이는 1929년 미국 대공황 발생 이후 소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미국의 실질 GDP가 4년간에 걸쳐 50% 축소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됨.
 - 부실대출에 대한 기준이 낮아 거품 붕괴가 은행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정부와 가계, 기업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여 부실대출 처리 및 구조조정에 소극적
 -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도 지연됨.
 - 이 당시 가계는 자산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여 일시적으로 저축을 줄이고 거품 붕괴 이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기업은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를 큰 폭으로 줄임.
 - 한편,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음.
- (1996년~2001년) 1996년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으로 개선되자 일본 정부는 이를 일본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잘못 판단하여 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하였는데, 이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은행 도산 등 금융위기가 본격화됨.
 - 1996년 일본 경제 회복은 소비세 인상(1997년 시행)에 앞선 소비 증가와 관세 대지진으로 인한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가 거품 붕괴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함.
 - 부실대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경기가 침체로 전환되자 잠재해 있던 은행 부실대출 문제가 현실화됨.
 - 일본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은행 시스템 붕괴를 막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다시 확대함.
 - 2000년 일본 경제가 IT 거품과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하자 일본 정부는 또 다시 2001년 국채발행 규모를 제한하는 등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 건전화³⁾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소비와 투자

2) 전용식·윤성훈·채원영(2014),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조사보고서 2014-6, 보험연구원.

등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아 경제 성장세는 이전과 같이 다시 소멸됨.

-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에 따라 가계도 소비를 줄임.
- 재정긴축화 정책은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를 야기하여 실패함.

● (2002년~아베노믹스 이전) 정부는 다시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발행 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적자 재정으로 저성장이거나 유지되어 왔음.

-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엔화 가치는 절상되었고 엔화 가치 상승과 내수부진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였음.
-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적자재정 지속으로 일본 정부의 부채규모는 GDP 대비 200%⁴⁾를 초과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

■ 일본 경제의 장기 부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Greenspan(2003)⁵⁾과 Lincoln(2005)⁶⁾ 등은 일본에서 부실기업이 구조조정 되지 않았고 규제 완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었다고 주장함.

- Hayashi and Prescott(2001)⁷⁾, 왕윤중·이형근(2002)⁸⁾ 등은 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경쟁 제한 정책이 생산성을 하락시켜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
- 이들은 미국과 영국의 경제를 회복시킨 레이건 미 대통령과 대처 영국 수상의 정책과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혁신정책 필요성을 제기

● Bernanke(2003)⁹⁾, Ito(2001)¹⁰⁾ 등은 적극적이지 못한 통화정책과 일관성이 없었던 재정정책 등

3)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기업과 가계는 자금수요를 줄임. 이에 따라 은행은 자산으로 국채를 대규모 보유할 수밖에 없었음. 그런데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누적된 일본 정부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였고 일각에서 재정적자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함.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이 보유한 국채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는 가뜰이나 어려운 은행 부실을 심화시켜 은행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였음.

4) BI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8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났으며,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경우 위기 발생 시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100% 내외였음.

5) Alan Greenspan(2003), "The Economic Outlook", Testimony of the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6) Edward Lincoln(2005), "Japan: Long-term Budget Challeng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the Long-Term Budget Challenge: Public Finance and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G-7, June 2-4, 2005, Washington, DC.

7) Fumio Hayashi and Edward Prescott(2001), "The 1990s in Japan: A Lost Decade",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Vol.5, No.3.

8) 왕윤중·이형근(2002),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종합심층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Ben Bernanke(2003), "Some Thoughts on Monetary Policy in Japan", Remarks before the Japan Society of Monetary Economics, Tokyo, Japan.

10) Takatoshi Ito(2001), "Long-term Stagnation in Japa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presented at the KIDC International Financial Symposium.

정책실패를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원인으로 지목

- 1999년에 시행된 제로금리 정책도 너무 낮은 감이 있으며, 제로금리 정책에 추가적으로 양적완화정책까지 실시했어야 했다고 주장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부문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경기 회복을 본격적인 회복으로 잘못 판단한 일본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할 것이 두 차례의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를 야기하였고 장기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 일본 경제 장기 부진의 교훈은 자산가격 거품 붕괴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정책이 적극적이고 대규모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Nanto 200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부는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임.

- 최근 연구인 Koo(2008)¹¹⁾, Nanto(2009)¹²⁾, Brunnermeier and Sanikov(2011)¹³⁾ 등은 일본 경제 장기 부진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장기간 부진했기 때문인데, 이는 거품 붕괴 이후 훼손된 기업과 가계의 대차대조표 정상화, 즉 부채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펴려
 - 거품 붕괴로 가계와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순자산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기까지 투자와 소비를 줄여 부채를 축소한 부채조정이 불가피¹⁴⁾하였으며, 거품 붕괴 충격이 컸던 만큼 이러한 부채조정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주장임.
 - 이들은 일관성은 없었지만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조정하는 기간 중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가 저성장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며 재정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함.
 - 오히려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조정하는 시기에는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가계와 기업이 자금을 수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화정책도 효과가 미미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에 대해서 통화정책 효과 등 학자마다 견해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인 시사점은 경제의 장기부진을 막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수요)뿐만 아니라 미시정책(공급)도 중요하며 병행되어야 한다(Nanto 2009)는 것임.

-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채조정을 원

11) Richard Koo(2008), The Holy Grail of Macroeconomics: Lessons from Japan's Great Recession, John Wiley and Sons.

12) Dick Nanto(2009),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essons from Japan's Lost Decade of 1990s", CRS Report for Congress.

13) Markus Brunnermeier and Yuliy Sannikov(2011), "A Macroeconomic Model with a Financial Sector", Princeton University Working Paper.

1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을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조정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음.

활히 할 수 있게끔 하고,

- 공급 측면에서는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를 병행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여야 함.

■ 이번에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적극적인 거시(재정)정책, 구조조정과 혁신, 일자리 창출 및 가계의 소득 증대, 규제 완화 등 일본의 장기부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제안된 정책¹⁵⁾들이 대부분 반영된 종합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며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일본 경제의 장기 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경우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기 회복 여부를 선불리 판단한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정정책 기조 변화에 앞서 경기 회복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임.
 - 상당기간 재정이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정부부채 수준과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여력이 많지 않은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부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음.
- 부채 조정기에는 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 및 금융정책의 경우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금융 및 외환정책, 그리고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등 미시적 통화정책이 오히려 거시적 통화정책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비 회복이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도 매우 긍정적임.
 - 아베노믹스가 엔화 약세를 유도한 것도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임.
- 일본에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원인으로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미흡이 거론된 만큼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이 획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창조경제 구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15)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민주화 내용과 민생안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 장기부진 연구에서 제시된 시사점과는 다소 무관하여 이에 대한 평가는 생략함.

■ 그러나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이 위험수위에 달한 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신임 경제부총리의 표현과 같이 지도에 없는 길(Uncharted Territory)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향후 나타날 정책의 효과가 예상과 부합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임.

● 특히, 전용식·윤성훈·채원영(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이 기업부채 조정에 비해 경제성장률 감소로 나타나는 충격이 더 크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LTV·DTI 조정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경우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kiri](#)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 올해 국내 주요 모바일 IT 기업들은 지급결제와 송금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 진출할 예정임.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파급효과는 제도적 한계, 금융거래의 제약, 취약한 보안기술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향후 국내 금융소비자의 성향 변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의 국내 금융업계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음.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이라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 시장 성장에 대비해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 역량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내 주요 모바일 IT 기업인 카카오와 캠프모바일¹⁾은 올해 3/4분기 중으로 지급결제와 송금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 진출할 예정

- 카카오는 국내 은행사, 결제대행사, 증권사 등과의 금융 업무 제휴를 통해 소액 송금, 온라인 쇼핑·오프라인 매장 결제, 주식 거래와 증권정보 제공 등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IT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금융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예정
- 반면, 캠프모바일은 동사 IT 플랫폼인 밴드의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제대행사 제휴를 통한 소액 송금 기능 제공을 검토

1) 네이버의 모바일 분야 자회사로서 모임관리 앱 '밴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표 1〉 국내 모바일 IT 기업의 금융서비스 출시 현황

기 업	플랫폼	금융서비스	협력사	세부 내용
카카오	뱅크월렛	송금	은행사	카카오톡 이용자간 소액 송금(한도 일 10만 원)
		지급결제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매장 결제(한도 일 30만 원)
	카카오페이	지급결제	카드사 결제대행사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매장 결제
	증권플러스	자산관리	증권사	주식거래와 증권정보 제공 서비스
캠프모바일	밴드	송금	결제대행사	밴드 회원간 회비 송금

자료: 카카오, 캠프모바일.

■ 이러한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파급효과는 제도적 한계, 금융거래의 제약, 보안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정이 강하여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에 제한²⁾이 있음.
- 동일한 IT 플랫폼을 가입한 회원끼리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결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제휴 카드와 결제가맹점이 많지 않은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음.
- 또한,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의 보안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음.

■ 하지만, 국내 금융소비자의 성향 변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의 국내 금융업계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음.

- 이미 전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³⁾ 기업이라 불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이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이베이(eBay),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Alibaba)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단순 지급결제에서부터 송금, 대출 및 투자 중개, 보험 판매 등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진출국 또한 확대하고 있음.⁴⁾

2)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뱅크월렛 카카오는 일 50만 원의 선불충전 한도와 일 10만 원의 송금 한도가 있음.

3)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일컫음.

4)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의 자회사인 페이팔(PayPal)은 유럽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고, 텐센트와 알리바바도 중국에서 은행업 인가를 조만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행의 발표⁵⁾에 의하면,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은 조회서비스 및 소액이체를 중심으로 PC 기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대체해 나가는 추세임.
 - 2014년 6월 말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 수는 9,949만 명으로 전분기말대비 1.8% 증가하였지만,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의 등록고객 수는 4,298만 명으로 전분기말대비 6.5% 증가하여 전체 증가세를 주도함.
- 전통적 방식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과 비교해 볼 때, 핀테크 기업들은 앞선 IT인프라와 방대한 데이터의 보유, 대규모 가입자 기반, 빠른 기술적응 역량, 간단한 거래 절차, 저비용체제, 온라인 중심의 영업채널, 높은 정보의 투명성 등의 경쟁력을 가짐.
 - 특히, 기존 IT인프라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가 갖지 못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최근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규제 해소의 여지를 남김.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의한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이라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채널 전략과 새로운 보험시장 발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IT인프라와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을 통해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 보험회사를 확보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등의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음.
 - 전자금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상반기까지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알리바바와 제휴 관계를 맺은 보험회사는 20개에 이르고, 금년 2월 알리바바는 중국평안보험 및 텐센트와 합작으로 중국 최초의 인터넷 보험회사인 중안보험 설립 인가를 취득하고 인터넷채널을 통해 보험판매를 시작함.
- 전자금융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 시장 성장에 대비해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 역량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금융보안사고에 대한 대비를 별도로 해야 함.
 - 따라서 전자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 시장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큼.

키리

5) 2014년 2/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2014. 8. 19).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논의와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검토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미 연준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금리 인상 찬성과 고용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금리 인상 반대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9월 17일 미 연준은 현재의 최저금리 수준을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표명하였으나 미국의 경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2015년 중반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국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작년에 비해 확대될 수 있음.

■ 9월 17일 연방준비위원회는 현재의 최저금리 수준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표명하였으나 위원들 간에는 2015년 금리 인상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 연방준비위원회 위원간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 7월 FOMC 회의록 공개내용(8월 20일)에 따르면 실업률과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됨.
 - 9월 FOMC 정례회의 성명서에서는 제로금리 유지를 약속한 ‘상당 기간’(considerable time)이라는 문구가 유지되었음.
- 이러한 가운데 2015년 기준금리를 1~2% 수준으로 전망하는 위원들 수가 지난 3월 8명에서 9월 10명으로 늘어났음.

〈표 1〉 2015년 금리 인상 수준에 대한 FOMC위원들의 의견

(단위: 명)

구 분	3월 FOMC	9월 FOMC
0.00~0.25	—	2
0.25~0.50	2	1
0.50~0.75	2	—
0.75~1.00	2	3
1.00~2.00	8	10
2.00~2.50	1	—
2.50~3.00	1	1
3.00~	1	—

자료: FRB.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지난 해부터 제기되었으나 인플레이션 대비 측면에서의 금리 인상 찬성 논리와 고용 회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금리 인상 반대 논리가 대립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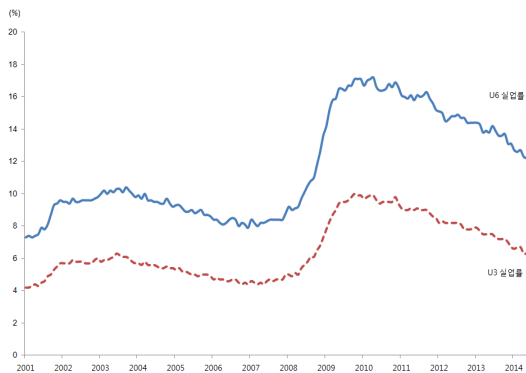
- 7월 실업률은 6.2%로 전년대비 1%p 이상 하락하였고, 2/4분기 PCE 물가지수는 연율 2.3% 상승하여 3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1%(연율)에서 2/4분기에 4.0%로 급반등
- 그러나 최근 낮은 실업률은 고용 개선보다는 주로 노동시장참가율 하락에 따른 것으로, 장기실업률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는 평가임.

〈표 2〉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조기 금리 인상 찬성	조기 금리 인상 반대
• 고용개선, 저인플레이 우려 완화, 양적완화 종료 • 최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 – 2/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4%를 기록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6월 1.6% – 실업률은 7월 6.2%로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양대 지표인 물가와 고용도 연준의 목표치에 접근	• 미국 실질적인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며 경기 회복세가 실망스럽고 속도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침 (8/22 잭슨홀 회의) • 미국 실업률은 하락하였지만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불안 • 국내총생산 갭 부진, 민간임금 상승 지연, 고용 증가세 둔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정체 등으로 노동시장의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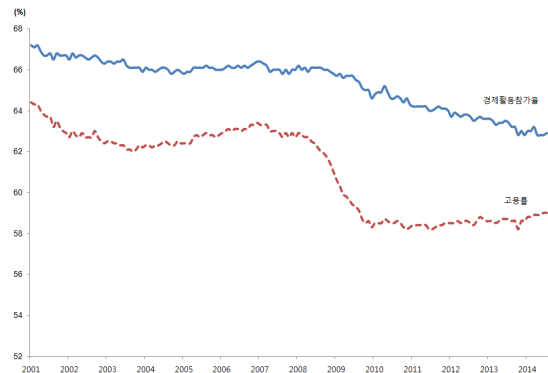
- 경제활동 참여인구만 고려하는 공식실업률(U3)과 비경제활동인구,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U6)이 2011년 이후 하락세이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임.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8월 현재 62.8%로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금융위기 이후 정체됨.

〈그림 1〉 U3, U6실업률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등으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조기에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 부진, 고용시장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해 볼 때 금리 인상은 2015년 중반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연준은 전반적 경기회복에 따른 명목실업률과 Nairu¹⁾간의 차이 축소, 고용의 질적 향상에 따른 임금 상승,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GDP갭 확대가 있을 경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으나, 현재는 임금 상승 속도가 느리며 향후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임.

- 2014년 2/4분기 민간부문 임금상승률은 1.9%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4분기 GDP갭은 -4.6%로 과거 GDP갭과 비교할 때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임.

1)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물가안정실업률):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을 말함.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고도 함.

〈표 3〉 FRB의 금리 인상 전후 비교

(단위: %)

구 분	기준금리	명목실업률-Nairu		GDP갭		민간임금상승률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94.02~95.02	3.00→6.00	0.73	0.59	-1.53	-1.43	3.50	1.80
99.06~00.05	4.75→6.50	-0.14	-0.93	-0.19	2.64	3.10	5.35
04.06~06.06	1.00→5.25	0.30	0.09	-0.57	0.13	2.80	2.42

주: 금리 인상 전, 후의 평균값임.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CBO.

●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5년 3/4분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25~50bp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을 통해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실물경제 회복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시장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실물경제 회복과 자금수요 증가가 가시적일 경우 시장금리 상승폭이 확대될 것임.

■ 국내경기 회복이 가시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2015년 중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와 달리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엔화 약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시사 이후 2013년 8월까지 특히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던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금 이탈은 없었음.

●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원화절상 기대감 약화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고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어 미국 금리와의 금리차가 과거와 달리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움.

－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국내 경기 회복이 가시적이지 못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어 보험회사의 신중한 자산운용이 필요함. **kiri**

〈표 4〉 기업의 수익성, 환율, 국채금리 추이

(단위: %, 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2Q	2014.3Q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5.8 (6.8)	6.7 (7.8)	5.4 (6.6)	4.8 (5.7)	4.6 (5.7)	4.2 (5.0)	—
	매출액세전 순이익이율	5.7 (7.4)	7.0 (8.7)	4.8 (6.4)	4.5 (6.2)	3.2 (5.1)	4.3 (5.8)	—
	이자보상비율	377.7 (550.8)	504.1 (781.9)	415.2 (676.0)	379.6 (627.6)	399.1 (696.6)	389.1 (728.1)	—
원/엔 환율(100엔)		1,363.13	1,320.56	1,391.31	1,413.14	1,123.41	1,008.72	988.33
한국 국채금리(3년 만기)		4.04	3.72	3.62	3.13	2.79	2.82	2.50
미국 국채금리(3년 만기)		1.42	1.10	0.92	0.38	0.54	0.87	0.98

주: 1) ()내는 제조업 기준임.

2)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3) 환율과 국채금리는 각 연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2014년 2/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Bloomberg.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소고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 3/4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2012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3.2%(속보치) 성장한 것으로 발표됨.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부채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채조정이 시작되면 경제성장률이 더욱 하락하고 이는 추가적인 부채조정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임. 부채조정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며, 디플레이션 발생을 방지하고, 가계부채 등 민간부채의 증가 속도를 명목경제성장률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자 필요조건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재정정책만이 유일한 경기부양정책 수단으로 보이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경기부양은 어려움.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경제성장률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를 시장참여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정된 재정지출을 재정여력(fiscal capacity)을 제고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해야 함.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 부실 공기업 퇴출,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함. 셋째,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증세 등 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넷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는 많으나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기대와 부합하는 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함.

■ 10월 24일 한국은행은 2014년 3/4분기 경제성장률 잠정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3/4분기 실질 GDP는 지난 2/4분기에 비해 0.9%,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 대비로는 실질 GDP 성장률이 1/4분기 0.9%에서 세월호의 영향 등으로 2/4분기 0.5%로 하락하였으나 다시 3/4분기 들어 0.9%로 1/4분기 수준을 회복하였음.

-
- 그러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실질 GDP 성장률이 1/4분기 3.9%에서 2/4분기 3.5%, 그리고 3/4분기 3.2%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2/4분기 2.7% 이후 5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미국의 달러 강세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 개선되던 경제 회복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향후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특히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2.6%나 감소하였음.

■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선진국과는 달리 부채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팽창에 의한 자산가격 거품 때문에 발생하였는데, 선진국의 경우 거품 붕괴 이후 훼손된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 복구를 위해 부채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회복이 지연됨.

- GDP 대비 민간부문 부채수준(World Bank)의 경우 미국은 2007년 206.3%에서 2013년 198.0%로, 같은 기간 영국은 184.3%에서 165.2%로, 독일은 105.3%에서 95.6%로 하락하였음.

- 부채조정기에는 저축을 늘림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는 부채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나 향후 자산가격 하락 등 대내외 충격에 의해 부채조정이 유발될 경우 경제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 및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GDP 대비 민간부문 부채수준(World Bank)¹⁾은 2007년 134.9%에서 2013년 135.0%로 변화가 없음.

- 부채조정에 의한 경제 성장률 하락은 추가적인 부채조정과 자산가격 급락을 유발하여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함에 따라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선진국 경제 등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채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역시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선진국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채조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 기업들이 단기성과를 중시함에 따라 현금보유를 늘리고 설비투자보다는 인수합병에 치중하여 투자를 소홀히 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 선진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여력이 부족
- 시장논리에 맹목적인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등의 폐해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
 - 기업의 매출영업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4%대)로 하락하는 등 투자유인이 적어지고 내부 유보가 확대되는 상황
 - 10대 대기업의 현금보유는 177조원(2013년말)으로 GDP의 10%를 초과함.
 - 기업 전체 사내유보금(2012년말)도 762조원에 달함.
 -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로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소비여력이 제한적
 - 국민총소득인 GNI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줄어듦.
 - 중산층 비중도 4년 만에 6.1%p(47.4%→41.3%) 감소함.
 - 한편, 수출의 경우도 내부 부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 자체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향후 전망이 불확실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여력이 남아 있으나 향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도 쉽지 않아 보임.
 - 우리나라는 정부부채가 GDP 대비 40%(국제기준 2012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64.5%로 재정위기 발생국의 평균(80%)을 하회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여력이 남아 있음.
 -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처럼 통화정책이 투자와 소비 제고에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금리와의 격차 축소로 추가적인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
- 내수 부진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하락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2년 이후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디플레이션마져 우려되는 상황
 - 디플레이션 역시 부채의 실질가치를 높여 부채조정을 야기할 수 있음.

■ 부채조정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경제성장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②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며, ③ 디플레이션 발생을 방지하고, ④ 가계부채 등 민간부문 부채 증가 속도가 명목경제성장률 이하로 억제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조건이자 선결 과제임.

■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경기부양정책 수단은 단기적으로 재정정책밖에 보이지 않으며, 재정 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경제성장률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시장 참여자와 공유해야 함.
 - 구체적으로 첫째, 3%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이 현 상황에서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재정정책을 통해 적정 성장률 이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시도는 재정 낭비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둘째, 재정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여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지출이 재정여력 (fiscal capacity)을 제고할 수 있는 부문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연금 개혁, 부실 공기업 퇴출,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증세를 통한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경제성장률 하락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정책수립 시 고려할 경제 문제는 많으나 정책수단은 한정되어 있어 정책효과가 예상과 부합하는 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kiri](#)

kiri Weekly 포커스 모음집 2014

발행일 | 2015년 2월

발행인 | 강 호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